

인사말

일본대금업협회 회장 이지마 이와오



2012년도 협회 활동 내용을 보고하면서 각종 대금업 관련 자료와 대금업법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 이미 공지 드렸던 정보도 아울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자율규제기관이라고 하는 협회의 설립목적에 의거하여 회원사의 컴플라이언스 체제 확립을 더욱 증진시키는가 하면 대금업 전체가 일본 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가입 대금업체를 대상으로 협회 가입을 촉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율규제기능의 정착을 도모하였고 자금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과 민원·분쟁 해결, 금융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계몽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최근 대금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대상 신용대출 월별 대출 잔액은 제작년 가을 이후부터 전년 대비 증가 기조로 돌아섰으며, 대출 잔액 또한 감소 경향이 안정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직도 지방에서는 과불금 반환 청구가 계속되고 있어 대금업계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금업계의 건전화는 착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5건 이상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2007년 3월 기준 171만명에서 2013년 4월말에는 29만명까지 감소했으며, 행정처분 건수도 2008년도 459건에서 2012년도에는 19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협회에 접수된 민원건수도 2008년도 785건에서 2012년도에는 117건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협회는 회원사 여러분이 대금업법과 자율규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건전한 자금 공급을 통해 대금업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일본대금업협회 연차보고서 한국어판을 발행하면서



일본대금업협회는 설립 이래 매년 발행해오고 있는 『JFSA 백서』를 2011년도부터 『연차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일본 대금계의 동향과 각종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일본 대금업계의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 대부업계의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고자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 『연차보고서』의 한국어판을 발행하게 되어 회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의 일본 대금업계는 대출 총액을 연소득의 1/3로 제한하는 총량규제와 상한금리 인하를 필두로 하는 개정 대금업법이 2010년에 완전 시행되고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해로 등록 대금업체는 2013년 3월말 기준 2,217개사까지 줄었으며 대출 잔액 또한 2012년 3월말 기준 소비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이 3조 엔으로 줄어든 해였습니다.

대금업 시장의 축소로 개인 자금수요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규모의 사업자들까지도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활개를 치는가 하면 새로운 수법의 신종 불법사금융업자까지 등장하여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자민당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본의 대금업체는 준법 영업에 만전을 기해 법령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와 일본대금업협회에 접수되는 민원건수가 크게 감소하여 대금업의 건전화가 뿌리를 내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판 연차보고서에는 이러한 일본대금업협회의 활동 내용과 일본 대금업계의 통계자료, 그리고 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 대부업권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4년 7월 18일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이성응

CONTENTS

제1편 협회 활동 보고

제1장 협회 활동 개요	2
제2장 업무에 관한 사항	14
I. 자율규제부문	
1. 법령·각종 규칙 등의 준수 철저·정비·충실	14
2. 상담·민원·분쟁 해결 대응	32
3. 감사의 실시	44
II. 대금전략부문	
1. 홍보·계몽 활동	77
2. 조사·연구 활동	79
III. 주임자 자격부문	
1.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등록강습·주임자 등록	82
IV. 건의요청	
1. 2013년도 정부세제 개정에 관한 요청	90
2. “집단적 소비자 피해 회복 관련 소송 제도안”에 대한 의견 제출	92
3. 기타	92
부록 자금수요자 및 대금업자 대상 앙케트 조사 결과 보고(개요)	94
제3장 중회·이사회·위원회·협의회·임원 등	118

제2편 자료

제1장 통계자료(금융성·월차통계·공지정보·기타 통계자료 등)	131
제2장 법령 등 일부 개정 관련 “법령집 제6판” 신구대조표(2013.4.1 기준)	174
연대표	181

제1편

협회 활동 보고

제 1 장 협회 활동 개요

당 협회는 대금업자가 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적절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도는 대금업법이 완전 시행되고 3년째 되는 해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회원사의 컴플라이언스 체제가 더욱 확립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1. 자율규제부문

(1) 회원사의 법령 및 각종 규칙 준수 현황 파악과 지도

2011년도에는 회원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법령과 각종 규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를 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사의 컴플라이언스체제 확립을 도모했다.

2012년도에도 회원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회원사에 대한 지도체제를 재구축하고 연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회원사의 컴플라이언스 체제가 확립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① 업무연수 및 문의 등에 대한 지도

회원사가 법령 및 각종 규칙 등을 준수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컴플라이언스체제 정비의 지원·추진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 내용을 전국 10개 지구에서 업무연수회를 실시하여 설명하고 매월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인 《JFSAnews》에 고지했다. 회원사로부터 접수를 받은 법령·각종 규칙 등에 관한 실무상담 등도 연간 3,157건 대응했다. 이러한 상담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FAQ를 이용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JFSAnews》에 게재하여 회원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② 사내규칙의 점검 지도 및 업무용 양식 등의 개정으로 내부관리체제 확립 지원

회원사의 사내규칙 적정성 관련하여서는 신규가입 회원사를 포함하여 총 1,312개 회원사의 사내규칙을 점검하고, 개선 지도 및 제정하도록 지원했다. 감사부와 연계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개별적인 지도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3년 3월 기준 99.8%에

이르는 회원사의 사내규칙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및 개정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 등에 따라 업무양식 등의 일부를 개정하여 제공(판매)함은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러한 협회의 업무로 회원사가 대금업법에 따른 내부관리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③ 컴플라이언스 체제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협회에서는 지금까지 회원사가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라 적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무상으로 ‘법령·판례 등 검색시스템’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기존 시스템에 금융청의 의견수렴절차를 수록하는 한편 업그레이드를 하여 정보량과 기능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그리고 《JFSAnews》에 업그레이드한 내용과 이용방법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회원사에 알렸다.

그밖에 회원사 연수를 위한 방편으로 JFSA-Learning의 교재와 설문, 해설 등을 책정하고 2012년 7월부터 신규가입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같은 해 10월부터는 감사결과 등에 따라 지도가 필요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내하였다. 그 결과 총 196개 회원사에게 수강을 독려하였고 이중 155개 회원사에서 1,250명이 수강했다.

④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응과 안내

대금업법 개정에 대한 대응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관련 특례조문이 2012년 3월말로 종료된다는 점과 같은 해 7월에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주민기본대장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의 개정 대응)된다는 사실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리고 개정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시행에 대한 대처로 대금업자가 ‘거래를 실시하는 목적’과 ‘직업’, ‘사업 내용’을 확인할 경우 참고해야 할 유형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또한 도쿄도 경찰본부가 요청(2012년 7월 2일)한 신용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⑤ 광고 심의 및 지도

회원사가 광고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 전화번호부 광고 중 신규로 접수된 716건을 광고심사기준 등에 따라 심의하여 이 중 677건을 승인했다. 그리고 텔레비전 광고 3,621건, 신문·잡지 16,755건, 전화번호부 800건의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령 등을 위반한 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별 지도했다.

그 밖에 대금업계의 광고 적정화를 위한 업무로 일본민간방송연맹·NTT타운페이지(주)·일본광고심사기구(JARO) 등과 같은 광고 관련 단체와 정보교환 및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여 연대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불법사금융 및 카드현금화¹⁾ 등과 같은 악질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에 보고하여 해당 광고의 삭제 및 해당 사업자의 적발 등을 요청했다.

⑥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지도

법령 등 위반 신고를 한 254개 회원사가 제출한 665개 사안에 대해 정관 등에 따라 4개 회원사는 처분, 1개 회원사는 권고, 10개 회원사는 문서 주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더불어 법령 등 위반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사안 중 일부를 2012년 9월부터 매월 《JFSAnews》에 게재하여 경종을 울렸다.

⑦ 행정기관과의 연대

금융청의 의뢰를 받고 재무국의 신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회사 감독실무 연수회’(2012년 9월 6일)에서 대금업계의 자율규제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도쿄도의 의뢰를 받고 도쿄도가 대금업 등록의 갱신을 맞이하는 대금업자를 대상으로 연 3~4회 정도 개최하는 ‘갱신 시 연수’에서 협회의 자율규제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2) 상담·민원·분쟁해결 대응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는 2010년 9월 15일, 금융청장관으로부터 지정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대금업계의 분쟁해결기관(금융 ADR²⁾)으로써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 및 대금업 업무에 대한 신뢰 확보를 도모해 왔다. 2012년도에는 상담 대응·민원 처리·분쟁해결절차 및 관련 업무를 본 보고서에 기술한대로 실시했다.

분쟁해결 등 업무에 관한 규칙 및 대출 자숙 대응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환급성이 높은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업자가 다시 매입하고 수수료를 제한 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업자는 이용자에게 판매한 금액과 다시 구입한 금액의 차를 챙기는 방식이다. 이러한 환급 목적의 거래 행위는 신용카드회사의 회원 규약에 저촉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원에서 탈퇴 당하는 경우가 있다.
- 2) 금융 분야의 분쟁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금융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라고 하며, 이용자와 금융기관간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주무관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금융ADR기관이라고 한다.

① 상담

<일반상담>

자금수요자 등으로부터 “등록업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 “계약내용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처법을 가르쳐 달라”와 같은 상담을 접수받아 조언 등을 하고 있다. (민원·분쟁해결과의 연동성을 고려)

<채무상담>

“거액의 채무를 떠안고 있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무 정리 방법을 모르겠다”와 같은 상담을 접수받고 채무현황과 변제능력 등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언과 정보 제공, 타 기관의 상담창구를 소개하고 있다.

<생활재건 지원 카운슬링>

“채무는 일단 정리했지만 가계관리가 어려워 앞으로의 생활이 불안하다”, “의존적 행동(도박 및 쇼핑중독)을 고칠 수 없다”와 같은 상담은 다중채무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고 있다.

② 민원

대금업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자금수요자 등(신청인)이 대금업자(상대방)에게 불만을 표명한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필요에 따라 업무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행제기가 가능하다.

③ 분쟁

자금수요자 등과 대금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의 분쟁해결위원(변호사)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화해안을 제시함으로써 쌍방이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모한다.

④ 대출자숙

낭비벽과 습관적으로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대금업자에게 대출을 신청할 경우 그 대출에 응하지 않도록 미리 협회를 통해 신용정보기관(주식회사 일본신용정보기구, 주식회사 CIC)에 등록하는 제도

가. 상담 대응과 민원 처리, 분쟁 해결 절차의 접수 건수는 ‘상담’ 이 39,623건(전년 대비 7.6% 감소), ‘민원’ 이 117건(전년 대비 52.6% 증가), ‘분쟁’ 은 전년과 동일하게 7건을 접수 받았다. 상담과 민원, 분쟁의 총 접수건수는 39,747건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관련 업무의 하나인 대출 자숙 관련 접수건수는 등록이 1,593건, 철회가 555건, 정정이 6건으로 총 2,154건(전년 대비 10.0% 증가)을 접수 받아 적절히 대응했다. 생활 재건 지원의 경우에는 신규 상담자 111명을 포함한 194명을 대상으로 1,035회에 걸쳐 카운슬링을 실시했다. 카운슬링은 면담 및 전화로 실시했다.

나. 각 도도부현³⁾의 주요 소비생활센터와 한층 더 연대를 강화하고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방문활동을 실시했다. (대상 : 145개소, 방문횟수 : 442회)

2012년 9월 19일과 9월 21일에는 전국소비생활상담원협회와 소비자과학센터, 주부연합회 등 12개 단체의 관계자를 모시고 ‘일본대금업협회의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로 보고회를 실시했다. 보고회에서는 2011년도 한 해 동안의 일본대금업협회의 활동 내역과 대금업 시장 현황, 소비자 보호 활동 현황 관련 보고를 비롯하여 당 협회의 향후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다. 소비생활센터와 한층 더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효과적인 활동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당 협회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협회와 대금업계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소비자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44개소의 소비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실시했다.

라. 금융청과 재무국, 소비자단체, 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요청한 사항을 토대로 해당 단체가 소비생활상담원 등의 대응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연수회에 강사를 파견하였다. ‘카운슬링을 활용한 접근 방법의 습득’ 과 ‘다중채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재건지원 카운슬링’ 등을 테마로 28개 단체 소속 866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의뢰한 종합복지자금 등의 상환을 향상을 고려한 가계관리지원 방법 등을 테마로 한 강연도 실시했다.

(3) 회원사에 대한 감사

당 협회는 정관에 따라 대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자금수요자 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회원사의 법령 또는 정관, 업무규정, 기타 각종 규칙의 준수 현황을 비롯하여 회원사의 영업 및 재산 현황 등을 감사한다.

3)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협회 감사에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가 있으며, 일반감사는 회원사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장부 등을 감사하는 ‘현장감사’ 와 회원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감사하는 ‘서류감사’ 가 있다. 특별감사는 법령·각종 규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회원사와 감독관청이 요청한 회원사 및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동적 감사’ 와 회원사 감사 등에서 개선 보고를 요청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감사인 ‘follow-up감사’ 로 이루어져 있다.

2012년도에는 현장감사와 서류감사의 상호 보완을 통해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원사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감사 방법과 감사 항목을 선택하는 등 감사대상 회원사에게 적합한 감사를 실시했다.

① 현장 감사

10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9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일반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류감사에 대한 follow-up감사로써 서류감사 보고서에서 평가가 낮았던 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던 3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적건수 103건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② 서류 감사

2012년 12월 기준 총 1,332개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업무 실태에 따른 서류감사를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했다. 감사 결과는 2013년 6월에 회원사에게 통지하였으며,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128개 회원사(311건)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③ 행정기관과의 연계

협회가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를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대금업자 대상 종합 감독지침’ 에 따라 감독당국과의 연대 강화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감사와 더불어 등록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및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보교환을 실시하는가 하면 등록행정기관에 감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연수에 강사를 파견하는 등 협회 감사업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④ 대금업법 완전시행 후의 대금업 실태 파악

개정대금업법의 완전시행이 대금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도 현장 감사부터 경영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고 있다. 2012년도까지 현장 감사를 실시한 24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분석 내용은 각 론 I -3-5에 기술했는데 90%를 넘는 회원사가 ‘완전시행으로 영향을 받았다’ 라고 응답했다.

2. 대금업 전략 부문

(1) 적극적인 홍보

- ① 대금업계 전반적으로 건전화가 이루어진 실태를 사회 각 계층에 알리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금업자의 상징으로 협회의 심볼마크인 ‘유즈리하(굴거리나무 잎)’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업계 전체의 사회적 평가와 인식 향상에 힘썼다.
- ② 대금업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대금업계 및 협회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와 협회지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소비생활센터 및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공청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관계 강화를 도모했다.

(2) 자금수요자 등에 대한 금융 관련 지식의 보급 및 계몽

- ① 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활재건지원 및 가계관리 진단 지원과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
- ② 일반 소비자와 소비자단체, 대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출장강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금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계몽용 홍보물을 행정창구 및 소비생활센터, 회원사 점포 등에 배치 및 배포하여 이해 촉진을 도모했다.

(3) 대금업계 및 자금수요자의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 ① 대금업계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자금공급기능에 대한 검증, 대응해야 할 과제의 추출과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검토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 ②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정착 등을 고려하여 대금업계의 통계자료는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갖추면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4) 연수 및 강연회 개최와 교재 제작

- ① 대금업계의 컴플라이언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테마로 대금업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 연수회를 전국 10개 지구에서 지구협의회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개최했다.
- ② 대금업자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와 고객 대응 등 내부관리체제의 정비에 대해 해설한 DVD 교재를 재무성 간토재무국의 제작 협력 하에 도쿄도 산업노동국 금융부 대금업 대책과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3. 주임자 자격 부문

(1) 자격시험의 실시

- ① 전국 17개 지역(21개 시험장)에서 2012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을 1회 실시했다.

② 시험 결과

시험일	2012년 11월 18일(일)
시험 신청자 수	11,520명
응시자 수	10,088명
응시율	87.6%
합격자 수	2,599명
합격율	25.8%
합격 발표일	2013년 1월 11일(금)

(2) 등록강습사무 처리

- ① 2012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강습 실시 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주임자 등록을 받고 갱신 시기를 맞이한 주임자를 중심으로 56회 등록강습을 실시했다.

② 강습 실시 및 결과

수강 신청자 수	22,930명
수강자 수	22,305명
수강율	97.3%
수료자 수	22,302명

③ 수강자 앙케트 실시

주임자의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책 검토를 위해 수강자 앙케트를 실시(강습개시 시에 배포, 종료 시에 회수)하여 20,93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회수율 93.8%)

(3) 주임자 등록 사무 처리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등록(등록갱신 포함) 및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다.

(2012년 4월 1일 ~ 2013년 3월 31일)

신청서류 접수 건수	21,419건
등록완료 통지 발송 건수	1,697건
등록 갱신 완료 통지 발송 건수	16,127건
등록 변경·취소·말소 건수	12,369건
2013년 3월 31일 현재 등록 주임자 수	32,988건

4. 총무 부문

(1) 회원사 수 추이 (2012년 4월 ~ 2013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계
가입	3	2	6	6	3	4	2	4	3	6	4	2	45
탈회	△8	△3	△5	△2	△1	△2	△3	△6	△4	△2	△3	△8	△47
폐업	△14	△9	△5	△8	△4	△6	△11	△4	△3	△6	△2	△6	△78
미갱신	△1	△2	0	△1	0	△1	△1	△2	△2	△1	△1	△1	△13
등록취소	0	0	0	0	0	0	△3	0	0	0	0	0	△3
제명	0	0	0	0	0	0	0	0	0	0	0	△2	△2
승계·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월말 회원사수	1,390	1,378	1,374	1,369	1,367	1,362	1,346	1,338	1,332	1,329	1,327	1,312	
협회 가입율	59.7%	59.5%	59.4%	59.5%	59.6%	59.7%	59.6%	59.3%	59.0%	59.2%	59.2%	59.2%	

(2) 협회 가입 촉진

- ① 협회 내에 '가입 촉진PT'를 조성하고 본부와 지부가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협회 가입을 촉진했다. 촉진에 앞서 PT 구성원과 협력하여 추진책을 책정하고 회원부가 가입 촉진의 주된 부서로 주요 시책을 로드맵으로 작성하여 전국적으로 진척 관리를 하면서 추진했다.
- ② PT 구성원과 전국의 도도부현 지부 직원이 거의 모든 협회 미가입 대금업자(900개 업체 이상)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방문한 결과를 정리하여 미가입업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검토 과제를 추출하여 향후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책을 수정 보완했다.
- ③ 금융청에도 논쟁 담당과장회의 등을 통해 대금업자에 대한 체제정비 등에 당 협회를 활용하도록 요청하는가 하면 협회 가입을 장려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 ④ 사내규칙 책정 및 등록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대금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협회 가입을 촉진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대금업자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협회 홈페이지는 물론 기관지 《특집JFSA》(4, 11월)와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 소식》(12, 3월)에 게재하여 미가입업자에게 홍보하고 이용 촉진을 도모했다. 그 결과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27개사가 협회에 가입했다.

- ⑤ 도쿄도와 연계하여 도쿄도 주최로 실시한 ‘등록갱신 시 연수회’ (2012년 7월, 9월, 11월, 2013년 2월)에 참가하여 협회 업무 및 회원사 대상 지원·서비스와 미가입업자 대상 지원제도를 설명함으로써 협회 가입 촉진을 도모했다.
- ⑥ 등록 갱신을 앞두고 있는 협회 미가입 대금업자를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협회 지원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협회 가입을 촉진했다.

(3) 행정 협력 사무 관련

- ① 법 개정 시행에 맞춰 회원 전용 홈페이지에 ‘대금업 등록신청서·신고서’ 및 ‘사업 보고서’, ‘업무보고서’ 양식과 기재 절차를 게재하여 회원사의 사무부담을 경감했고 개정 내용을 알렸다.
- ② 행정 협력 사무 관련 업무 효율화와 평준화를 위해 행정관청별로 ‘행정 협력 사무 관련 제출서류 확인표’를 작성하여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을 명확히 했다.
- ③ 법 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 협력 사무 관련 협정서를 47개 도도부현과 재체결했다.
- ④ 대금업 등록신청·갱신·변경 등의 신청서류 접수 사무를 재무국과 각 도도부현으로부터 위임 받아 처리하고 있다.

< 행정 협력 사무별 접수건수 >

주요 행정 협력 사무	접수건수(※)
신규 등록 신청, 등록 갱신 신청 접수 사무	490건
등록변경, 소관변경 신고 접수 사무	11건
변경신고 접수 사무	3,782건
폐업 등 신고 접수 사무	125건
대금업 개시 또는 휴업한 경우 필요한 신고서류 등 각종 신고 접수 사무	128건
사업보고서 접수 사무	1,809건
업무보고서 접수 사무	1,873건
잔존대부채권의 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 접수 사무	143건
채권양도 관련 신고 접수 사무	425건
제3자에 대한 업무 위탁 등의 신고 접수 사무	198건
협회 가입·탈회 신고 접수 사무	67건
기타 접수 사무	9건
합계	9,060건

(주) 2012년도(2012년 4월~2013년 3월) 접수건수

(4) 규칙의 개정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991년 법률 제77호)의 일부 개정에 따라 대금업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인용 조문이 개정되면서 ‘행정협력사무’의 운용을 규정한 ‘행정 협력 사무규칙’의 일부를 개정했다.

(5) 본부·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 모집

업계 규모의 축소와 회원사의 감소에 따라 협회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해져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 2012년 11월에는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18명의 직원이 퇴직했다.

(6) 본부 조직의 개편

회원사 수와 회비 수입의 감소 등 협회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자 2013년도 본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부문 통폐합과 사무 분장을 위한 검토 및 이에 따른 각종 규칙의 개정 등 제반 준비를 실시했다.

(7) 지부 운영의 합리화·효율화 추진

지부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지부규칙에 따라 재무국 소재지 지부 이외의 9개 지부를 ‘특례지부’ (상시 직원이 없는 지부)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부체계는 12개 거점 지부와 35개 특례지부로 변경되었다.

(8) 내부 감사의 실시 및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철저

협회 업무의 정비와 운용 상황을 검증하여 업무의 유효성을 평가함으로써 내부 관리 체계의 정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부의 8개 부서와 10개 지부를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향상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실시하는 등 컴플라이언스의 철저를 기했다.

제2장 업무에 관한 사항

1. 자율규제 부문

1 법령·각종 규칙 등의 준수 철저·정비·충실

1. 법령개정 등 대응

(1)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대응

대금업법 시행규칙 및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규정한 이른바 ‘지진피해 특례’와 관련하여 2012년 3월말이 경과하면 동 조항이 종료한다는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했다.

(2) 대금업법 시행규칙 등 개정 대응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과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및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개정된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시행일(2012년 7월 9일) 전과 후에 개정 내용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했다.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대금업자가 지정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운전경력증명서의 번호가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2012년 8월 2일 운전경력증명서의 취급 등에 관한 대응에 대해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했다.

(3)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개정 대응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이하 ‘범수법’이라 한다.)의 개정 대응으로 대금업자가 ‘거래를 하는 목적’과 ‘직업’,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유형을 책정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 업무연수회 등의 개최

회원사의 법령·각종 규칙 등의 준수 상황을 감안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컴플라이언스 체제정비의 지원·추진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국 10개 지구에서 업무연수회를 개최했다.

< 2012년도 업무연수회 개최 실적 >

지구	개최일	회장	테마
오кина와현	6월 19일	퍼시픽호텔오кина와(나하시)	협회 자율규제기능
도호쿠	6월 21일	호텔메트로폴리탄(센다이시)	"
홋카이도	6월 28일	호텔폴스타삿포로(삿포로시)	"
시고쿠	7월 3일	알파아나부키홀(다카마쓰시)	"
쥬고쿠	7월 4일	호텔센트리21 히로시마(히로시마시)	"
규슈	7월 5일	호텔후쿠오카가든팔레스(후쿠오카시)	"
도카이	7월 10일	캐슬플라자(나고야시)	"
긴키	7월 11일	오사카회관(오사카시)	"
호쿠리쿠	7월 12일	ANA크라운플라자호텔가나자와(가나자와시)	"
간토	7월 19일	도부호텔레반트도쿄(스미다구)	"

2012년도 업무연수회부터 각 연수회장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연수내용’과 ‘향후 연수 테마’ 관련 양케트를 실시했다.

‘연수내용’의 경우 ‘대금업계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와 관련된 사항은 [표 1], ‘고객 상담·민원 대응 실무’에 대해서는 [표 2]에 정리하였다. 전체적인 평가는 20~30%가 ‘좋았다’고 응답했으며, 60~70%가 ‘보통’, ‘불만’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1] 연수 테마 : ‘대금업계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지구	좋았다	보통	불만	무응답
도호쿠	16(28%)	37(65%)	4(7%)	0(0%)
홋카이도	26(37%)	39(55%)	1(1%)	5(7%)
시고쿠	9(27%)	21(64%)	2(6%)	1(3%)
쥬고쿠	6(14%)	33(75%)	5(11%)	0(0%)
규슈	20(18%)	80(71%)	12(11%)	0(0%)
도카이	19(24%)	54(68%)	4(5%)	2(3%)
긴키	43(26%)	110(66%)	7(4%)	7(4%)
호쿠리쿠	5(23%)	17(77%)	0(0%)	0(0%)
간토	63(18%)	238(68%)	46(13%)	4(1%)
오кина와	12(40%)	18(60%)	0(0%)	0(0%)
총계	219(23%)	647(67%)	81(8%)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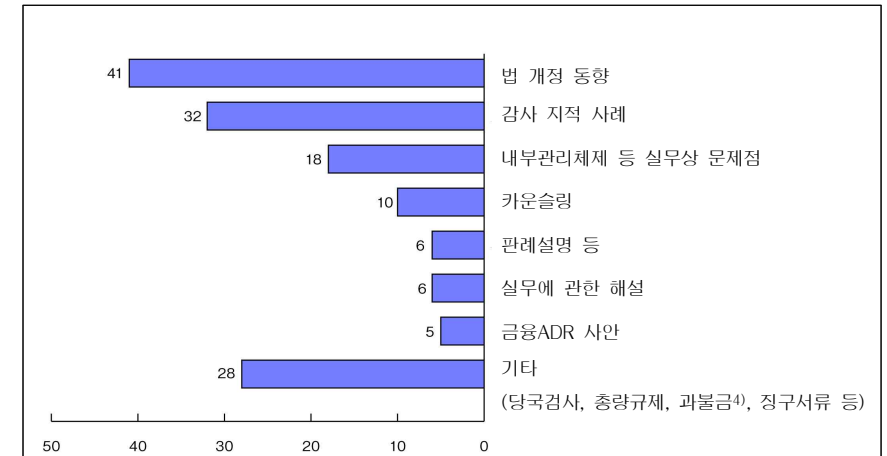
[표 2] 연수 테마 : ‘고객 상담·민원 대응 실무’

지구	좋았다	보통	불만	무응답
도호쿠	22(39%)	30(52%)	5(9%)	0(0%)
홋카이도	27(38%)	37(52%)	3(4%)	4(6%)
시고쿠	14(42%)	18(55%)	1(3%)	0(0%)
쥬고쿠	18(41%)	22(50%)	4(9%)	0(0%)
규슈	43(38%)	64(57%)	2(2%)	3(3%)
도카이	20(25%)	53(67%)	2(3%)	4(5%)
긴키	62(37%)	90(54%)	7(4%)	8(5%)
호쿠리쿠	7(32%)	14(64%)	1(4%)	0(0%)
간토	102(29%)	220(63%)	23(7%)	6(1%)
오кина와	16(53%)	14(47%)	0(1%)	0(0%)
총계	331(34%)	562(58%)	48(5%)	25(3%)

이어서 향후 연수 테마와 관련하여서는 [표 3]과 같이 법 개정 동향과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례, 실무상 문제점, 카운슬링(고객 대응 기본 스킬), 판례설명 등 업무에 관한 희망사항이 많았다.

[표 3] 주요 희망 연수 테마 집계표

(단위 : 희망건수)



이번 앙케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최를 희망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에 도호쿠지구와 규슈지구에서 지구협의회 업무연구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했다.



4) 대금업체가 대출을 실시할 때 이자제한법상의 금리(15~20%)가 아닌 출자법 상의 금리(29.2%)를 적용하여 대출을 실시해왔는데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금업체가 이자제한법상의 금리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를 과불금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이어졌다.

< 2012년도 지구협의회 업무연수회 개최 실적 >

지구	개최일	연수회장	테마
도호쿠	11월 5일	센다이국제호텔(센다이시)	① 고객대응 실무 향상 ② 현장 감사 개요와 지적 사례
규슈	11월 16일	호텔후쿠오카가든팔레스(후쿠오카시)	"

테마는 ‘고객 대응 실무 향상’ 과 ‘현장 감사 개요와 지적 사례’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호쿠 · 규슈 양 지구협의회 연수회 개요

① 고객 대응 실무 향상

고객 대응 기본 스킬 ~ 카운슬링적 접근법 ~

카운슬링이란 ‘상담자와 카운슬러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담자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 이라고 한다. 회원사의 업무 중에는 상황이 곤란해져 상담을 신청한 고객의 원인과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상환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업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금업 상담 · 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고객의 민원을 살펴보면 “위압적인 독촉을 받았다” 와 “매뉴얼에 입각한 태도에 말을 붙이기가 힘들었다”, “처음부터 연체를 한 당신이 나쁘다는 식의 취급을 받았다” 등과 같은 내용이 있어 고객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고 하는 역할에서 괴리되어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연수에서는 고객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법과 관련하여 카운슬링적인 접근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대응 상 유의사항

- ① 상담을 신청해온 고객의 불안한 심정을 이해한다.
- ②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성만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 ③ 이치에 따른 설득보다는 감정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다중채무자(연체자)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는다.

(2) 카운슬링적인 접근방법(골짜기)

대응 상 유의사항을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고객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적절한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카운슬러로서의 기본자세’와 ‘스킬’의 습득이 요구된다.

① 카운슬러(담당자)로서의 기본자세

- 무조건적인 긍정적 배려(수용)

상대(고객)를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상대가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호소하는 점을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맞다, 틀리다 등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야 한다.

- 공감적 이해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상대가 느끼는 것처럼 이해해야 한다.

② 카운슬링 스킬

기본 스킬로 ‘경청’과 ‘반복’, ‘감정의 명확화’, ‘지지’, ‘질문’, ‘요약’ 등이 있는데 이러한 스킬을 구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3) 결론

카운슬링적인 접근을 업무에 도입하면 담당자는 상황이 곤란한 문제를 안고 상담을 신청해 온 고객에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을 심리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대응은 고객의 이익 보호에 직결됨은 물론 채권자(회원사) 입장에서도 채권 보전이나 고객의 이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② 현장 감사의 개요와 지적 사례

(1) 현장 감사의 개요

현장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회원사에게 사전통지하고 감사결과 통지를 받을 때까지의 감사의 흐름을 설명했다.

- ① 감사를 시작하기 3주 정도 전에 감사기간과 대상 점포, 감사원명 등을 기재한 ‘감사 실시 통지’와 ‘사전 준비 의뢰’, ‘사전 확인 질문서’, ‘경영자 질문’ 등을 송부한다.
- ② ‘사전 확인 질문서’와 ‘경영자 질문’에 응답을 기재한 후 ‘계약서류 1부(견본)’, ‘조직도’ 등과 함께 사전확인 질문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협회로 송부한다.
- ③ 감사에서 점검하는 장부와 전표 등이 ‘사전 준비 의뢰’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내에서 사용하는 장부와 전표 등을 감사가 시작되는 날까지 준비한다.
- ④ 감사원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전준비를 해놓은 장부와 전표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내용을 설명한 후 개선방법을 지도한다. 감사 마지막 날에는 점검 결과를 대표자와 경영진, 주임자 등에게 설명한다.
- ⑤ 감사 결과를 전 종업원에게 알리고 지적을 받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한다.
- ⑥ 감사가 종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통지가 대표자 앞으로 우송된다.
- ⑦ 법령 등을 위반한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 등 위반 관련 신고서’를 제출한다.

(2) 지적 사례와 개선책

2011년도와 2012년도 상반기에 지적건수가 많았던 다음과 같은 지적 사항 등에 대해 그 내용과 개선책, 재발 방지책을 설명했다.

- ① 대금업법 제16조의 2 : 사전설명서의 미교부, 기입 누락
- ② 대금업법 제17조 : 계약서 기입 누락
- ③ 대금업법 제19조 : 추심 교섭 기록의 기입 누락
- ④ 대금업법 제12조의 3 :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자율규제 제11조 : 사내체제의 미정비(내부감사, 업무검증을 적절하게 하지 않는다.) 등

(3) 구두 지도 사안

지적 사항은 아니지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두로 지도한 다음 사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 ① 연수기록의 작성 보관 미흡
- ② 지정분쟁해결기관, 지정신용정보기관, 개인정보보호선언 등의 공표 누락
- ③ 계약서에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조항 미반영 등

(4) 처분, 조치

회원이 ‘법령 등 위반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면 법률심사부에서 심사를 거친 후 ‘법률위원회’와 ‘자율규제회의’, ‘이사회’의 심의에 따라 처분과 조치가 결정된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년간 241개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이중 11개 회원을 대상으로 내린 처분과 조치의 내용을 설명했다.

3. 컴플라이언스체제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1) 학습지원 프로그램 ‘JFSA-Learning’의 제공

대금업법 등이 요구하는 대금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확립하고 대금업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인 ‘JFSA-Learning’을 이용하여 연수와 지도를 실시했다.

2012년도의 수강 대상은 (1) 신규 가입 회원사 (2) 법령 등 위반 신고서·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사이다.

학습지원 프로그램 ‘JFSA-Learning’

법령을 준수한다는 관점에서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이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e-러닝기능(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원사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대금업법에 따른 지도를 한다.

교재와 교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이해도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도 테스트에 답변을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다.

< 2012년도 학습지원 프로그램 ‘JFSA-Learning’ 실시 결과 >

[합계]

수강인원 명	대상 회원사	수강 회원사	전 수강생이 수료한 회원사	수료한 수강생 수
	196개사/2,319명	155개사(79.1%)/1,250명	109개사(70.3%)/727명	1,133명

【내역】

《신규 가입 회원사》

수강생명	대상 회원사	수강 회원사	전 수강생이 수료한 회원사	수료한 수강생 수
	60개사/356명	43개사(71.7%)/284명	21개사(48.8%)/57명	235명

《지도 대상 회원사》

수강생명	대상 회원사	수강 회원사	전 수강생이 수료한 회원사	수료한 수강생 수
	136개사/1,963명	112개사(82.4%)/966명	88개사(78.6%)/670명	898명

(2) 법령·판례 등 검색 시스템의 제공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령·판례 등에 근거하여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정비용 툴로써 “법령·판례 등 검색 시스템”을 회원사 전용 사이트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법령·판례 등 검색 시스템”은 단순한 법령과 판례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행정 처분과 협회의 처분 사례, 협회의 각종 규정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일반인에 대한 의견 공모 내용도 수록하였으며 2012년 4월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수록된 데이터의 충실화를 도모했다.

< 주요 업그레이드 내용 >

수록 데이터

법령 : 약 120개 법령 → 약 10,000개 법령으로 확대
 판례 : 약 19만건 → 약 21만건으로 확대
 갱신 빈도 : 2개월에 1회 → 월 2회

4. 문의에 대한 지도와 업무용 서식 등의 개정에 따른 내부관리 체제 확립 지원

(1) 회원사가 전화 등으로 업무 문의 시 대응 현황

회원사가 법령과 각종 규칙 등에 근거한 실무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내규칙 책정, 광고 사전 심의 등과 관련한 상담 및 문의를 해올 경우 이에 대응하고 있다.

< 회원사의 각종 문의 건수 >

(단위 : 건)

분류 \ 연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사내규정 등	1,413	152	541	1,518	217
광고권유 등	1,239	1,457	1,411	840	565
법령 등 해석	3,055	4,249	5,470	1,607	1,679
서식종류 관련	390	296	734	220	208
ID/패스워드	60	5	0	0	-
JFSA-Learning 관련	-	-	-	-	316
기타	513	476	942	244	488
계	6,670	6,635	9,098	4,429	3,157
(월평균)	556	553	758	369	263

2012년도에 접수된 총 문의건수는 지난해 대비 1,272건 감소한 3,157건으로 나타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실시한 전 회원사에 대한 사내규칙 점검이 거의 종료되어 ‘사내규정 등’ 관련 문의가 지난해 대비 1,301건 감소한 217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부터 추가된 JFSA-Learning 관련 문의가 ‘JFSA-Learning 관련’이란 분류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되면서 316건의 문의가 있었다. 총 문의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법령 등의 해석’ 관련 문의는 지난해 대비 72건 증가한 1,679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앞에서 기술한 법령 개정 내용에 관한 설명이나 해당 개정 내용을 감안한 협회의 각종 대응과 관련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FAQ 등을 이용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기관지에 보고 형식으로 게재하였다.

(2) 업무용 서식과 법정 교부서류 등의 모범안 제공 등

대금업자에 대한 업무지원 차원에서 대금업법 상 교부, 게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하 ‘법정교부서류 등’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업무용 서식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다. 기타 판매하고 있지 않은 ‘법정 교부서류 등’ 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용 서식 등은 앞에서 기술한 2012년도의 법령 개정 등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개정을 실시했다.

〈 업무용 서식과 법정교부서류 등의 모범안 일람 〉

	서식명	근거법령 등
1	※대출신청서(고객카드)	감독지침Ⅱ-2-12-1(1)①나
2	종업원증명서	법12조의 4 제1항
3	종업원명부	법12조의 4 제2항
4	대부조건표	법14조
5	○대부계약사전설명서	법16조의 2 제1항
6	※연대보증계약개요설명서	법16조의 2 제3항
7	○※연대보증계약상세설명서	법16조의 2 제3항
8	※연대보증계약상세설명서 보충설명서	법16조의 2 제3항
9	○※차용증서	법17조 제1항
10	○※연대보증계약서	법17조 제3항
11	※영수증	법18조
12	특정공정증서 작성 사전설명서	법20조 제3항
13	채권양도통지서(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통지)	법24조 제1항
14	대출계획서(사업자금/단기긴급자금/창업자금)	시행규칙 10조의 23 제2항 제4호
15	교섭경과기록부(법19조 장부의 일부)	시행규칙 16조 제1항 제7호
16	개인정보취급동의서(CIC사 신청서용)	법41조의 36 제1항
17	개인정보취급동의서(CIC사 계약서용)	법41조의 36 제2항
18	※개인정보취급동의서(IICC사 신청서용)	법41조의 36 제1항
19	※개인정보취급동의서(IICC사 계약서용)	법41조의 36 제2항

(주) ○ 표가 있는 모범안은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표가 있는 모범안은 회원사 전용 업무용 서식으로 협회 지부에서 판매

서식 하단에 밑줄을 그은 서식은 2012년도에 개정하였다.

5. 광고 사전 심의 · 지원 · 지도

(1) 광고 사전심의의 연도별 실시 현황

회원의 중요한 영업활동 중 하나인 광고가 한 때 과장광고와 다중채무자를 양산한다고 하여 문제시되었던 점과 자금수요자가 업체 및 상품을 선택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 기본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2008년 8월 신문과 잡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텔레비전 · 전화번호부에 게재되는 개인 대상 무담보 무보증 대부계약과 관련된 광고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실시하였다.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가 협회의 승인을 받고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조사도 2008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 광고 사전심의 신규 신청건수 〉

(단위: 건)

매체(심의 개시 시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신문 · 잡지 (2008년 8월부터)	662	570	866	403	351
전화번호부 (2009년 8월부터)	-	179	264	194	192
텔레비전 (2008년 9월부터)	31	92	113	103	146
합계	693	841	1,243	700	689
첫 회 승인율※	63.6%	62.1%	60.7%	72.7%	94.5%

(주) 첫 회 승인율(첫 회 신청에서 개선 요청 없이 첫 회에 승인받은 광고의 비율)은 회원사의 자율규제규정에 대한 이해도의 척도로 판단된다. 2012년도의 경우 4개 매체 평균 94.5%로 나타나 자율규제규정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광고 증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가 협회의 승인을 받고 실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조사를 2008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텔레비전광고의 경우에는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 기본규칙’ 제48조에 규정된 ‘방송 시간대’ 등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조사를 2008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 신문·잡지, 전화번호부 광고의 미승인 광고비율 (미승인건수/조사건수)
· 텔레비전 광고의 자율규제규정 위반건수 (전체광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신문·잡지	전화번호부	텔레비전
2008년도	17.2% (666/3,872)	-	2건 (-)
2009년도	1.3% (192/14,322)	-	4건 (0.09%)
2010년도	0.9% (211/23,595)	13.9% (132/948)	1건 (0.03%)
2011년도	0.45% (86/19,304)	1.6% (17/1,053)	2건 (0.05%)
2012년도	0.04% (6/16,755)	0% (0/800)	4건 (0.11%)

모니터링 조사를 시작한 2008년도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게재된 신문 광고 비율이 17.2%였지만 해당 광고를 게재한 회원사에 대한 지도와 광고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결과 2012년도의 미승인 광고 비율은 신문의 경우 0.04%, 전화번호부 광고의 경우 0건으로 나타나 2012년도 말 기준 회원사의 광고는 99.9%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회원사의 광고가 큰 폭으로 건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와 전단지 등 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광고의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회원사가 광고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대응하여 회원사가 광고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3) 광고의 건전화를 위한 대응 현황

대금업 광고가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광고 관련 단체와 제휴를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공익사단법인 일본광고심사기구(JARO)와 일반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 야후지식회사 등과 의견교환을 했다.

비회원사의 신문광고 등에 대한 조사 결과도 감독관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나 신용카드현금화업자 등의 악질적인 광고에 대해서도 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6. 법령 등 위반 신고 현황과 조치 현황

(1) 법령 등 위반 관련 신고 현황

당 협회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행정당국이 실시하는 현장 감사와 협회가 실시하는 현장 감사, 회원사 스스로 실시한 사내 조사 등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협회에 ‘법령 등 위반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협회가 발족된 2007년 12월부터 2013년 3월말까지 제출된 법령 등 위반신고사안은 총 2,33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법령 등 위반신고사안은 2010년 6월에 있었던 개정대금업법 완전시행에 따라 새로운 행위규제가 도입되면서 2010년도 이후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도에는 665건의 법령 등 위반신고가 있었으며 위반한 내용으로는 지정신용정보기관에 정보 등록, 총량규제에 따른 상환능력조사, 계약의 상대방이 되려는 자에 대한 사전교부서면, 이자제한액을 초과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령 등 위반이 주를 이루었다. 이 4개 항목이 전체 신고의 절반을 넘었으며 2012년도의 경우에는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시행으로 도입된 행위 규제 관련한 법령 등 위반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2012년도의 법령 등 위반신고건수는 전년도보다 251건이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지정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 등록 관련 신고가 142건, 총량규제 관련 상환능력 조사 관련 신고가 56건 증가한 점이 작용한 듯하다.

〈 법령 등 위반 신고 사안 수(해당 조문별 일람표) 〉

(단위 : 사안 수)

연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
해당조문 등						
8조 (변경신고)	59	63	161	82	65	430
12조의 2 (업무운영에 관한 조치)	1	2	3	14	11	31
12조의 3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6	6	11	2	3	28
12조의 6 (금지행위)	6	5	8	0	1	20
12조의 8 (이자, 보증료 등에 관한 제한 등)	0	0	2	2	16	20
13조, 13조의 2,3,4 (상환능력 조사 등)	3	0	90	53	109	255
14조 (대부조건 등의 게시)	5	6	34	12	9	66
15조 (대부조건 등의 광고 등)	5	8	27	9	17	66

16조의 2 (보증)계약체결 전 서면교부)	3	6	35	38	47	129
17조 (계약체결시의 서면교부)	22	23	69	48	51	213
18조 (수취증서의 교부)	11	14	30	9	23	87
19조 (장부의 구비)	26	8	48	13	18	113
19조의 2 (장부의 열람)	5	0	2	1	6	14
21조 (추심행위규제)	23	7	36	13	22	101
22조 (채권증서의 반환)	5	4	15	2	10	36
24조 (채권양도 등의 규제)	2	2	14	5	3	26
41조의 35,36,37,38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	0	0	9	44	186	239
출자법 5조 2항 (고금리 처벌)	13	3	6	1	1	24
자율규제기본규칙	44	34	66	32	19	195
기타 (주)	43	34	80	34	48	239
합계 (회원 수)	282(164)	225(132)	746(320)	414(198)	665(254)	2,332

(2) '법령 등 위반신고사안 등에 관한 조치 기준' 시행

회원이 제출한 '법령 등 위반 관련 신고서'는 '규율위원회'에서 개별 사안별로 심의가 이루어진다. 동 위원회에 부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국에서 조치안을 작성하는 관계로 2012년 4월 1일부터는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용을 개시한 '법령 등 위반신고사안 등에 관한 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의 종류 및 내용을 담은 사무국안을 작성한 후 동 위원회에 제안을 하고 있다.

'법령 등 위반 신고사안 등에 관한 조치 기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조치기준의 역할

- 본 기준은 어디까지나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조치안 작성 시의 기준이다.

② 조치의 적용

- 정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처분, 정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권고, 정관 제5조에서 규정하는 문서주의에 대해 각각의 처분과 조치의 내용을 명기
- '조치 불필요'와 '조치 대상 제외'를 명기
 - '조치 불필요'는 위반 내용이 경미하여 시정 개선이 완료되었고 재발 방지가 예상되는 경우
 - '조치 대상 제외'는 협회 가입 전의 사안이거나 대금업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③ 조치의 양형 기준

- 대금업법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되는 조문에 따라 협회의 조치 내용을 열거
- 해당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악질성 또는 배경이 된 경영관리체제 등 조치안의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열거

④ 조치의 특례

- '규율위원회'에 부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안을 명기

⑤ 조치의 종료

- 회원권 정지기간 종료 시의 절차

⑥ 시행일

-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
(2012년 3월 15일 2011년도 제9회 규율위원회에서 승인)

(3) 회원사에 대한 조치 현황

회원이 제출한 '법령 등 위반에 관한 신고서'의 경우에는 정관 제56조에 근거하여 자율규제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자율규제회의위원 3명과 학문적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된 '규율위원회'에서 개별사안별로 심의하여 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규제회의 등을 거쳐 처분이 결정된다.

2012년도의 경우에는 '규율위원회'를 총 11회 개최하여 심의를 한 결과, 정관 제21조에 규정한 처분이 필요한 회원사는 4개 회원사(회원권 정지 2개 회원사, 견책 2개 회원사) 정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권고가 필요한 회원사는 1개 회원사, 정관 제5조의 문서주의가 필요한 회원사는 10개 회원사였다. 이 중 정관 제21조에 근거한 처분 및 정관 제22조에 근거한 권고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자율규제회의에서 규율위원회의 의견대로 처분 등이 결정되었다.

2012년도에 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한 회원사는 15개 회원사로 전년도에 비해 3개 회원사가 증가했는데 이는 문서주의를 받은 회원사가 전년도에 비해 4개 회원사가 증가하여 10개 회원사인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 처분 등 현황 일람표 >

(단위 : 회원사수)

		제명	회원권 정지 (권고병과)	견책 (권고병과)	권고 (단독)	문서주의	계
2008년도	법령 등 위반	0	5	0	4	7	16
	서류감사	0	81	26	27	55	189
	계	0	86	26	31	62	205
2009년도	법령 등 위반	0	1	0	0	6	7
	서류감사	6	50	1	0	0	57
	계	6	51	1	0	6	64
2010년도	법령 등 위반	3	3	2	0	10	18
	서류감사	2	5	0	0	0	7
	계	5	8	2	0	10	25
2011년도	법령 등 위반	0	2	1	3	6	12
	서류감사	0	1	0	0	0	1
	계	0	3	1	3	6	13
2012년도	법령 등 위반	0	2	2	1	10	15
	서류감사	0	0	0	0	0	0
	계	0	2	2	1	10	15
합계	법령 등 위반	3	13	5	8	39	68
	서류감사	8	137	27	27	55	254
	계	11	150	32	35	94	322

7.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된 보고 사안

< 2011년도 상반기(2011년 4월~9월) >

(단위 : 건)

누설 등의 양태	누설 등을 한 자				
		종업원	위탁처 배송자	배송자 이외의 위탁처	기타
① 배송 등의 오류	537	384※1	146	7	0
② FAX 오류 송신	15	14	0	1	0
③ 메일 오류 송신	13	13	0	0	0
④ 직접 교부 시 오류	0	0	0	0	0
⑤ 구두 누설	4	4	0	0	0
⑥ 오류 폐기	12	10	0	2	0
⑦ 분실	27	15	3	3	6
⑧ 신용정보기관의 오류 등록	0	0	0	0	0
⑨ 도난	1	0	1	0	0
⑩ 불법적인 액세스	1	0	0	0	1
⑪ 기타	35	5	6	19	5
합계	645	445	156	32	12

※1 384건 중 307건은 고객이 주소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했다.

< 2011년도 하반기(2011년 10월~2012년 3월) >

(단위 : 건)

누설 등의 양태	누설 등을 한 자				
		종업원	위탁처 배송자	배송자 이외의 위탁처	기타
① 배송 등의 오류	452	273※2	171	7	1
② FAX 오류 송신	9	8	0	1	0
③ 메일의 오류 송신	39	39	0	0	0
④ 직접 교부 시 오류	7	7	0	0	0
⑤ 구두 누설	3	3	0	0	0
⑥ 오류 폐기	13	12	0	1	0
⑦ 분실	14	5	1	3	5
⑧ 신용정보기관의 오류 등록	0	0	0	0	0
⑨ 도난	2	0	0	2	0
⑩ 불법적인 액세스	1	0	0	0	1
⑪ 기타	32	6	1	15	10
합계	572	353	173	29	17

※2 273건 중 214건은 고객이 주소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했다.

Ⅱ 상담·민원·분쟁해결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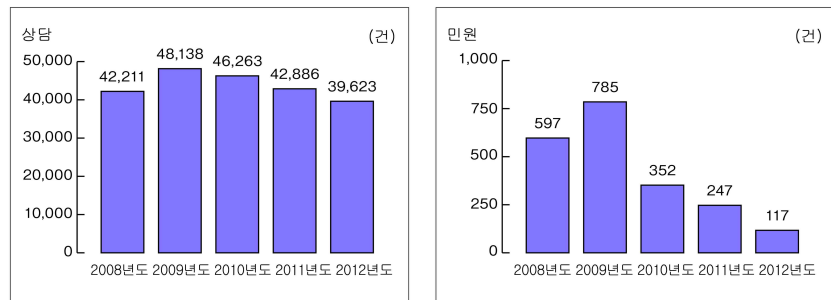
1. 개요

(1) 총 접수건수

2012년도(2012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에 접수된 상담과 민원의 접수건수는 ‘상담’ 이 39,623건, ‘민원’ 이 117건이었으며, 상담과 민원건수를 합하면 39,740건이었다. ‘분쟁’의 경우 7건을 수리했으며 ‘상담·민원·분쟁’의 총 접수건수는 39,747건으로 조사됐다.

‘상담’과 ‘민원’을 접수 받은 경로별로 살펴보면 전화로 접수받은 건수가 39,453건(99.3%), 도쿄 본부에 있는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나 도도부현 지부 상담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건수가 226건(0.6%), 문서 등으로 접수한 건수가 61건(0.1%)이었다.

총 접수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6,115건(14.3%)이 증가했었지만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2,303건(-4.7%), 2011년도에는 전년 대비 -3,480건(-7.5%), 2012년도에는 전년 대비 -3,393건(-7.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 민원인의 속성 (상담·민원)

‘상담’과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남녀 성비로 분류하면 남성이 19,195명(48.3%), 여성이 20,383명(51.3%),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162명(0.4%)이었다. 신청자를 ‘채무자 본인’과 ‘본인 이외(배우자·친척 등)’로 분류하자 ‘채무자 본

인’이 31,771명(79.9%), ‘친척’이 3,577명(9.0%), ‘배우자’가 2,001명(5.0%), 친구 및 회사 상사 등 ‘제3자’가 562명(1.4%)으로 나타났다.

2. 상담

(1) 접수 건수

‘상담’으로 접수된 건수는 39,623건이었으며, 월간 평균 건수는 약 3,301건이었다. 2011년도와 비교하면 연간 7.6%인 3,377건이 감소하였다.

(2) 상담 내용

상담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금업체에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등 ‘업체의 연락처’ 관련 상담이 14,208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는 ‘계약 내용’ 관련 상담이 6,730건(17.0%), 대출자속제도와 관련된 상담인 ‘대출 자속 의뢰·철회’가 4,564건(11.5%), 대출 받을 곳을 소개 받고 싶다는 상담인 ‘대출 관련’ 상담이 2,715건(6.9%), 채무국 및 지자체 등록 유무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등록업체 확인’이 2,010건(5.1%), 다중채무 등으로 상환에 지장을 겪고 있어 상담을 신청한 ‘상환 곤란’이 1,268건(3.2%) 등으로 나타났다.

(3) 대응 결과

자금수요자 등이 상담을 신청하면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응을 실시했다. 신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협회 지도에 따른 처리·시정·조언 등’이 24,923건(6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 제공’이 9,773건(24.7%), ‘타 기관에 소개’가 4,101건(10.4%) 등이 뒤를 이었다.

‘타 기관에 소개’에서 소개한 상담 기관으로는 개인 신용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신용정보기관’이 1,516건(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등록업체의 감독기관으로 안내한 ‘도도부현’이 604건(14.7%), 전반적인 법률상담기관으로서 ‘법테라스5)’가 497건(12.1%), 주로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기관인 ‘경찰’이 386건(9.4%), 채무 조정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호사회·사법서사회’가 281건(6.9%) 등으로 나타났다.

5) 2006년 4월 종합법률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약칭으로 사법제도를 국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상담 내용별 추이 >

(단위 : 건)

상담내용	2011 년도	2012년도													년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년 대비 증감율	
업체연락처	11,920	1,037	1,165	1,094	1,074	1,122	1,013	1,222	1,301	1,290	1,235	1,235	1,420	14,208	+19.2%	
계약내용	7,332	641	696	615	554	525	365	476	621	633	567	518	519	6,730	-8.2%	
대출자속 익리·철회	4,668	400	420	366	349	406	334	448	388	295	402	401	355	4,564	-2.2%	
등록업체 확인	3,174	241	300	231	211	243	234	217	231	171	225	187	224	2,715	-14.5%	
대출관련	3,438	213	243	178	191	195	177	215	150	78	110	121	139	2,010	-41.5%	
상환곤란	1,724	94	119	101	92	122	110	112	109	81	97	122	109	1,268	-26.5%	
과불금	1,353	96	120	97	102	100	84	110	110	63	94	105	104	1,185	-12.4%	
신용정보	1,638	102	99	88	82	98	78	79	73	73	66	85	54	977	-40.4%	
불법사금융· 위법업자 피해 없음	1,183	69	94	70	66	47	40	56	52	39	46	48	52	679	-42.6%	
신분증 등의 분실	814	51	44	49	48	58	44	41	46	46	52	52	45	576	-29.2%	
불법사금융· 위법업자 피해 있음	790	52	48	56	48	33	47	48	32	34	37	40	59	534	-32.4%	
상환의무	603	36	35	49	45	48	27	45	40	44	35	27	29	460	-23.7%	
금리·계산 방법	295	17	18	18	12	12	11	23	16	14	8	14	13	176	-40.3%	
장부 공개	161	10	8	14	6	7	13	9	6	14	6	3	8	104	-35.4%	
자기파산·조정 ·민사회생절차	62	6	7	1	8	5	1	6	6	9	8	4	10	71	+14.5%	
DM	60	6	2	7	6	3	7	4	2	6	1	2	4	50	-16.7%	
보증인 관계	71	6	3	2	6	2	6	6	1	3	5	2	2	44	-38.0%	
수수료	43	6	2	2	0	7	1	1	2	3	1	1	7	33	-23.3%	
기타	3,557	333	295	233	208	200	251	328	303	247	272	269	300	3,239	-8.9%	
계	42,886	3,416	3,718	3,271	3,108	3,233	2,843	3,446	3,489	3,143	3,267	3,236	3,453	39,623	-7.6%	

(4) 경제적 자립 지원 (카운슬링)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에서는 다중채무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계 개선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쇼핑중독이나 도박중독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된 상담자에게 심리 카운슬링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12년도의 경우 신규 상담자 111명(채무자 본인 41명, 배우자·친척 70명)을 대상으로 540회

에 걸쳐 상담을 실시했는데 협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전화로 상담(이하 ‘면담 등’이라 한다)을 받았다. 또한 전년도부터 상담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83명(채무자 본인 32명, 배우자·친척 51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495회에 걸쳐 면담 등을 실시했다.

신규 상담자와 계속 상담자를 합산한 2012년도 면담 등의 총 합계는 194명(채무자 본인 73명, 배우자·친척 121명), 1,035회였다.

1,035회 중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횟수는 229회(22.1%), 전화 상담이 806회(77.9%)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의 합계는 1,013시간, 1회 평균 면담 등 시간은 약 59분이었다.

< 상담자 수와 면담 횟수 >

항목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상담자 수	면접 횟수	상담자 수	면접 횟수	상담자 수	면접 횟수	상담자 수	면접 횟수	상담자 수	면접 횟수
신규 상담자	79명	393회	133명	834회	135명	694회	116명	530회	111명	540회
계속 상담자	-	-	47명	268회	63명	352회	63명	419회	83명	495회
합계	79명	393회	180명	1,102회	198명	1,046회	179명	949회	194명	1,035회

3. 민원

(1) 접수 건수

‘민원’으로 처리한 건수는 다음에 게재한 표와 같이 117건이었으며, 월간 평균 건수는 9.8건이었다. 전년도 대비 연간 52.6%인 130건이 감소했다.

민원건수는 2009년도의 785건을 정점으로 2010년도에는 352건, 2011년도에는 247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7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117건 중 전화로 신청한 건수는 88건(75.2%)이었으며 문서로 신청한 건수는 6건(5.1%), 상담·분쟁해결센터나 지부 상담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건수는 3건(2.6%), 기타가 20건(17.1%)이었었는데 대부분이 행정기관의 창구나 일본크레디트 카운슬링협회 등이 소개한 민원이었다.

117건 중 회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이 116건이었으며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이 1건이었다. 등록관청별로 살펴보면 채무국 등록업체가 81건, 도도부현 등록업체가 36건이었다.

(2) 민원 내용

민원 내용별로는 ‘계약 내용’ 이 30건(25.6%), ‘추심행위’ 가 25건(21.4%), ‘장부 공개’ 가 19건(16.2%), ‘사무 처리’ 가 17건(14.5%), ‘과불금’ 이 9건(7.7%), ‘개인정보’ 가 8건(6.8%), ‘대출관련’ 이 5건(4.3%), ‘광고·권유(사칭 이외)’ 가 2건(1.7%)이었다.

< 민원 내용별 추이 >

(단위 : 건)

상당내용	2011 년도	2012년도												년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년 대비 증감율
장부 공개	53	2	7	4	3	1	1	3	1	1	1	5	1	30	-43.4%
계약내용	46	4	3	1	4	3	3	0	1	0	1	2	3	25	-45.7%
추심행위	54	2	0	5	3	2	2	2	1	1	0	1	0	19	-64.8%
사무처리	30	3	1	0	0	1	3	2	3	0	2	2	0	17	-43.3%
개인정보	19	3	2	0	0	0	0	0	0	3	0	0	1	9	-52.6%
과불금	19	0	0	0	0	2	2	3	1	0	0	0	0	8	-57.9%
대출관련	10	0	1	0	0	0	0	2	2	0	0	0	0	5	-50.0%
광고·권유 (사칭이외)	6	1	0	0	0	0	1	0	0	0	0	0	0	2	-66.7%
과잉대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연금담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보증계약	1	0	0	0	0	0	0	0	0	0	0	0	0	0	-
금리	4	0	0	0	0	0	0	0	0	0	0	0	0	0	-
행정당국 사칭·등록 업체사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기타	5	0	0	0	0	0	0	0	2	0	0	0	0	2	-60.0%
합계	247	15	14	10	10	9	12	12	11	5	4	10	5	117	-52.6%

(3) 처리 결과

협회에 접수된 민원 117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대응을 한 결과 ‘협회의 처리·시정·조언 등’ 에 따른 해결이 111건으로 전체의 94.9%였다. 그밖에 ‘기타’ 가 3건(신청인이 민원 처리 절차 거부), 2013년 3월말 현재 계속 중인 사안은 2건이다.

4. 분쟁

(1) 업무처리 기본 계약의 체결 현황

당 협회는 2010년 9월 15일, 금융청장관으로부터 지정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같은 해 10월 1일에 분쟁해결업무를 시작하여 2년 반이 경과했다. 대금업법 제12조의 2의 2에 따라 대금업자는 지정분쟁해결기관과 업무처리 기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회는 2010년 10월 1일부터 모든 등록 대금업체와 업무처리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3년 3월말 기준 전체 등록대금업자는 금융청 공표 기준으로 회원사가 1,312개사, 비회원사가 905개사로 총 2,217개사이다. 이중 계약을 체결한 대금업체는 2,211개사로 계약율은 99.7%이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개 업체는 신규 등록업자 및 폐업 예정자이다.

(2) 분쟁해결 절차 수리 현황

금년도에 처리한 분쟁사안의 수리 건수(신규 수리건수)는 7건이었으며, 2011년도에 처리하지 못한 분쟁사안 3건을 더하면 금년도 계속 사안은 10건이다.

신규사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장부 공개’ 가 1건, ‘계약 내용’ 이 1건, ‘과불금 청구’ 가 1건, ‘기타’ 가 4건(손해배상 등 청구 2건, 화해송납청구 1건, 변제조건 확인 청구 1건)이었다.

(3) 분쟁해결 절차 대응 현황

계속 사안 10건 가운데 9건의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었다. 종료된 사유로는 ‘화해 성립’ 이 3건, ‘화해 결렬’ 이 2건, ‘취하’ 가 4건이었다.

< 사례 1 >

유형	계약내용(대출 한도 확인 청구)	수리일	2011년 10월
신청인	자금수요자(법인)	종료일	2012년 4월
상대방	대금업체	청문 횟수	2회
분쟁 개요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로 개인적으로 거래가 있는 상대방이 회사 명의로 변경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300만엔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권유를 하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엔을 대출 받은 후 대출명세서에는 이용한도액으로 300만엔을 기재했다. 이후 신청인이 한도액 내인 100만엔을 추가로 대출 받고자 신청을 하자 상대방은 여신 심사를 다시 하여 대출을 거부했다. 추가 대출 시 여신 심사를 다시 한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던 신청인은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자 신청했다.		

분쟁해결 현황	【중료 : 화해 가능성 없음】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추가 대출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여 신청인에게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협회에서 신청인에게 몇 차례 연락을 했지만 신청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수리 후 180일이 경과하여 규칙에 따라 화해 가능성 없음으로 종료했다.
------------	---

< 사례 2 >

유형	화해안 승낙 청구	수리일	2012년 3월
신청인	자금수요자	종료일	2012년 6월
상대방	대금업체	청문 횟수	1회
분쟁 개요	신청인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대출제권과 관련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라 계산을 하고 상대방에게 도요의 3개 변호사회 통일 기준 등에 따라 재계산을 한 후 원금의 일괄 변제라고 하는 화해안을 제출했는데 상대방은 변제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청구했다. 상기 통일기준은 대다수의 소비자금융사가 수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특별조정이나 조정을 대신 하는 결정 시에도 존중되고 있어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상대방의 대응은 이를 무시하는 처사로 원금의 일괄변제라고 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 되도록 청구했다.		
분쟁해결 현황	【화해 성립】 분쟁해결위원회는 청문 기일에 신청인의 지불능력 등을 청취한 후 상대방이 경과이자를 청구한 점을 감안하여 쌍방에게 양보하도록 하여 잔존 원금에 쌍방이 마지막으로 교섭한 달까지의 경과이자의 절반을 더한 금원의 일괄 지급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화해가 성립되었다.		

< 사례 3 >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수리일	2011년 10월
신청인	자금수요자	종료일	2012년 10월
상대방	대금업체	청문 횟수	5회
분쟁 개요	신청인은 수천만원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으로 상대방이 채권자이고 원 채무자가 채무자로 된 리스계약에 대해서 물상 보증을 썼다. 하지만 원 채무자인 회사가 파산을 하여 신청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을 변제하면 연체이자 등은 면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수천만원의 원금을 완제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의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연체이자 등 잔금 수천만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여 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했다.		
분쟁해결 현황	【화해 성립】 분쟁해결 절차 시 잔존 채무가 있다는 점을 신청인이 확인한 관계로 그 변제방법을 협의하여 담보물건을 매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화해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좀처럼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예상되어 쌍방이 납득한 후 담보물건의 매각을 계속 진행하고 매각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잔존 채무액과 청산 방법을 별도 협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를 성립시키고 본건 절차를 종료했다.		

< 사례 4 >

유형	채무 이행 관련 화해 승낙 청구	수리일	2012년 7월
신청인	자금수요자	종료일	2012년 10월
상대방	대금업체	청문 횟수	2회
분쟁 개요	상대방이 “화해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할 의사가 있다.” 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보내자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화해 신청을 한 결과 상대방은 화해 협의를 거부하고 잔존 원금 및 변제 일까지의 이자를 일괄로 지급하도록 회신을 했다. 이에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상기 서면에 의거하여 신청인과의 화해 협의에 응하도록 요청했다.		
분쟁해결 현황	【화해 성립】 상대방이 화해협의를 응하기로 수락하여 잔존 채무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 분쟁해결위원이 화해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승낙했다.		

5. 대출자속

각 도도부현 지부를 창구로 하여 대출자속 관련 ‘등록’, ‘철회’, ‘정정’ 접수를 받은 결과 금년도의 수리건수는 ‘등록’ 이 1,593건, ‘철회’ 가 555건, ‘정정’ 이 6건으로 총 2,154건을 접수받았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경우 10%인 195건이 증가했다.

금년도 5월부터 자금수요자 등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편으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855건(구성비 39.7%)을 처리하였다.

6.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현황

2012년도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은 1,213건으로 전체 상담의 3.1%를 차지했다. 이 중 “보증금을 가로채갔다”, “허락도 없이 돈을 입금시킨 후 협박성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와 같이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상담인 ‘불법사금융·위법업자 피해 있음’ 이 534건(44.0%) 접수되었으며,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싶다” 와 같이 실제로 피해를 입기 전 단계의 상담인 ‘불법사금융·위법업자 피해 없음’ 이 679건(56.0%) 접수되었다. 후자의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바로 전에 피할 수 있었던 케이스이다.

2008년도 이후 피해 접수건수(피해 있음, 피해 없음)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도의 경우 2008년도와 비교하면 약 1/3 정도에 그쳤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자 1,213명을 대상으로 상담에 응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협회의 지도에 의한 처리·시정·조언 등’이 743건(6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타 기관 소개’가 382건(31.5%) 순이었다.

타 기관 소개에서 382명에게 소개한 기관으로는 ‘경찰’이 338건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도부현’이 15건(3.9%), ‘법테라스’가 7건(1.8%), ‘신용정보기관’이 6건(1.6%) 등이었다. 상담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이스피싱구제법에 따라 어떻게 대처를 할지 조언하였으며, 채무의 근본 원인을 청취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처한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카운슬링으로 이어진 사안도 있다. 입수한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는 금융청과 재무국, 경찰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향후 발생 방지 등에 노력하고 있다.

7. 소비자생활센터의 앙케트 조사(결과보고)

협회는 2007년 12월 설립 이후 개정대금업법의 목적 중 하나인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각지에 설치된 소비자생활센터의 협조 하에 상호 연대에 의한 상담 기획의 확충을 추진해 왔다. 2012년 7월에 협회의 향후 활동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당 협회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소비자의 진솔한 의견 청취, 대금업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소비자생활센터 144개소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소비자생활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토대로 ‘다중채무 관련 상담 접수 현황’,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협회의 인지도’, ‘지정분쟁해결기관(금융ADR)으로써의 인지도’, ‘대금업계에 대한 의견’으로 했다. 다음은 142개소에서 보내준 결과의 개요이다.

(1) 소비자생활센터의 다중채무 관련 상담 접수 현황

2011년도에 소비자생활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에서 다중채무 관련 상담 건수인 ‘프리로 등 대금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142개소 평균 7.7%였으며 이 중 135개소(98.5%)가 전년도 대비 평균 36.7% 감소했다고 회신했다. 향후 추이에 대한 예상으로는 “감소가 예상된다.”가 54.6%로 절반을 넘었으며, “현재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가 18.4%, “모르겠다.”가 17.7%, “증가가 예상된다.”가 5.7%를 차지했다.

(2) 자율규제기관으로써의 협회의 인지도

협회가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은 대금업계의 자율규제기관인 점’, ‘회원사(대금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점’,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시험의 실시 주체인 점’, ‘대금업체가 실시하는 광고의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광고 사전심의 실시’를 제외하고 각 항목 모두 70% 이상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3) 지정분쟁해결기관(금융ADR)으로써의 인지도

협회가 대금업계의 지정분쟁해결기관으로써 상담 대응과 민원 처리, 분쟁해결절차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상담 대응’, ‘민원 처리’,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각각 90%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립 지원 카운슬링’, ‘대출자숙’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알고 있다”는 응답 중 실제로 “상담자에게 협회의 상담창구를 안내했다.”, “대응을 대신해주도록 의뢰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 정도에 머물렀다.

(4) 대금업계에 대한 의견

소비자생활센터가 응대한 소비자 상담 중 상담자로부터 받은 대금업계에 대한 생생한 의견으로는 ‘총량규제·대출에 관한 사항’이 36건(40.0%),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사항’이 12건(13.3%), ‘상환 곤란에 관한 사항’이 11건(12.2%) 등으로 나타났다. 협회에 대한 의견으로는 “자율규제기관으로써의 협회의 활동을 기대한다.”가 32건(40.0%), “향후 협회와의 연계·협력을 돈독히 하고 싶다.”가 22건(27.5%), “업계의 건전화를 위해 활동을 강화했으면 한다.”가 16건(20.0%), ‘대금업자에 대한 지도 강화에 관한 사항’이 6건(7.5%)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당 협회에 기대한다.”와 같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은 <소비자의 솔직한 의견>, <소비자생활센터의 의견> 중 대표적인 사례이다.

< 소비자의 솔직한 의견 >

1	지금까지 보다 대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불안하다.
2	대출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여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다.
3	전업주부인 관계로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필요한 돈을 대출 받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대출이 가능한 업자를 찾아 대출을 받았는데 불법사금융업자였다.
4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웠다. 공적 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싶었지만 창구가 없었다.
5	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웠지만 아이 교육비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대출을 계속 받았다. 분할납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혹독한 추심으로 식사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중채무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렇다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6	독촉이 무서웠다.
7	법률이 개정되어도 업계의 체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협회에 대한 의견 >

1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무리 없이 상환하여 완제가 가능하도록 업계 전체적으로 금리를 더 인하하도록 검토했으면 한다.
2	정상적인 금융업자를 이용할 수 없는 자금수요자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불법사금융 대책을 부탁한다.
3	무리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센터와 사업자가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협회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긴밀한 연대를 가졌으면 한다.
4	가계 개선에 따른 생활 재편이나 심리카운슬링을 이용한 다중채무 재발 방지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하고 연대를 도와주고 싶다.
5	다중채무자는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담건수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계속해서 다중채무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행정기관의 상담창구와도 연대를 강화하는 등 대금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기대한다.
6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부각함으로써 안이한 대출을 조장하여 다중채무로 가는 길을 확대하고 있는 듯하다.
7	채무자의 소득과 기타 재산상태, 신용, 상환계획에 대한 조사 의무를 엄격하게 수행하도록 했으면 한다.

개정대금업법 완전시행(2010년 6월)으로 대금업계가 변화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변했다.” 라고 응답한 곳은 122개소(85.9%)였으며, “변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곳은 13개소(9.2%) 등이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좋아졌다.” 라

고 응답한 곳이 34개소(27.9%), “조금 좋아졌다.” 라고 응답한 곳이 86개소(70.5%), “좋아졌다.” 와 “조금 좋아졌다.” 를 합하면 98.4%였으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라는 응답이 1개소(0.8%), “조금 나빠졌다.” 가 1개소(0.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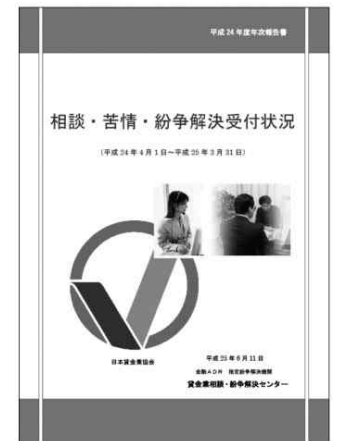
향후 방안

이번 앙케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 협회가 대금업계의 자율규제기관인 점과 정부의 지정을 받은 지정분쟁해결기관인 점에 대해서는 소비생활센터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업법 개정으로 인한 대금업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체로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소비자의 진솔한 의견과 협회(업계)에 대한 개별 의견의 경우에는 대금업자의 고객 대응 방식에 대한 우려와 대출 실행 시의 엄격한 심사를 요청하는 등의 답변도 있었다. 향후 당 협회는 앙케트 조사를 통해 파악한 소비자의 귀중한 답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와 대금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기 위해 계속해서 소비생활센터와 한층 더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8. 상담대응, 민원처리, 분쟁해결 현황 공표

당 협회는 상담대응과 민원처리, 분쟁해결 현황을 적극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연차보고서 외에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에서 “2012년도 연차보고서 상담·민원·분쟁해결 접수현황”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책자 사이즈는 A4용지 사이즈로 3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응 처리 현황을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므로 꼭 참고했으면 한다.



3 감사의 실시

1. 2012년도 감사 계획

협회는 회원사가 법령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등 내부관리체제의 정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관(제14조)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가 명료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회는 매년 감사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2012년도의 감사는 이 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다.

(1) 감사 방침

- ① 당 협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대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자금수요자 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 ② 회원사의 법령 및 협회의 정관, 기타 각종 규칙의 준수 현황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관리체제의 실시 현황을 확인하여 지도한다. 법령 등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 ③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회원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자기개선노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회원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관리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등에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감사를 실시한다.
- ④ 현장감사와 서류감사의 상호 보완을 통해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자율규제기관으로써의 감사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다.

(2) 중점 사항

2012년도의 감사는 다음 항목을 중점 항목으로 점검 및 검증한다.

- ①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관리체제의 확립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법령 등 준수 체제’ 관련 사항
- ② 과잉대부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총량규제’ 관련 사항
- ③ 거래의 적정화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서면교부’ 및 ‘추심행위’ 관련 사항
- ④ 자금수요자 등이 신청한 상담과 민원, 분쟁 등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민원 및 분쟁 등의 대응’ 관련 사항

- ⑤ 임직원이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대금업무 취급 주입자의 역할과 권한’ 관련 사항
- ⑥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 방지’ 관련 사항

(3) 기타 감사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항

- ① 현장 감사 대상 회사 수는 100개 회사 정도로 한다. 현장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자금수요자 및 대금업자의 동향, 향후 대금업 시장 등에 대해 대금업자의 경영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② 서류감사는 계속해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한다.

(4) 지적 사례 등을 회원사에게 공지

법령과 각종 규칙 등의 준수 철저 및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현장 감사 결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적 사례집 및 서류감사에 관한 개선 안내 등을 작성하여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하는 한편 문제점을 설명했다.

2. 감사의 투명성 · 실효성 향상 등을 위한 방안

■ 현장 감사

(1) 단기간 감사의 도입

감사의 적합성과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단기간 감사를 도입

- ① 지금 현 감사 요원수로 감사실적 수를 증가시킨다.
- ② 서류감사 등의 평가에서 내부관리체제가 정비되어 있다고 판정을 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③ 감사항목을 대부업무의 실태 점검으로 좁힌다.
- ④ 감사기간을 2.5일 정도로 단축한다.

(2) 감사매뉴얼 등의 정비

대금업법 및 자율규제기본규칙 등의 개정 포인트에 따라 적정하게 대금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감사매뉴얼과 업무 점검체크리스트, 서면체크리스트를 재검토했다. 단기간 감사매뉴얼과 대규모 회원사 대상 감사 매뉴얼을 새로 작성했다.

- ① 새로운 감사 방법으로 감사항목을 대금 업무 실태 점검으로 좁혀 감사일수를 단축한 감사의 ‘단기간 감사매뉴얼’을 작성했다.
- ② 2012년도의 감사매뉴얼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일본대지진 특례조치의 종료 등에 대응한 개정을 실시했다.
- ③ 회원사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한 감사 기법, 감사 항목을 선택하는 등 감사 대상 회원사에게 적합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매뉴얼을 개정하고 대출 잔액이 200억엔 이상이고 복수의 점포가 있는 대규모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 매뉴얼을 작성했다.

(3) 감사 대상 선정

현장 감사의 대상 후보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① 지역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 ② 소비자 대상 대금업체와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 ③ 중소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대규모 회원사에 대한 감사도 시도한다.
- ④ 서류감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부관리체제가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단기간 감사를 실시한다.
- ⑤ 서류감사의 평가가 낮은 회원사와 민원 상담이 들어온 회원사, 법령 등 위반 관련 신고서를 제출한 회원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⑥ 등록 행정관청의 현장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등록 행정관청과 사전 조정을 한 후 선정한다.
- ⑦ 등록 행정관청과 협회의 각 부서가 감사 요청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대응한다.

(4) 지적사례집의 작성

- ① 현장 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 중에서 회원사가 대금 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참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지적사례를 정리한 「지적사례집」을 작성했다.
- ② 특히 개정 법령 등과 관련한 지적사례를 게재하여 회원사가 개정 법령 등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③ 전체 회원사에게 배포하였으며 지구협의회에서 연수 자료로 활용했다.
- ④ 행정기관이 주최한 연수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은 경우 감사정보로 제공했다.

(5) 관리계계면, 업무 운영 면 등의 좋은 사례 수집

회원사의 내부관리체제 등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현장 감사 시 각 회원사의 관리체제와 업무 운용 면 등에서 ‘좋은 사례’를 수집했다.

■ 서류감사

(1) 서류감사의 재검토

200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류감사는 사내규칙의 책정을 비롯하여 내부관리체제의 실시현황을 확인하고 감사를 통하여 그 정비와 충실을 독려해 왔다.

그 결과 2011년도의 감사 결과에서 ‘대체로 양호’라고 인정을 받은 회원사의 비율이 90%를 넘어 어느 정도 내부관리체제가 정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회원사의 업무 실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 레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관점에서 감사 기법을 재검토했다.

① 현장감사와의 관련성 강화

- 가. 서류감사와 현장감사의 감사항목의 동일화를 도모하고 업무 수행 실태의 확인을 강화했다.
- 나. 현장감사 시에 서류감사 보고서 및 개선 보고서의 내용 점검을 강화했다.

② 업무 수행 현황 확인

- 가. 개인 대상과 법인 대상 등, 업무 실태에 따른 설문으로 했다.
- 나. 각 설문에 상세한 업무 수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다.

③ 종합평가방식에서 개별평가방식으로 변경

- 가. 평가는 전 설문에 걸쳐 미흡한 정도를 평가하는 종합평가가 아닌 업무수행 현황까지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개별평가방식으로 변경했다.
- 나. 개별 지도로 변경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도하는 방식으로 했다.

(2) 감사보고서의 개정

2011년도에 실시한 감사 결과 ‘대체로 양호’라고 인정을 받은 회원사의 비율이 90%를 넘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도에는 종전의 체제 정비 확인을 중심으로 한 설문에서 업무 수행 현황 확인에 중점을 두고 회원사가 대금업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문으로 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

- ① 전 회원사에 회신을 요청하는 공통 항목과 업태별(개인 대상 대출 또는 법인 대상 대출)로 대답할 수 있는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 ②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상세)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으로 하고 회원사가 실시하는 ‘검증의 실시·개선의 실시’ 까지를 포함하여 확인하는 설문으로 했다.
- ③ 현장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회원사가 받은 서면의 명칭 기재 란’ 및 ‘장래 지급해야 하는 상환액 란’ 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의 서면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3) 대상 회사 및 구체적인 실시방식

현장감사와 서류감사의 상호보완으로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자율규제기관으로써의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 ① 감사대상 회사 1,332개 회사(2012년 12월말 기준 전 회사)
- ② 감사 실시일

통지 발송일	2013년 1월 21일
제출기한	2013년 2월 21일

(감사대상기간 2012년 4월 1일 ~ 2013년 2월 21일)

③ 설문 문항 수

분류	설문 주요 내용	설문 문항수	(상세설문수)
I. 공통사항	대금업 영위 시 필수 기본요건의 확인 (예를 들면 대부조건 등의 게시)	28	80
II. 개인 대상 대출	개인 대상 대부 시 심사, 회수 등의 업무실태 확인	35	182
III. 법인 대상 대출	법인 대상 대부 시 심사, 회수 등의 업무실태 확인	23	139
계		86	401

※ 개인 대상과 법인 대상 대출을 모두 취급하고 있는 경우 2012년도에는 ‘공통사항과 개인 대상 대출’ 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④ 점검·평가

- 가. 제출 받은 ‘서류감사 보고서’ 와 ‘첨부서류’ 의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전체 상세 설문에 대해 회신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 나. 평가 방법은 금년도부터 종합평가방식(A~E)에서 개별평가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수행 상 문제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지도하기로 했다.
- 다. 점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한 항목은 ‘서류감사 결과 통지서’ 와 함께 ‘지적사항’ 으로 회원사에 통지했다.
- 라. 지적 시에는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항’ 과 ‘개선·재검토 필요가 있는 사항’ 으로 구분하여 통지했다.
- ※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항’ 이란 대금업법과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령, 협회 정관, 자율규제기본규칙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을 한 부분을 지적한다.
- ※ ‘개선·재검토 필요가 있는 사항’ 이란 감독지침, 사내규칙 책정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한다.

3. 감사 결과

■ 현장 감사

(1) 감사결과 개요

지적 총 건수는 103건으로 전년도 대비 1.8배 증가했다. 단기간 감사의 도입으로 감사실시 건수가 증가했으며, 회원업무부가 실시한 사내규칙의 총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내규칙이 작성기준에 못 미친다’ 라는 판정을 받은 일부 회원사가 다수 지적을 받은 결과이다.

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의 대응으로는 감사결과 통지서를 교부하고 법령 등의 위반을 지적한 회원사에게는 개선과 제발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서면 제출을 요청했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회원사에게는 법령과 각종 규칙 등의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지적사항에 대한 공지와 아울러 JFSA-Learning 수강 선정 대상으로 하는 등 회원사에 대한 지도 강화에 힘썼다.

〈 감사건수 및 지적건수 〉

(단위 : 건)

		2012년도				2011년도			
감사 실시 회원사 수		102개 회원사(특별감사 6개사)				84개 회원사(특별감사 9개사)			
지적항목		지적건수	법령 등 위반	부적절한 취급	지적건수	지적건수	법령 등 위반	부적절한 취급	
일반 감사	대금업법	80	31	49	219	27	13	14	
	자율규제 관련	9	6	3		3	1	2	
	기타 법령	8	1	7		0	0	0	
일반감사 합계 (회원수)		97 (35개사)	38 (18개사)	59 (32개사)	219 (92개사)	30 (12개사)	14 (5개사)	16 (9개사)	
특별 감사	대금업법	4	2	2	24	18	13	5	
	자율규제 관련	0	0	0		8	6	2	
	기타 법령	2	0	2		1	1	0	
특별감사 합계 (회원수)		6 (4개사)	2 (2개사)	4 (2개사)	24 (6개사)	27 (7개사)	20 (3개사)	7 (4개사)	
총계		103 (39개사)	40 (20개사)	63 (34개사)	243 (98개사)	57 (19개사)	34 (8개사)	23 (13개사)	

‘부적절한 취급’이란

- ① ‘법령·각종 규칙 등’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감사기간 중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사안 및 감사기간 중 개선에 착수하여 자율적인 개선 완료가 기대되는 사안
- ② ‘법령·각종 규칙 등’에서 명시된 위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판단한 사안

‘개선지도’란

- ① 현행 법령 등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 ② 저촉된 ‘법령·각종 규칙 등’에 해당조문이 노력의무규정인 사안

기타 법령이란

대금업법과 자율규제기본규칙 외에 대금업 업무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출자법 등

(2) 지적사항의 내용

지적 내용은 ‘법령 등 위반’ 과 ‘부적절한 취급’ 의 경우 ‘서면교부(대금 16조의 2, 17조, 18조)’, ‘추심행위(대금 19조, 21조)’, ‘본인 확인(범수법 6조)’ 에 관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띈다.

〈 지적사항 내용 〉

(단위 : 건)

법령	지적 개요	2012년도		2011년도	
		법령 등 위반	부적절한 취급	법령 등 위반	부적절한 취급
대금8조	변경신고서 미제출			1	
대금12조의3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미설치, 역할 발휘 부족		3	1	
대금12조의4	종업원명부의 비치 미흡	1		1	
대금12조의8	이자제한법 규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 체결, 수령	2		1	
대금13조	상환능력 조사 미실시, 기록 미흡	3	1	2	
대금13조의2	과잉대부 등의 금지	1		2	
대금13조의3	기준액 초과 한도계약 관련 조사 미흡			1	1
대금13조의4	기준액 초과 한도계약 관련 필요한 조치 미실시			1	
대금14조	대부조건 등의 게시 미흡		1		
대금16조의2	계약체결 전 서면의 미교부, 기재 미흡	12	9	7	4
대금17조	계약체결 시 서면의 미교부, 기재 미흡	2	30	2	12
대금18조	영수증 양식 미흡, 기재 누락	2		3	
대금19조	장부의 기재 미흡, 교섭기록의 기재·보존 미흡	2	5	1	2
대금21조	최고장 기재 미흡, 부당한 추심	3		1	
대금23조	표식의 미게시, 게시가 부적절			1	
대금24조	채권양도 시 양수인에 대한 통지 미흡		1		
대금24조의6의2	게시 등의 신고서 미제출		1		
대금24조의6의9	사업보고서 미제출	1			
대금24조의6의10	업무보고서 미제출	1			
대금41조의35	개인 신용정보의 미제공	2		1	
대금41조의36	개인 신용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 미취득	1			
대금업법 계		33	51	26	19
정관12조	감사착수신고서 및 감사종료신고서 미제출			1	
정관14조	감사 기피			1	
자율11조	사내체제의 미정비, 사내규칙의 미개정·미정비	3	1	3	2
자율22조	대출의사 확인 부족, 기록 미흡	2		1	1
자율24조	보증인에 대한 보증계약 사전설명서 당일 교부		1		
자율32조	상환능력 확인 미실시	1			
자율58조	홈페이지의 명시사항이 부적절				1
구자율	(완전시행 전의 자율규제 위반)		1		
정관규칙5조	법령 등 위반에 관한 신고서 미제출			1	
자율규제기본규칙 계		6	3	7	4
범수6조	본인확인 기록 누락		9	1	
구출자법5조	고금리	1			
기타법령 계		1	9	1	0
총계		40	63	34	23

(주) 대금 : 대금업법

정관 : 일본대금업협회 정관

자율 :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기본규칙

범수 : 대금업법 완전시행 전 자율규제기본규칙

구 출자법 : 대금업법 완전 시행 전 출자법

정관 : 일본대금업협회 정관

자율 : 대금업법 완전시행 전 자율규제기본규칙

범수 :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구 출자법 : 대금업법 완전 시행 전 출자법

2012년도부터 정리한 개선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표시 수정’ 이 가장 많았는데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회원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사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많았던 내용은 ‘가입 지정신용정보기관의 공표’, ‘지정분쟁해결기관의 공표’,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기본방침의 공표’ 및 ‘개인정보보호 선언의 공표’ 등 공표 누락에 관한 사항이 많아 공표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개선 지도 내용 >

(단위 : 건)

개선 지도 개요		건수
홈페이지 수정	· 지정분쟁해결기관의 명칭 표시 · 변제기간, 변제횟수의 표시 · 대부이율의 표시 · 이자 등의 표현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표시 · 담보·보증인에 관한 사항의 표시 등	41
가입 지정신용정보기관의 공표		27
연수 (주지 철저)	· 실시기록의 작성·보관 등	24
지정분쟁해결기관의 명칭 공표		23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기본방침의 공표		21
검사착수신고서·검사종료신고서, 법령 등 위반에 관한 신고서 제출		20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조항 추가		18
대부조건표의 게시 내용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미표시 등	9
업무 검증	· 자기검증을 사내규칙에서 정하는 빈도로 미이행 · 검증행위가 형식적 · 검증리스트가 자사 업무에 합치하지 않는다.	9
개인정보보호선언의 공표		7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시 교부서면	· 지정분쟁해결기관의 명칭을 미기재 등	7
종업원명부	· 종업원의 기재 누락 등	6
내부감사	· 실시방법(견제기능이 불충분) · 실시기록의 미작성	5
대출 의사 확인	· 대출신청서의 기재 누락	4
사내규칙의 책정		3
영수증서의 기재 내용	· 등록번호의 미기재 등	3
중요 사용인의 미등록		3
종업원증명서		3

비치장부	· 비치 정부와 보관용 영수증 등에 담당자의 도장이나 검인이 없다. · 비치장부의 기재 미흡 · 교섭 경과 기록부에 최고서면 기재 내용을 미기재	3
대금업자 등록표 (갱신 전 내용)		1
신용정보기관이용 동의서 기재내용 미흡		1
담보권 행사에 관한 동의서		1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역할·권한		1
소득 증명 서류의 징구 미흡		1
계약 시 설명 기록 작성		1
최고서면(현재 미사용) 항목 부족		1
총계		243

(3) 현장 감사에서 본 관리체계면, 업무 운영 면 등의 좋은 사례

다음 사항은 현장 감사에서 수집한 좋은 사례를 회원사의 내부관리체계 등의 개선에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① 연수

가. 연도별로 컴플라이언스 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내부연수 등을 실시한다.

나. 2인 기업이지만 매월 연수회 및 이해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② 업무 검증

담당자가 업무일보인 ‘검증실적부(일보) 담당자별’에 업무내용과 서면을 주고받은 내역, 금지사항,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대응, 민원, 상담, 장부 열람 등의 항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사장이 매일 체크한다.

③ 내부감사

가. 내부감사 시 1년간 취득하고 작성한 서면을 모두 감사하고 있다.

나.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미흡한 항목과 관련하여 내부관리 담당자가 개선방법을 ‘감사 후 개선보고서’에 정리하여 내부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④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조치

- 가. 직원은 사무실 내에 가방과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 사물함에 넣고 열쇠를 채워 보관)
- 나.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에게는 지정신용정보기관 단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다. 지정신용정보기관에 조회할 경우에는 반드시 2명이 조회하고 조회 시에는 조회기록부에 대상자의 성명과 조회시각, 조회종류를 기록한다.(조작자와 검증자 두 명이 조회기록부에 날인)
- 라. 내부관리 담당자가 조회기록부와 단말기에서 출력한 조회리스트를 대조하여 개인 신용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의 부정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검증하고 있다.
- 마. 고객정보시스템 내의 데이터는 사장ID로 로그인해야만 인쇄할 수 있다.
- 바. 전 사원에게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사. 개인정보감사계획을 책정하고 동 계획에 따라 '개인데이터관리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지정신용정보기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감사를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다.

⑤ 외부위탁

- 가. 위탁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및 위탁계약의 준수현황 검증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 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위탁기관이 검증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을 맡긴 대금업자가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⑥ 계약의 설명

- 가. 대면 계약을 하고 있지만 특히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증 의사 확인을 목적으로 시간을 들여(1~2시간 정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 설명하는데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보증을 서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 나.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외에 상환 이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설명을 하고 있다.

⑦ 서면교부

- 가. 매각 예정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대부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격 산출 근거 등을 기재한 '담보물권 환가 의사 확인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하고 있다.
- 나.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조사보고서를 대출신청인(조사 의뢰자)에게 발행하고 있다.

⑧ 업무 기록

- 가. 각종 업무를 매일 확인할 목적으로 검증리스트와 본인 확인 시에 필요한 확인 내용의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위해 '본인확인기록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 밖에 '상환능력의 조사기록'에 심사와 여신에 필요한 서면(소득증명, 자금용도증명 등)의 수령, 확인 및 신용정보기관의 조사내용 기록, 기타 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상환능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나. 신규 신청 시에 '상담경과기록부'를 전건 작성하고 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 외에 공청회를 통한 과거의 대출 분쟁 현황(연체, 채무조정, 자기파산, 과불금 청구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
- 다. 소규모의 2인 기업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항목을 항상 각 기록부(계약체결 시의 설명기록부·서류반환기록부·보증계약체결 시의 설명기록부·본인확인기록부·검증기록부·신용정보기관 조회 기록부 등)에 기록·보관하고 있다.
- 라. 총량규제의 준수와 업무 검증을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가능대출액심사'를 작성하고 연소득액과 타사 이용액, 고객 가능액 등을 독자적으로 장부와 전표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다.
- 마. 기일 전 변제가 있을 경우 등에 수령한 이자총액이 이자제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재계산을 하고 그 계산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고 있다.

⑨ 추심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외로 거는 전화를 금지하는 규제에 관한 대책으로 자체적으로 '연락처 지정 의뢰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전화 가능한 휴대전화와 근무처 등의 전화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 시에 받아 교섭 등의 연락을 할 경우 쓸데없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⑩ 기타

가.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에 있는 회원사의 경우에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직장을 잃은 고객을 대상으로 재취직 등이 정해질 때까지 상환을 면제하는 등 고객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나. 고객의 친가가 지진피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객 대장에서 확인하고 해당자의 경우에는 피해 현황 등을 청취하여 피해 현황에 따라 이자 감면, 상환기일의 연장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 매각 예정인 부동산을 담보로 총량규제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부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거주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취득한 후 계약한다.

(4) 현장감사의 실시 현황

〈 감사일수별 회원사 수〉

감사일수	일반감사		특별감사	
	2012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1년도
1일간	1개 회원사	0개 회원사	0개 회원사	1개 회원사
2일간	11개 회원사	1개 회원사	0개 회원사	0개 회원사
3일간	40개 회원사	13개 회원사	1개 회원사	3개 회원사
4일간	41개 회원사	59개 회원사	5개 회원사	4개 회원사
5일간	2개 회원사	2개 회원사	0개 회원사	0개 회원사
7일간	1개 회원사	0개 회원사	0개 회원사	0개 회원사
17일간	0개 회원사	0개 회원사	0개 회원사	1개 회원사
합계	96개 회원사	75개 회원사	6개 회원사	9개 회원사

단기간 감사의 도입으로 감사일수가 2일, 3일간인 회원사가 증가했다.

〈 자본금별 회원사 수〉

자본금	일반감사		특별감사	
	2012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1년도
1억엔 이상	7개 회원사	6개 회원사	0개 회원사	0개 회원사
5천만엔 이상~1억엔 미만	31개 회원사	22개 회원사	1개 회원사	1개 회원사
2천만엔 이상~5천만엔 미만	16개 회원사	23개 회원사	0개 회원사	3개 회원사
2천만엔 미만	29개 회원사	17개 회원사	1개 회원사	3개 회원사
개인사업자	13개 회원사	7개 회원사	4개 회원사	2개 회원사
합계	96개 회원사	75개 회원사	6개 회원사	9개 회원사

〈 대출 잔액별 회원사 수〉

대출 잔액	일반감사		특별감사	
	2012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0억엔 이상	1개 회원사	0개 회원사	0개 회원사	1개 회원사
10억엔 이상~200억엔 미만	12개 회원사	25개 회원사	1개 회원사	0개 회원사
1억엔 이상~10억엔 미만	66개 회원사	33개 회원사	1개 회원사	3개 회원사
5천만엔 이상~1억엔 미만	11개 회원사	12개 회원사	4개 회원사	4개 회원사
5천만엔 미만	6개 회원사	5개 회원사	0개 회원사	0개 회원사
합계	96개 회원사	75개 회원사	6개 회원사	9개 회원사

〈 업체구분별 회원사 수 〉

감사일수	2012년도		2011년도	
	실시회원사 수	등록 회원사 수	실시회원사 수	등록 회원사 수
1: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자	37개 회원사	563개 회원사	34개 회원사	634개 회원사
2: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자	14개 회원사	117개 회원사	5개 회원사	139개 회원사
3:소비자 대상 주택 담보 대금업자	1개 회원사	27개 회원사	1개 회원사	30개 회원사
4:사업자 대상 대금업자	28개 회원사	342개 회원사	18개 회원사	374개 회원사
5:어음할인업자	7개 회원사	61개 회원사	2개 회원사	66개 회원사
6:신용카드회사	1개 회원사	153개 회원사	7개 회원사	157개 회원사
7:신용판매회사	2개 회원사	41개 회원사	2개 회원사	46개 회원사
8: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2개 회원사	25개 회원사	2개 회원사	25개 회원사
9:건축·부동산업자	2개 회원사	33개 회원사	2개 회원사	39개 회원사
10:전당포	1개 회원사	3개 회원사	0개 회원사	3개 회원사
11:리스회사	1개 회원사	40개 회원사	2개 회원사	39개 회원사
12:일수대금업자	0개 회원사	5개 회원사	0개 회원사	8개 회원사
합계	96개 회원사	1,410개 회원사	75개 회원사	1,560개 회원사

〈 대금 업무 종사자 수별 회원사 수 〉

대금 업무 종사자 수	2012년도		2011년도	
	일반감사	특별감사	일반감사	특별감사
1인	11개 회원사	0개 회원사	5개 회원사	3개 회원사
2인~3인	37개 회원사	5개 회원사	26개 회원사	2개 회원사
4인~5인	24개 회원사	1개 회원사	19개 회원사	2개 회원사
6인~9인	12개 회원사	0개 회원사	6개 회원사	2개 회원사
10인~19인	5개 회원사	0개 회원사	3개 회원사	0개 회원사
20인 이상	7개 회원사	0개 회원사	16개 회원사	0개 회원사
합계	96개 회원사	6개 회원사	75개 회원사	9개 회원사

■ 서류감사

(1) 감사결과외 개요

2012년도 서류감사는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2012년 12월말일 기준 회원사 1,332개 회원사) 작년도에 이어 전 회원사로부터 회신을 받았다.(폐업 등은 제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①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은 회원사가 1,000개 회원사(구성비 78.6%), ② 개선·재검토의 지적을 받은 회원사가 145개 회원사(11.4%), ③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회원사가 128개 회원사(10.0%)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건수의 합계는 961건으로 집계되었다.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서면교부의 미흡’,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대응 부족’, ‘신고체제의 미정비’ 등의 내용이 많았다.

지적사항이 확인된 회원사에 대해서는 현황 확인과 개선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특히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회원사에 대해서는 그 개선보고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개선 요청에 대한 대응 현황에 따라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

	2012년도(2013년 6월 3일 기준)		2011년도	
제출 현황	회원사 수	(전년 대비 증감)	회원사 수	(전년 대비 증감)
감사대상 수	1,332개 회원사	▲ 8.4%	1,454개 회원사	▲ 10.8%
(폐업 등)	▲ 59개 회원사	▲ 41.0%	▲ 100개 회원사	▲ 9.1%
평가대상 수	1,273개 회원사	▲ 6.0%	1,354개 회원사	▲ 10.9%

〈 감사결과 〉

현황	회원사 수	(구성비)	지적건수	(내역)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	개선·재검토
지적사항이 없다	1,000개 회원사	(78.6%)	-	-	-
개선·재검토할 지적사항이 있다	145개 회원사	(11.4%)	219건	-	219건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28개 회원사	(10.0%)	742건	311건	431건
합계	1,273개 회원사	(100.0%)	961건	311건	650건

(참고) 서류감사 시 평가 현황

평가 (주1)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회원 사수	구성비 (%)	회원 사수	구성비 (%)	회원 사수	구성비 (%)	회원 사수	구성비 (%)	회원 사수	구성비 (%)	평가(주2)	회원사 수	구성비 (%)
A+B	430	14	1,484	56	1,501	75	1,226	81	1,259	92	지적사항 없음	1,000	79
C	1,071	34	768	29	362	18	197	13	84	6	개선·재검토 지적 있음	145	11
D+E	1,682	52	386	15	142	7	92	6	22	2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28	10
합계	3,183	100	2,638	100	2,005	100	1,515	100	1,365	100	합계	1,273	100

(주1) 2007년도~2011년도까지의 평가 정의

A+B : 내부관리체제 등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

C : 내부관리체제 등에서 충분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

D+E : 내부관리체제 등에서 충분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다.

(주2) 2012년도의 평가 정의

2011년도까지의 종합평가에서는 '내부
관리체제 등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받은 회원사가 90%를 넘은 점에
서 2012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문제점
을 지적하는 개별평가방식으로 했다.

< 지적내용(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항) >

법령 등		지적 개요	2012년도
			지적건수
대금 업법	대금8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제제 미정비	4
	대금12조의2	지정분쟁해결기관의 명칭 미공표	10
	대금12조의4	중업원명부의 비치, 기재사항 미흡	8
	대금12조의9	상당 및 조연이 가능한 단체 소개 체제 미정비	20
	대금13조	상환능력 조사 미실시, 기록 미흡	13
	대금14조	대부조건 등의 게시 미흡	2
	대금16조의2	계약체결 전 서면의 미교부	6
	대금17조	계약체결 시 서면의 미교부	4
	대금18조	영수증 미교부	2
	대금19조	장부의 비치 미흡	2
	대금21조	추심행위규제의 준수 미흡	1
	대금22조	채권증서의 반환 누락	1
	대금41조의35	개인 신용정보의 미제공	3
	대금41조의36	개인정보 취득 동의 미취득, 기재 미흡	7

	대금41조의37	지정신용정보기관의 명칭 미공표	3
	시행10조의6	주지철저(연수 등)의 미실시	3
	시행10조의7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요건 부족	4
	시행10조의9	중업원증명서 기재사항 미흡	2
	시행10조의18	상환능력조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 미흡	10
	시행10조의21	증명자료의 미취득	1
	시행10조의23	대환요건 확인의 미흡	1
	시행10조의27	중간 여신심사의 기록 미흡	1
	시행12조의2	계약체결 전 서면기재사항의 미흡	21
	시행13조	계약체결 시 서면기재사항의 미흡	75
	시행15조	수취증명서 기재사항의 미흡	1
	시행16조	교섭 경과의 기록 미흡	20
	시행17조	장부 보관 미흡	4
	시행17조의2	장부 열람자의 요건 미확인	1
대금업법 계			230
자율 규제 기본 규칙	정관12조	검사착수신고서 등의 신고서류 미제출	15
	자율4조	법령 준수 체제의 미정비	3
	자율5조	중대 문제 등에 대한 체제의 미정비	7
	자율11조의3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기능 발휘체제 미정비	2
	자율15조	담보징구현황의 미확인	2
	자율24조	보증인의 조사 미실시, 서면 미교부	6
	자율32조	사업 실태 확인 서류의 미정구	2
	자율33조	심사기준의 미정비	1
	자율43조	광고사전심의 미심의	1
	자율66조	권유의 미승낙 및 기록 미흡	7
	자율67조의2	거래 재검토 시의 설명 미실시	9
자율규제기본규칙 계			55
기타 법령	범수6조	본인확인 기록 보관 미흡	10
	분쟁해결2조	교부서면에 지정분쟁해결기관의 명칭 미기재	16
기타법령 계			26
총계			311

(주) 대금 : 대금업법

시행 : 대금업법 시행규칙

정관 : 일본대금업협회 정관

자율 :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기본규칙

범수 : 범칙에 따른 수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분쟁해결 : 분쟁해결 등 업무에 관한 업무처리기본계약 조항

< 지적내용(개선·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

(단위 : 건)

지적 개요		2012년도 지적건수
서면 교부 의무	· 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내용의 미흡 · 채권증서 반환에 관한 기록의 미흡 · 업무 검증을 미 실시 · 검증 기록 미보관 등	226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 방지	·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조항 추가 대응 미비 ·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기본방침의 미공표 · 검증 기록 미보관 등	100
계약에 관한 설명	· 계약 시의 설명에 관한 실시 기록의 미흡 등	63
민원 및 분쟁 등의 대응 체제	· 지정분쟁해결기관 등의 소개 체제 미흡 · 대응 내용의 적절한 기록, 보관 미흡 등	39
개인고객정보의 안전관리조치 등	· 민감정보 취급 체제의 미정비 · 개인정보의 누설에 대한 체제의 미정비 등	31
과잉대부방지	· 대부심사와 상환능력조사의 검증, 재검토의 미흡 · 검증 기록의 미보관 · 보증인에 대한 기준 미정비 등	28
상당 및 조연의 대응 체제	· 대응 내용의 적절한 기록, 보관의 미흡 등	26
추심행위	· 업무의 검증과 기록 보관의 미흡 등	21
대금업무취급주임자	· 주임자의 설치 현황과 기능 검증과 기록 미흡 등	18
거래내역의 공개	· 정부 비차 관련 검증 미 실시 · 거래내역을 공개한 내용의 기록 미흡 등	16
본인확인,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 본인 확인 시 기록하는 항목의 미흡 등	14
기타	· 주지철저(연수 등)의 기록, 보관 미흡 · 내부감사결과의 기록과 보관 미흡 등	68
총계		650

(2) 감사 결과의 실시 현황 등

지적 현황을 회원사의 속성에 따라 분류했다.

< 자본금별 회원사 수 >

자본금별	회원사 수	지적 없음	지적 1건	2건	3건	4건 이상
10억엔 이상	83	75	6	1	0	1
1억~10억엔 미만	122	96	18	3	1	4
1억엔 미만	740	569	83	36	15	37
0(개인)	328	260	36	9	7	16
합계	1,273	1,000	143	49	23	58

< 취급 대출별 회원사 수 >

업태별	회원사 수	지적 없음	지적 1건	2건	3건	4건 이상
1. 개인 대상 대금업자	1,005	812	108	35	16	34
2. 법인 대상 대금업자	268	188	35	14	7	24
합계	1,273	1,000	143	49	23	58

※ 서류감사보고서의 회신 현황(개인 대상 회신 또는 법인 대상 회신)으로 분류했다.
금년도에는 두 업태 모두 회신을 한 경우 개인 대상 대금업자로 분류했다.

< 협회 가입연수별 회원사 수 >

가입연수별	회원사 수	지적 없음	지적 1건	2건	3건	4건 이상
가입 2년 이상(서류감사 3회 이상)	1,193	937	134	49	23	50
가입 1년 이상(서류감사 2회째)	40	35	3	0	0	2
가입 1년 미만(서류감사 1회째)	40	28	6	0	0	6
합계	1,273	1,000	143	49	23	58

< 등록기관별 회원사 수 >

등록기관별	회원사 수	지적 없음	지적 1건	2건	3건	4건 이상
재무국	279	233	32	11	1	2
도도부현	994	767	111	38	22	56
합계	1,273	1,000	143	49	23	58

4. 등록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 감사에 관한 정보 공유

(1) 감사계획의 조정

2012년도의 감사계획 책정 시에는 금융청과 협의하고 책정 후에는 금융청과 간도재무국, 간도재무국 도쿄사무소 및 도쿄도를 대상으로 설명했다. 감사계획은 회원사에 통지하고 전 등록 행정기관에 송부했다.

(2) 현장 감사 및 서류감사 실시에 대한 조정

현장 감사의 감사 대상 회원사 선정 시에는 연간 계획('2012년도 현장 감사')에 따라 대상 회원사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해당 회원사가 등록한 행정기관과 조정을 거친 후 결정하고 있다.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과 사전에 정보교환을 하고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서류감사의 경우에는 감사 스케줄 및 감사 설문사항 등을 금융청과 의견 교환을 한 후에 실시했다.

(3) 감사결과 정보의 공유

① 현장 감사 결과

현장 감사 결과는 감사를 받은 회원사에 감사 결과 통지서를 교부할 때 감사를 받은 회원사의 등록 행정기관에 통지서의 사본을 메일로 송부했다. 모든 감사 결과 통지서의 사본을 등록 행정기관에 송부할 때 금융청도 같이 송부했다.

현장 감사 결과 특히 중대한 법령 등의 위반을 지적받은 회원사가 등록한 행정기관에는 감사 결과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감사 당국에 의한 지도 등의 강화를 요청했다.

② 서류감사 결과

서류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회원사에 대한 감사결과 통지 후 등록 행정기관에 결과 일람을 송부했다. 금융청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사의 평가 결과를 송부했다.

③ 행정기관 방문

협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정리한 '감사결과' 를 작성하여 모든 등록 행정기관에 송부했다. 금융청과 간토재무국, 간토재무국 도교사무소 및 도쿄도는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정보를 제공했다.

방문일	방문 기관	방문 내용 등
2012년 5월 21일	금융청	2011년도 감사결과 보고 등
2012년 5월 28일	간토재무국 도교재무사무소	2011년도 감사결과 보고 등
2012년 5월 28일	도쿄도	2011년도 감사결과 보고 등
2012년 5월 29일	간토재무국	2011년도 감사결과 보고 등
2012년 7월 4일	금융청	최근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2012년 7월 17일	금융청	2011년도 서류감사결과 보고 등
2012년 7월 18일	간토재무국	2011년도 서류감사결과 보고 등
2012년 7월 19일	간토재무국 도교재무사무소	2011년도 서류감사결과 보고 등
2012년 7월 24일	도쿄도	2011년도 서류감사결과 보고 등
2012년 7월 25일	금융청	최근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2012년 8월 8일	미야기현	현장 감사 결과의 개별 설명
2012년 8월 8일	도호쿠재무국	현장 감사 결과의 개별 설명
2012년 8월 10일	금융청	최근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2012년 8월 28일	금융청	재무국 등록 회원사에 대한 현장 감사 협의
2012년 9월 5일	간토재무국 도교재무사무소	최근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2012년 9월 7일	간토재무국	최근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2012년 11월 12일	금융청	상반기 현장 감사결과, 서류감사 보고서 등
2012년 11월 20일	간토재무국	상반기 현장 감사결과, 서류감사 보고서 등
2012년 11월 27일	금융청	최근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2013년 2월 19일	금융청	최근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2013년 3월 12일	금융청	현장 감사

■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등록 행정기관 등과 감사결과 및 그 개선 현황 등에 대해 의견과 정보 교환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등에 강사를 파견하는 등 한 층 연대 강화를 도모했다.

현장 감사 시에는 등록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및 경찰서를 방문하여 의견 및 정보 교환을 실시했다.

(1) 등록 행정기관 주최의 회의 및 연수에 강사 파견

재무국 등의 등록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및 연수 등에 감사부 직원을 강사로 파견하고 감사의 실시 등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협회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주최	회의 등의 명칭	개최일	주최자
쥬고쿠재무국	대금업 감독자 회의	2012년 11월 2일	재무국 및 행정기관 대금업 담당자 등
간토재무국	금융종합연수	2013년 3월 5일	재무국 대금업 담당 감사관 등
도쿄도	등록갱신 시 연수	2012년 6월 22일	도쿄도 등록대금업자
도쿄도	등록갱신 시 연수	2012년 9월 18일	도쿄도 등록대금업자
도쿄도	등록갱신 시 연수	2012년 11월 20일	도쿄도 등록대금업자
도쿄도	등록갱신 시 연수	2013년 2월 18일	도쿄도 등록대금업자

(2) 현장 감사 관련 등록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및 경찰 방문 현황

현장 감사의 실시와 더불어 감사부장 등이 현장 감사를 받은 회원사의 등록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및 경찰서를 방문하고 당 협회의 활동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대금업계의 동향 및 자금수요자의 현황 등에 대해 의견 및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

방문 기관	기관 수
등록행정기관	16
소비자단체	19
경찰서 등	9

(3) 금융청 검사 기본방침 관련 설명회 개최 현황

금융청이 공표한 ‘2012년도 검사사무연도 검사 기본 방침’ 에 대해 금융청의 담당자를 강사로 하여 재무국 등록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국 2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최지	개최일	참가 현황	
		회원사 수	참가인수
오사카시	2012년 10월 16일	78	99
도쿄도	2012년 10월 26일	159	263

5. 대금업법 완전시행 후의 대금업 실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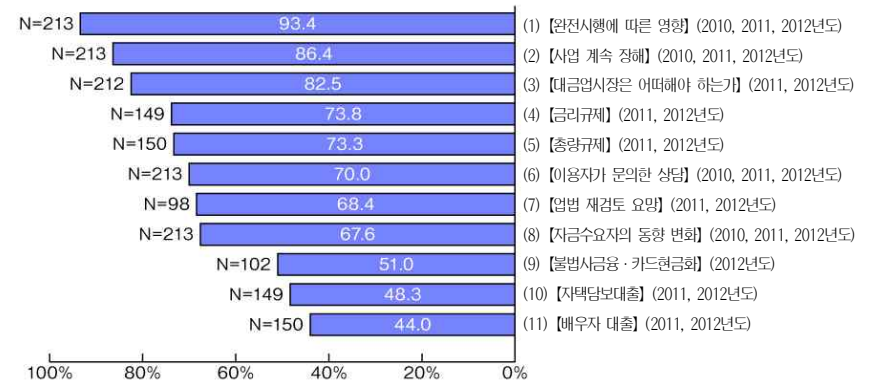
2010년도부터 현장 감사를 실시할 경우 대금업법 완전시행에 따른 자금수요자 및 대금업자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의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회원사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직접 의견을 조사해왔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현장 감사를 실시한 24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목별 회신 현황(회신율)

- 전 업체에서 ‘(1) 완전시행에 따른 영향’ 이 있었다고 회신한 비율은 93%로 대부분의 회원사가 회신을 했으며, 이어서 ‘(2) 사업 계속 장애’ , ‘(3) 대금업 시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회신은 80%를 넘는 회신율을 보이고 있다.
- 업체별 특징으로는 ‘(4) 총량규제’ 의 경우 소비자 대상 업체가 80%로 높은 관심을 나타난데 비해 사업자 대상 업체의 경우에는 61%에 머물렀다.
- 한편 ‘(8) 자금수요자의 동향 변화’ , ‘(9) 불법사금융 관계’ , ‘(10) 자택담보 대출’ 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상 업체에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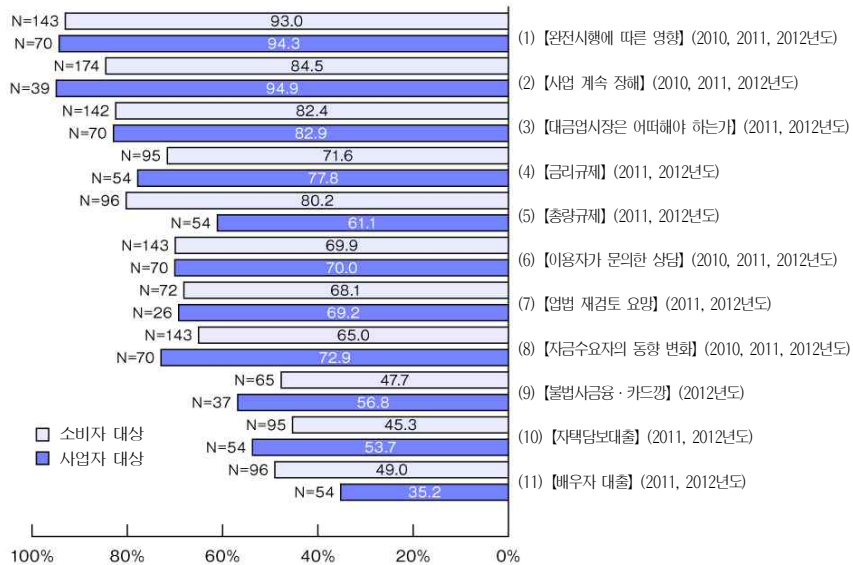
< 그래프 1(전 대금업자) >

(그래프 1과 2의 N은 조사 대상인 회원사 수)



(N은 회신 회원사 수)

< 그래프 2(업태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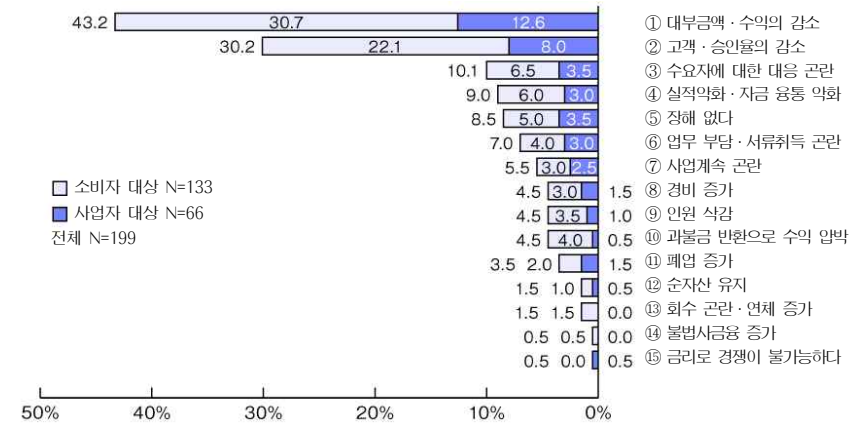


(2) 항목별 회신 현황(회신율)

계수는 회신을 한 회원사 수를 분모로 하는 회신 내용별 구성비(단, 복수 응답이 가능하므로 합계는 100%가 되지 않는다.)이다.

① 【완전시행에 따른 영향】 (2010, 2011, 2012년도) 조사 대상 회원사 : 213개 회원사

- ‘① 대부금액·수익의 감소(43%)’ 와 ‘② 고객·승인율의 감소(30%)’ 가 전체 회신의 70%를 넘게 차지했다.
- ‘⑦ 사업 계속 곤란’ 이라고 회신한 회원사는 5.5%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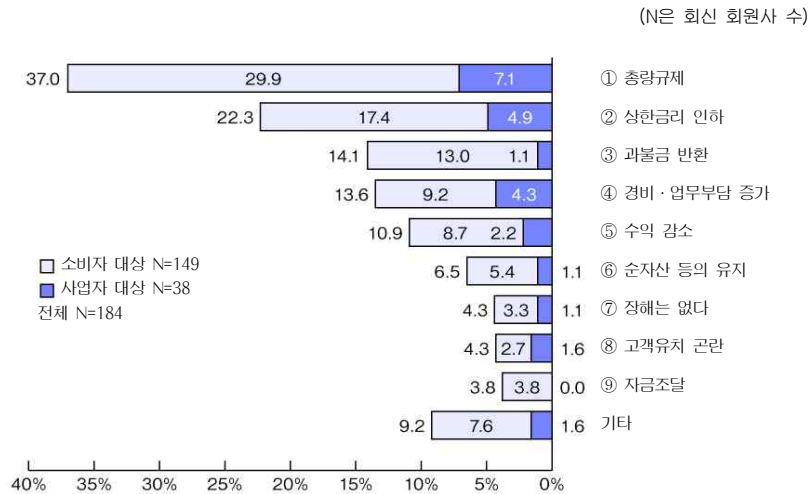


참고 : 【완전 시행에 따른 영향 관련 청취 내용(발췌)】

- 총량규제로 인해 대출 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
- 대출 잔액도 계속 감소하여 개정 전의 50%까지 떨어졌다.
- 리스크 대비 이자 수입이 감소하여 수익 확보가 어려워짐으로써 사업의 장래성이 불투명하다.
- 수익 구조가 취약해지면서 부득이하게 종업원을 정리하고 하는 등으로 유지하고 있다.
- 이자가 인화된 상태에서 서류 등도 늘어나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고객이 증가하지 않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일이 힘들어졌다.
- 단기 긴급 자금 대출은 현행 상한금리 체제 하에서는 리스크를 커버하지 못해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고객의 수요에도 응할 수 없게 되어 고객이 대금업계를 떠나고 있다.
- 이로 인해 수익 저하를 피하지 못했고 타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등이 줄어들면서 회수율의 저하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총량규제의 시행으로 기존 고객의 대출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대출 잔액이 감소하였으며 신규 고객의 대출 한도까지 제한을 받아 대출 잔액의 감소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에 이어 총량규제 시행으로 영업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총량규제 준수를 위해 시스템 도입 관련 비용과 심사·관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담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② 【사업 계속 장애】(2010, 2011, 2012년도) 조사 대상 회원사 : 213개 회원사

- 사업을 계속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①총량규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②상한금리의 인하'였다.
- 특히 이러한 장애는 소비자 대상 업체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 '③과불금 반환'도 14%를 차지했다.



※ 기타 의견으로는 '연소득 제한', '은행 계열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 '주임자 시험', '강성 채무자'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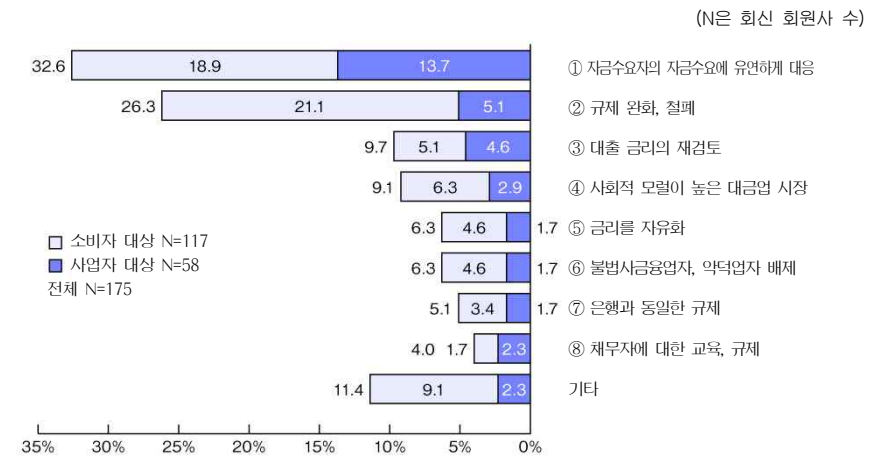
참고 : 【사업 계속 장애 관련 청취 내용(발췌)】

- 상한금리 인하, 총량규제, 과불금 반환 문제가 장애 요인이다. 특히 당사는 역사가 오래된 회사인 관계로 과불금 대응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총량규제 등 대부 조건이 엄격해져 고객이 원하는 대로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 법령에 합당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개선비용 부담이 무겁다.
-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이 대금업자라는 이유로 어려워졌다.
- 총량규제와 상한금리 등 소비자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가 소비자금융시장의 축소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법인 대상 금융시장의 수축에도 이어져 경제 전반적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대부금리 면에서는 영향이 적은 편이지만 총량규제 등에 따라 대출을 실행할 곳이 확연히 감소하여 앞으로 대부잔액이 대폭 줄어들면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 대·중·소기업이 모두 동일한 규제 하에 영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장애가 된다.
- 상환능력이 있다고 예상되는 고객도 연소득 제한 등 총량규제에 따라 배제된다.
- 배우자 대출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서면 취득과 동의 등이 곤란하여 자금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③ 【대금업 시장은 어떠해야 하는가】(2010, 2011, 2012년도) 조사 대상 회원사 : 212개 회원사

- '①자금수요자의 수요에 대응'과 '② 규제완화·철폐' 2항목이 약 60%를 차지하는 한편 '④ 사회적 모럴이 높은 대금업 시장'도 9%를 차지했다.



※ 기타 의견으로는 '과불금 반환 광고가 너무 많으니 단속해야 한다.', '규제는 일부 업자에게만 적용'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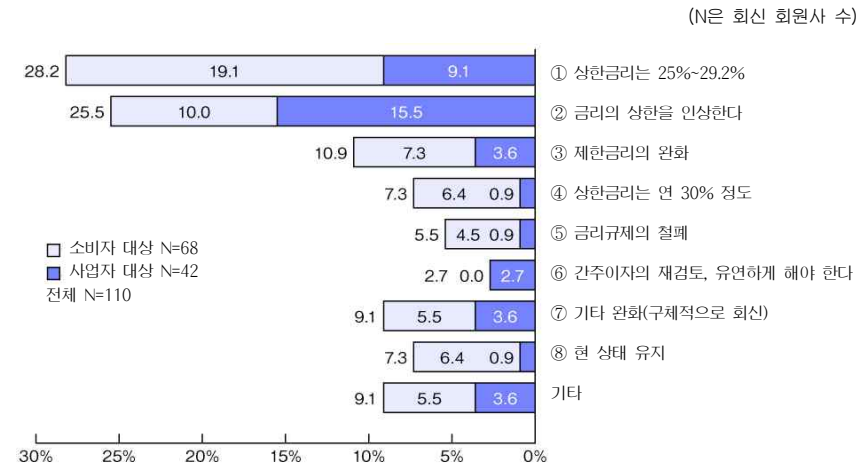
참고 : 【대금업 시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관련 조사 내용(발췌)】

- 건전한 이용자가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건전한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위치에 서야 한다.
-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고 싶어 요청을 하더라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대출이 가능한 날까지의 단기 자금을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금업자의 존재는 자금수요자에게는 단순히 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대출을 받는 곳이 중소 대금업자이다.

- 자금수요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영업점의 보호와 불법사금융업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 자금수요자는 ‘개인’ 과 ‘법인’ , ‘소비자’ 와 ‘사업자’ , ‘무담보’ 와 ‘유담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대금업자가 대출을 실시할 경우 모두 대금업법 상의 규제를 받는다. 대출형태에 따라 규제 완화를 도모하여 자금수요자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완전시행 후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힘든 환경이 되어버렸다. 당연히 과잉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가져야할 것이다.
-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 채무자 책임도 명확히 하는 금융시장이어야 한다.
- 과잉대부와 위법한 추심행위를 업계에서 배제하고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에서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대금업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④ 【금리규제】 (2011, 2012년도) 조사 대상 회원사 : 149개 회원사

- 규제 완화(72%)와 규제 철폐(6%)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 이 중에서도 ‘① 상한금리는 25%~29.2%’ 로 개정 전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회원이 가장 많았다.



※ ⑦ 기타 완화 의견으로는 ‘금리는 100만엔 이하·이상의 2단계’, ‘3단계의 금리를 하나로 한다.’, ‘대출 형태(신규사업자금, 단기대출)’에 따른 금리 설정’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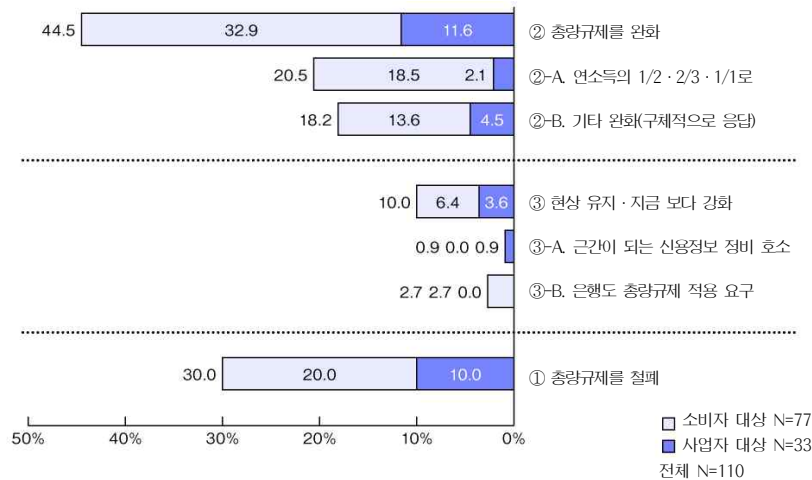
참고 : 【금리규제 관련 조사 내용(발췌)】

- 금리는 상품성과 리스크 규모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로 금리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도가 좁아져 불법사금융으로 자금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대다수의 대금업자는 자금조달력이 약하여 대손리스크가 높은 경향이 있다.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달코스트와 대손리스크를 감안한 금리 수입이 필요하다.
- 소규모 업자가 소액으로 리스크가 있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 현행 금리로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다. 대금업은 본래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는데 연 15%로 무담보 대출을 해서는 채산이 맞지 않는다.
- 사업자대출은 1건 당 금액이 커 현행 금리로는 대손리스크에 대응할 수 없다.
- 현행 금리규제 하에서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심사를 엄격히 해야만 하므로 중소기업의 긴급 자금 등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 비축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다소 금리가 높더라도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한다.
- 다양한 자금수요에 응하기 위해서는 개별안전별로 리스크에 알맞은 금리설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적용금리와 대손 리스크를 비교하면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금리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업계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자기제량 범위를 넓혀야 한다.
- 소액, 단기 자금의 경우 제한금리를 완화해야 한다.

⑤ 【총량규제】(2011, 2012년도) 조사 대상 회원사 : 150개 회원사

· 규제 완화(45%)와 규제 철폐(30%)가 약 3/4을 차지했으며 규제의 현상 유지 관련 응답은 10% 정도에 그쳤다.

(N은 회신 회원사 수)



※ ②-A와 ②-B는 ②에 포함시켰고 ③-A와 ③-B는 ③에 포함시켰다.

참고 : 【금리규제 관련 조사 내용(발췌)】

- 은행은 ‘총량규제의 대상 제외’ 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은행대출과 대금업 대출을 구별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총량규제를 철폐했으면 한다.
- 연소득의 1/3이라고 하는 기준의 근거가 애매하다.
- 동등한 소득이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가족구성 등에 따라 세대 간 자금수요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량규제로 일률적으로 연소득의 1/3로 제한하고 있어 타당한 자금 용도가 있는 자금수요자라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순수한 경제활동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현 상황에서는 개인고객의 소액 단기 자금 수요에 응할 수 없다.
- 지난해의 수입이 올해와 내년의 수입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총량규제의 영향으로 대출이 곤란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 연소득의 1/2로 할 경우에도 지불 의사, 능력 있는 고객은 상환 가능하다.
- 일률적인 규제인 관계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를 존중한 유연한 대출이 불가능하다. 채무자 중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6. 【참고】 2013년도 감사 계획

2013년도의 감사계획은 2012년도 감사 시 감사 결과 및 개정 대금업법 제4조 시행(완전시행)후 3년이 경과하고 있는 가운데 대금업계를 둘러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책정했다.(2013년 4월 24일 공포)

(1) 감사의 기본방침

- ① 본 협회의 감사는 대금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② 법령 및 협회의 정관, 기타 각종 규칙을 회원사가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관리체제 현황을 확인하고 지도한다.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 ③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회원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자기개선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회원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관리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등에도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감사를 실시한다.
- ④ 현장감사와 서류감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회원사의 업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과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체제 등이 불충분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다른 자율규제부문과 연계한 지도 강화를 도모하여 적정하게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 ⑤ 감사를 실시하여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대금업계의 신뢰성과 건전성 향상을 지향한다.

(2) 감사의 중점 항목

2013년도는 다음 항목을 중점 항목으로 하여 점검 · 검증한다.

① 자금수요자 보호를 위한 중점항목

- 과잉대부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과잉대부 방지(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등을 포함)’
- 거래의 적정화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서면교부’ 및 ‘추심행위’

② 대금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점항목

-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관리체제의 충실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법령 등 준수체제’
- 대금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의 기능 발휘’
-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 방지’

(3) 기타 감사계획에 포함시킨 주요 사항

- ① 현장 감사 대상 회원사 수는 100개 회원사 정도로 하지만 이 중 3/4은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자로 한다.
- ② 서류감사는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효율적이고 실행에 맞는 감사를 실시한다.

II. 대금업 전략 부문

II 홍보·계몽 활동

1. 홍보활동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협회의 활동과 업계의 건전화 현황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알리고 협회와 업계의 사회적 평가와 신뢰 향상에 힘쓰기 위해 홍보활동을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1) 《JFSA news》의 발행·배포

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정보와 업계 동향, 협회 활동 현황 등에 대해 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월 1회, 4,500부(2012년 12월부터 4,000부, 2013년 2월부터 3,900부)를 발행했다.

(2) 《특집 JFSA》 발행·배포

업계의 건전화를 위한 활동 내용과 소비자단체, 행정 담당관과의 대담과 기고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업계에 대한 이해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사 외의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2호(2012년 4월)와 13호, 13호 별책(동년 11월)을 각각 9,000부 발행했다.

(3) 기타

- 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협회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발신한다.
- ② 월간 소비자신용에 협회 활동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여 협회의 활동에 대해 폭넓게 홍보했다.

2. 계몽활동

대금업 관련 금융 지식의 보급 및 계몽, 불법사금융의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고, 협회의 역할과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의 활용·인지도 촉진 등을 통해 자금수요

자 등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계몽활동을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1) 자금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① 소책자 「론·캐싱 Q&A BOOK」을 22만부 제작하여 각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성 인식과 소비생활센터 등에 무상으로 배포했다.
- ② 금전교육교재인 「생활과 론·크레딧」을 희망하는 교육기관 등에 계속적으로 배포했다.
- ③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 안내 리플릿을 계속적으로 배포했다.
- ④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포스터와 리플릿을 계속적으로 배포했다.

(2) 강사 파견·출장강좌의 실시

소비자 계몽을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외에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 학생과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강사 파견과 출장 강좌를 총 15회 실시하고 725명이 참가했다. 상담창구 담당자 대상 강좌를 총 28회(참가자 866명), 기업 대상 강좌를 총 7회(참가자 225명) 실시했다.

(3) 협회 홈페이지 활용

- 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악질업자 일람의 갱신 등을 관리하여 자금수요자 등이 불법사금융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협회 홈페이지 내에 설치된 대금업법 관련 페이지를 통해 자금수요자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4) 기타

- ① 도쿄도 산업노동국 금융부 대금업대책과에서 주최한 ‘1도 3현 합동 불법사금융 방지 합동 캠페인’ (2012년 6월, 11월)에 참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활동에 협력했다.
- ②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창구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정부 홍보에 협력했다.

2 조사·연구 활동

1. 조사연구 활동의 개요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정착 등을 감안하여 대금업계의 통계자료가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갖추면서 지속적으로 발표되도록 하고 있다. 대금업이 담당하고 있는 자금공급기능 등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검증할 목적으로 ‘대금업자’ 및 ‘자금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 등을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실시 시기	실시 내용	대상	비고
2012년 8월~2012년 9월	대금업자 대상 조사	회원사, 비회원사	2012년 11월 16일 공표
2012년 8월	자금수요자 대상 조사	자금수요자	
2012년 4월~2013년 3월	월차실태조사 (※2012년 9월말 기준 59개사)	회원사	매월 공표

2. 조사연구 성과 등의 공표

대금업계의 통계자료가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갖추면서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실시해온 각종 조사 결과와 대금업 관련 공지정보 등을 하나로 정리하여 ‘대금업이 담당하는 자금공급기능 등의 현황과 동향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표했다.

대금업계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정보로서 매월 ‘월차통계자료’를 공표했다. 조사연구의 성과 등은 협회의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 등에서 폭넓게 공표했으며, 금융청과 일본은행의 각 기자클럽에 보도자료를 투고하여 발표했다.

3. 조사 결과 등의 정리

2011년도의 협회 활동 현황 및 관련 법령, 통계 정보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2011년도 연차보고서」를 2012년 8월에 발간했다.

4. 법령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부 등에 대한 건의 요청

대금업에 관한 세제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 등에 건의 요청했다.

- ① 금융청에 제출하여 8월 2일 나카쓰카 내각부 부대신(부장관)이 참석한 정부 공청회에서 요청했다.
- ② 9월 22일 민주당의 ‘정책조사회 세무금융분회’에서 요청했다.
- ③ 자유민주당의 ‘예산·세제에 관한 정책간담회’에 제출했다.

5. 2012년도 출장강좌 실시 실적

(1) 상담 대응 창구 담당자 대상 강좌

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등의 소비자 대응 창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중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대응 연수 등을 테마로 총 28회 실시하고 866명이 참석했다.

개최일	주최 단체 등	개최일	주최 단체 등
4월 24일(화)	금융청 총무기획국 기획과 신용제도 참서관실(도호쿠)	11월 22일(목)	히로시마현 환경현민국 소비생활과
4월 27일(금)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 도카이연구지소	12월 4일(화)	공익재단법인 일본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
6월 7일(목)	금융청 총무기획국 기획과 신용제도 참서관실(홋카이도)	12월 4일(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도쿄도지역부인단체연맹
6월 18일(월)	센다이시 소비생활센터	12월 26일(수)	마쓰에시청 소비·생활상담실
6월 22일(금)	센다이시 소비생활센터	1월 30일(수)	금융청 총무기획국 기획과 신용제도 참서관실(도카이)
7월 10일(화)	치바현 다중채무대책본부	1월 31일(목)	금융청 총무기획국 기획과 신용제도 참서관실(호쿠리쿠)
7월 17일(화)	하치노헤시 상공노동부 상공정책과	2월 7일(목)	마쓰에시 소비생활과
7월 25일(수)	하치오우지시 소비생활센터	3월 2일(토)	일본소비생활어드바이저·컨설턴트협 회 규슈지부
9월 4일(화)	다카쓰키시 시민생활부	3월 7일(목)	금융청 총무기획국 기획과 신용제도 참서관실(시고쿠)
9월 24일(월)	사회복지법인 나고야시 사회복지협의회	3월 8일(금)	금융청 총무기획국 신용제도 참서관실(쥬고쿠)
10월 13일(토)	나가사키현 소비생활센터	3월 11일(월)	나라시노시 소비생활센터
10월 17일(수)	이와테현립 현민생활센터	3월 12일(화)	히노시 기획부 지역협동과
11월 12일(월)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3월 22일(금)	가와니시시 소비생활센터
11월 20일(화)	재무성 도카이재무국 재무홍보상담실	3월 25일(월)	아다치시 소비자센터

(2) 소비자 대상 강좌

자금수요자(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 관련 기초지식과 금융 분쟁 사례와 피해 방지책을 테마로 총 15회 실시하여 725명이 참석했다.

개최일	주최 단체 등	개최일	주최 단체 등
5월 24일(목)	이치노미야시 경제진흥과	11월 15일(목)	오시마 소비생활상담소(도쿠노시마쵸)
6월 14일(목)	일본대학 상학부	11월 16일(금)	오시마 소비생활상담소(아미기쵸)
6월 20일(수)	센다이시 소비생활센터(센다이시 교육센터)	11월 16일(금)	오시마 소비생활상담소(이센쵸)
7월 12일(목)	나카하리마 소비생활창조센터 (나카하리마 다중채무 등 대책연구협의회)	12월 6일(목)	오사카 국제대학
		12월 10일(월)	도쿄도립 시노부가오카 고등학교
8월 30일(목)	마쓰에시 시민부 소비·생활상담실	12월 12일(수)	규슈산업대학 경영학부
9월 14일(금)	오시마 소비생활상담소(기카이시마)	12월 27일(목)	사라이노시 소비생활센터
11월 13일(화)	오사카 상업대학	3월 6일(수)	나카무테시청

(3) 기업 대상 강좌

기업을 대상으로 법령 준수와 개인정보보호, 협회 감사 등을 테마로 총 7회 실시하여 225명이 참석했다.

개최일	주최 단체 등	개최일	주최 단체 등
6월 1일(금)	주식회사 오시	2월 15일(금) 오전	리소나카드(주) 오사카관리부
6월 8일(금)	미쓰비시전기크레디트 주식회사	2월 15일(금) 오후	리소나카드(주) 오사카관리부
7월 13일(금)	주식회사 건설경영서비스	3월 13일(수)	일본우편주식회사 도쿄지사 지구통괄부
8월 6일(월)	유시카드 주식회사		

Ⅲ. 주임자 자격 부문

■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등록강습·주임자 등록

1. 업무 개요

당 협회는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지정시험기관으로 2009년 6월 18일에 내각총리대신의 지정을 받았다. 2012년도에는 제7회 시험을 실시했으며 대금업법에 의거한 등록강습기관으로써 201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56회 등록강습을 실시했다. 주임자 등록도 금융청 장관의 위임을 받아 당 협회가 실시하고 있다.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제도란

2003년 8월에 창설된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제도는 개정대금업법이 완전 시행된 2010년 6월부터 다음과 같은 제도로 개정되었다. 즉 국가자격인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을 마친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를 대금업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별로 법령에서 정하는 수대로 배치하고 다른 종업원에 대한 조연과 지도 등을 통하여 대금업자의 법령 준수 의 철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는 대금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 및 기타 종업원에 대한 조연 또는 지도를 실시하고 법령 등을 준수하여 대금업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대금업자는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가 이러한 조연과 지도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자격시험 실시

전국 17개 지역(21개 시험장)에서 2012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을 1회 실시했다.

(1) 시험 실시 결과

〈 시험 실시 결과 〉

시험일	2012년 11월 18일(일)
시험 지역 및 시험장 수	전국 17개 지역 21개 시험장
시험 신청자 수	11,520명
응시자 수	10,088명
응시율	87.6%
합격자 수	2,599명
합격율	25.8%
합격 기준점	50개 문항 중 29개 문항 정답
합격 발표일	2013년 1월 11일(금)

(2) 합격자 개요

〈 연령별 구성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구성비	17.2%	33.0%	30.6%	17.3%	1.9%
합격율	20.3%	27.5%	26.0%	29.4%	28.9%

〈 성별 구성 〉

	남성	여성
구성비	78.6%	21.4%
합격율	28.4%	19.2%

※ 평균연령 40.0세

〈 시험지역별 구성 〉

구성비	삿포로	센다이	치바	도쿄	사이타마	요코하마	다카사키	나고야	가나자와
	2.3%	3.8%	6.1%	41.5%	5.5%	8.6%	1.5%	5.5%	1.0%

구성비	오사카	교토	고베	히로시마	다카마쓰	후쿠오카	구마모토	오кина와
	9.5%	3.0%	2.0%	2.2%	1.6%	4.2%	0.9%	0.8%

(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를 반올림한 관계로 구성비의 합계는 100.0%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3) 과목별 설문형식별 출제 수의 추이

〈 과목별 설문형식별 출제 수 〉

	설문형식	범 및 관계법령		대부 실무		자금수요자 보호		재무·회계		전체		계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제 1 회 시험	4지선다형	10	18	7	4	3	2	1	1	21	25	46
	개수	0	0	0	0	0	0	0	0	0	0	0
	빈칸 채우기	0	0	0	0	0	0	1	0	1	0	1
	조합	2	0	1	0	0	0	0	0	3	0	3
	전체	12	18	8	4	3	2	2	1	25	25	50
제 2 회 시험	4지선다형	14	16	5	6	2	2	0	1	21	25	46
	개수	0	0	0	0	0	0	0	0	0	0	0
	빈칸 채우기	0	0	0	0	0	0	2	0	2	0	2
	조합	0	0	1	0	1	0	0	0	2	0	2
	전체	14	16	6	6	3	2	2	1	25	25	50
제 3 회 시험	4지선다형	9	17	8	5	1	2	0	2	18	26	44
	개수	0	0	0	0	0	0	0	0	0	0	0
	빈칸 채우기	1	0	0	0	0	0	1	0	2	0	2
	조합	2	0	0	0	2	0	0	0	4	0	4
	전체	12	17	8	5	3	2	1	2	24	26	50
제 4 회 시험	4지선다형	10	18	7	4	1	2	1	0	19	24	43
	개수	1	0	1	0	0	0	0	0	2	0	2
	빈칸 채우기	0	0	0	0	1	0	1	0	2	0	2
	조합	1	0	1	0	0	0	1	0	3	0	3
	전체	12	18	9	4	2	2	3	0	26	24	50
제 5 회 시험	4지선다형	6	11	6	6	1	1	0	0	13	18	31
	개수	2	0	1	0	1	0	1	0	5	0	5
	빈칸 채우기	1	0	0	0	1	0	1	0	3	0	3
	조합	6	1	2	0	1	0	1	0	10	1	11
	전체	15	12	9	6	4	1	3	0	31	19	50
제 6 회 시험	4지선다형	5	10	8	6	0	2	1	1	14	19	33
	개수	4	0	0	0	1	0	0	0	5	0	5
	빈칸 채우기	0	0	0	0	0	0	0	0	0	0	0
	조합	8	0	1	0	2	0	1	0	12	0	12
	전체	17	10	9	6	3	2	2	1	31	19	50
제 7 회 시험	4지선다형	7	11	6	8	0	2	1	1	14	22	36
	개수	4	0	0	0	1	0	0	0	5	0	5
	빈칸 채우기	0	0	0	0	0	0	0	0	0	0	0
	조합	5	0	1	0	2	0	1	0	9	0	9
	전체	16	11	7	8	3	2	2	1	28	22	50

(주) 각 과목 모두 '적절'한 문제 다음에 '부적절'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3. 등록 강습 실시

(1) 2012년도 강습 수강 요령의 공표 등

- ① 2012년도 강습의 경우 2009년도에 도입된 자격시험(2009년도 4회 실시)을 치르고 처음으로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가 된 이들이 대량으로 갱신 시기를 맞이하는 해였다. 등록강습의 수강 신청과 주임자 등록의 갱신 절차 등에 대해 2011년 10월부터 대형사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하고, 협회 소식지와 업계지에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설명회 개최(2011년 12월 도쿄·오사카) 등을 실시하여 일찍부터 홍보 활동을 했다.
- ② 2012년 1월~2월에 갱신 대상이 되는 주임자 개인(약 36,000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서를 송부했다.

(2) 강습 보조 자료의 작성

2012년도 강습교재(「강습교재」, 「실무 안내」, 「관계법령집」)는 2011년도 말에 개정을 했지만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등과 같은 관계법령의 최신 동향 등에 관한 설명 자료로써 강습보조교재를 발행했다.

(3) 강습 실시 및 결과

실시일	장소	신청자수	수강자수	수강율	수료자수
5월8일	도쿄	488명	477명	97.7%	477명
5월10일	오사카	482명	476명	98.8%	476명
5월22일	도쿄	494명	482명	97.6%	482명
5월24일	센다이	273명	269명	98.5%	269명
5월29일	나고야	484명	472명	97.5%	472명
6월6일	후쿠오카	457명	452명	98.9%	452명
6월14일	도쿄	496명	493명	99.4%	493명
6월19일	도쿄	473명	464명	98.1%	464명
6월21일	오사카	525명	515명	98.1%	515명
6월26일	다카마쓰	261명	258명	98.9%	258명
6월28일	도쿄	545명	529명	97.1%	529명
7월3일	도쿄	554명	543명	98.0%	543명
7월5일	삿포로	402명	394명	98.0%	394명
7월9일	오키나와	191명	185명	96.9%	185명
7월12일	도쿄	498명	484명	97.2%	484명
7월12일	도쿄	477명	468명	98.1%	468명
7월18일	도쿄	551명	540명	98.0%	540명
7월20일	오사카	633명	621명	98.1%	621명
7월24일	히로시마	323명	319명	98.8%	319명
7월26일	도쿄	557명	541명	97.1%	541명
7월30일	도쿄	550명	537명	97.6%	537명
7월31일	센다이	283명	275명	97.2%	275명
8월2일	가나자와	188명	183명	97.3%	183명
8월7일	다카사키	274명	267명	97.4%	267명
8월9일	후쿠오카	475명	468명	98.5%	468명
8월10일	히로시마	146명	142명	97.3%	141명
8월21일	시즈오카	198명	194명	98.0%	194명
8월23일	도쿄	497명	483명	97.2%	483명

2012년도 계	22,930명	22,305명	97.3%	22,302명
----------	---------	---------	-------	---------

(주) 7월 12일은 같은 날 2개 회장(시오도메, 신주쿠)에서 실시했다.

(주) 6월 26일 다카마쓰 회장의 경우에는 세토오하시선의 운행 중지 영향으로 많은 수강자가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강습 실시 매뉴얼에 따라 강습 시작 시간을 연기하고 시간표 등을 변경하여 대응했다.

< 강습 실시 장소별 결과 >

실시 장소	실시 횟수	수강자 수	구성비율	수료자 수
삿포로	2회	684명	3.1%	684명
센다이	4회	967명	4.3%	967명
다카사키	1회	267명	1.2%	267명
도쿄	24회	11,744명	52.7%	11,742명
시즈오카	1회	194명	0.9%	194명
나고야	3회	1,212명	5.4%	1,212명
가나자와	1회	183명	0.8%	183명
오사카	9회	3,917명	17.6%	3,917명
다카마쓰	2회	451명	2.0%	451명
히로시마	3회	599명	2.7%	598명
후쿠오카	4회	1,676명	7.5%	1,676명
구마모토	1회	226명	1.0%	226명
오키나와	1회	185명	0.8%	185명
계 (13개 지역)	56회	22,305명	100.0%	22,302명

(4) 수강자 앙케트 실시

주임자 활동의 실태 파악 및 지원책 검토를 위해 수강자 앙케트를 실시(강습 시작 시에 배포, 종료 시에 회수)하여 20,930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회신율 93.8%)

앙케트 결과를 분석하여 관계부서와의 정보공유화를 도모하고 향후 주임자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5) 수강자의 질문 내용 정리

강습은 3교시와 5교시에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수강자로부터의 질문에 대해 강사가 응대를 했는데 2012년도에 총 약 500건의 질의가 있었다.(질문표 포함)

주임자 활동의 지원책으로 수강자가 질문한 내용과 강사의 회신을 테마별로 정리한 ‘자주 질의하는 사항’ 을 마이페이지에 게재하기 위해 준비할 예정이다.

4. 주임자 등록 사무 실시

(1) 주임자 등록 처리 현황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주임자 등록 관련 사무처리 건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접수 건수	21,419
등록 완료 통지 발송 건수	1,697
등록 갱신 완료 통지 발송 건수	16,127
등록의 변경·취소·말소건수	12,369

(2) 마이페이지 등록 현황

	2011년 3월말	2012년 3월말	2013년 3월말
등록주임자 수	37,708명	40,219명	32,988명
마이페이지 등록자 수	8,945명	12,179명	11,641명

(주) 2012년도 하반기 이후 등록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등록 말소가 되는 자(마이페이지 등록자 포함)가 다수 발생하여 마이페이지등록자 수는 현상유지 정도로 진행 중이다.

(3) 주임자 등록 갱신 현황

	갱신 대상자 수	갱신자 수	누계 갱신율
2012년 12월	818	426	52.1%
2013년 1월	7,936	4,235	53.2%
2월	4,735	2,992	56.7%
3월	7,261	4,186	57.1%

(주) 갱신 대상자 수 : 2009년도 해당 월의 주임자 등록 완료자 수

5. 문의 현황

(1) 문의 창구의 대응 현황

< 2012년도 문의 창구의 문의건수 추이 >

	시험	강습	주임자 등록	합계	전년 동월 대비
4월	81	1,095	363	1,539	342.0%
5월	62	1,228	449	1,739	303.5%
6월	127	1,055	400	1,582	328.9%
7월	253	967	742	1,962	317.5%
8월	333	875	996	2,204	288.1%
9월	379	789	887	2,055	264.5%
10월	174	825	1,360	2,359	417.5%
11월	938	732	1,357	3,027	164.5%
12월	44	487	1,185	1,716	205.0%
1월	278	551	1,272	2,101	62.4%
2월	76	711	1,003	1,790	53.1%
3월	55	419	893	1,367	59.5%
연간 계	2,800	9,734	10,907	23,441	-
전년 대비	61.3%	137.1%	255.1%	147.0%	-

IV. 건의 요청

■ 2013년도 정부세제 개정에 관한 요청

2012년 6월, 2013년도 세제 개정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 금융청에 요청하고 총무성과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이 관할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각 기관에 요청했다.

1. 대금업계의 적절한 자금공급 기능 확보

(1) 과불이자반환 관련 법인에 환급

대금업자는 1983년 시행된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동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취한 연도에 각각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각 연도의 결산에 따라 납세를 해왔다.

하지만 2006년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과거에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에 대한 반환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불 이자 반환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민법상 시효인 10년을 한도로 과세한 과년도 법인세액을 환급받았으면 한다.

(2) 파산 채권의 취급 제검토

개인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실제로는 대부분이 회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계 상은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세무상 형식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산입 한도액은 채권금액의 50%까지로 되어 있어 조기에 손금 산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회계 실무와 세무 상의 차이를 해소하고 절차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산입 한도를 100%로 인상했으면 한다.

(3) ‘일정 기간 거래정지 후 변제가 없는 경우 등의 대손’의 소비자금융 적용

‘일정 기간 거래 정지 후 변제가 없는 경우 등의 대손’이 해당되는 것은 매출채권만으로 금전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소비자금융의 금전채권은 거의 대부분이 소액 무담보 무보증이어서 매출채권과 동일한 성질을 띠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형식기준을 소비자금융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고 싶다.

(4) 결손금의 이월공제제도의 제검토와 환급기간의 연장

결손금의 이월공제제도는 기간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공제한도액이 80%로 제한되었다. 해당 제한은 사실상 적자법인에 과세되어 채무요인의 악화로 이어진다.

적자법인의 경영 능력 회복과 기업경영의 장기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입 한도액을 100%로 회복시키고 이월기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장했으면 한다.

환급에 대해서는 기간이 1년으로 짧아 적어도 2년으로 연장했으면 한다.

2. 경제 활성화와 과세 적정화

(1) 인지세 제도의 제검토에 따른 부담 경감

현행 인지세 제도는 전자거래가 증대되는 등 경제사정의 변화를 감안하면 지금의 경제 시스템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최근 전자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대금업계는 특유의 사정으로 인해 법령으로 발행이 의무화된 문서에 과세가 되고 있다.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 계약의 과세를 고려하면 불공평하고 부담감이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세제도를 근본적으로 제검토하여 세 부담의 공평성을 기했으면 한다.

(2) 등록 면허세의 부담 경감·간소화

등록 면허세는 수수료적인 성격인 점을 감안, 유담보 대부 시에 자금수요자에게 부담이 되는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를 비롯하여 등록 면허세의 세율을 저액의 정액세율로 하는 등 경감·간소화했으면 한다.

(3) 주택 취득 촉진에 기여하는 세계 조지의 확충 등

주택 취득과 주거 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을 진작시키기 위해 자금수요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주택 차입금 등에 대한 소득세액의 특별 공제제도의 영구화를 도모했으면 한다.

3. 지방세 제도의 간소화와 공정성 확립

(1) 신고·납세 등의 사무 간소화

지방세의 신고·납세 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양식이 달라 일원화된 사무처리가 불가능하다. 개별적으로 신고·납세를 해야 하는 등 복수의 도도부현에 사무소를 설치한 기업에게는 상당히 사무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를 일원화하여 효율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외형 표준과세제도의 재검토

외형 표준과세제도는 적자법인에도 과세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방면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고 등의 사무처리 시 전국규모로 사업소를 가진 법인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된다.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 하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사무 부담은 법인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되돌이는 등 해당 세제도의 재검토를 도모했으면 한다.

2 '집단적 소비자 피해 회복 관련 소송 제도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2년 8월 소비자청이 '집단적 소비자 피해 회복에 관한 소송 제도안'을 공표하고 의견 공모 절차를 통해 의견을 모집하자 동청에 의견을 제출했다.

3 기타

1. 각계와의 간담회

(1) 금융청 2013년도 세제개정 요청 공청회 시 의견 진술

2012년 8월 금융청에서 개최한 2013년도 세제개정요청 공청회에 참석하여 대금업계의 2013년도 세제개정을 요청했다.

(2) 민주당에서의 의견 진술

2012년 8월 '민주당 정책조사회 재무금융부회'에서 대금업계의 2013년도 세제개정요청에 대해 설명을 했다.

(3) 자민당에 대한 의견 진술

2012년 12월 자유민주당의 '재정·금융·증권 관련 단체위원회'에 대금업계의 2013년도 세제개정 요청을 제출했다.

자금수요자 및 대금업자 대상 양케트 조사 결과 보고 (개요)

조사 개요

■ 자금수요자 대상 조사

- (1) 조사기간 : 2012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
(2) 응답자수 :

개인 대출 이용자 : 3,714명	소비자금융회사와 신용카드회사, 신용판매회사, 기타 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아 있는 개인 대출 이용자를 추출
대출 경험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 : 665명	소비자금융회사와 신용카드회사, 신용판매회사, 기타 대금업자로부터 대출 받은 적이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로 파트타임 수입을 포함하여 일절 수입이 없는 자를 추출
대출 경험 있는 사업자 : 1,650명	대금업자로부터 사업성 자금(운전자금·설비자금 등)을 대출 받은 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대출 이용자 1,348명과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또는 소속된 회사가 대금업자로부터 사업성 자금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 소규모 기업 경영자인 대출 이용자 302명을 추출

- (3)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

대금업자 대상 조사

- (1) 조사기간 :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7일
(2) 응답자수 : 대금업자 1,187개사
(회원사 : 850개사/금융ADR업무처리기본계약 체결 대금업자 : 337개사)
(3) 조사방법 : 우편 조사 및 전자메일을 이용한 조사

조사결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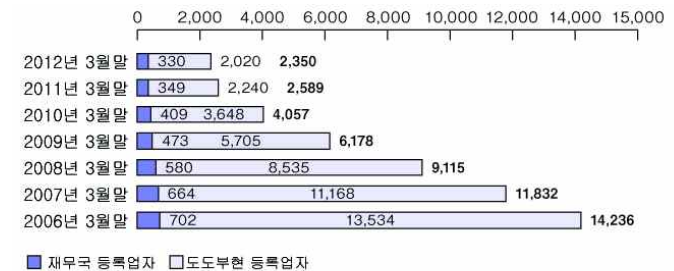
1. 대금업 시장의 현황(금융청 '대금업 관련 자료집' 발췌)

- (1)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등록 대금업자 수가 14,236개사에서 2,350개사로 83.5% 감소했다.
- (2) 대금업자의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은 2006년 3월 20.9조원에서 2012년 3월에는 7.8조원으로 62.6% 감소했으며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은 20.5조원에서 16.8조원으로 18.0% 감소했다.

< 등록 대금업자 수와 대부종류별 대출 잔액 추이(금융청 '대금업 관계 자료집' 발췌) >

등록대금업자수

(단위 : 개)



대출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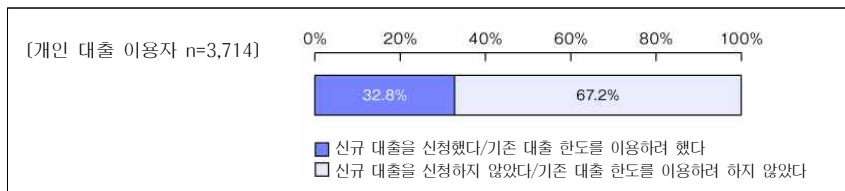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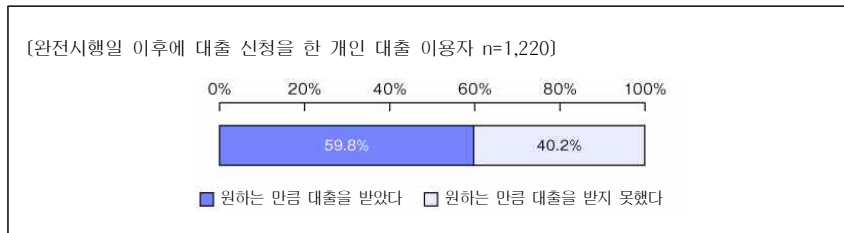
2. 자금수요자 (개인) 대출 현황

- (1) 개인 대출 이용자의 32.8%가 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 중 59.8%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40.2%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 개인 대출이용자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신청 현황 〉



〈 개인 대출 이용자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신청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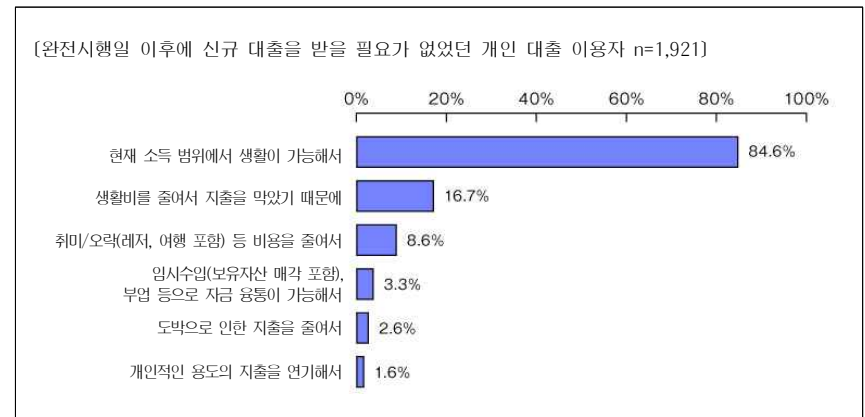


- (2)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개인(67.2%)의 77.0%는 신규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소득 범위 내에서 생활이 가능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84.6%로 가장 높았다.

〈 개인 대출 이용자가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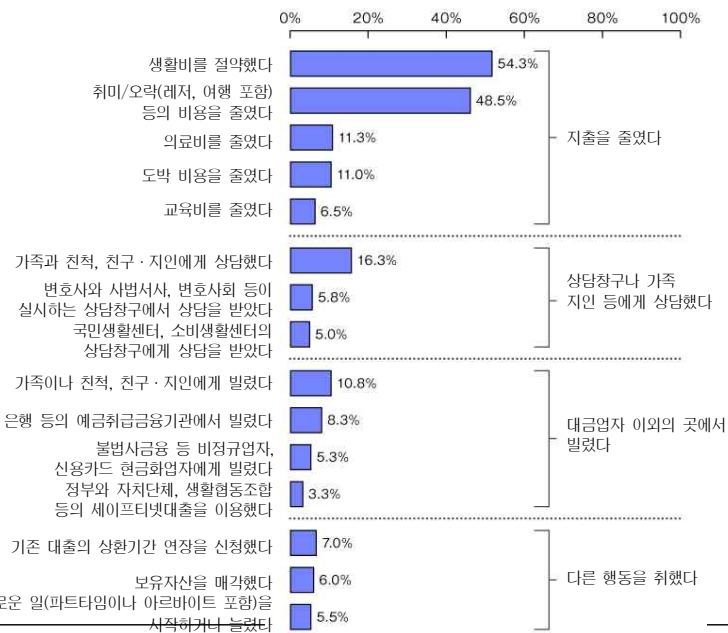
〈 개인 대출 이용자가 완전시행일 이후에 신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이유(복수응답) 〉



(3)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개인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취한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활비(54.3%), 취미·오락비(48.5%)를 절약했다고 하는 한편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10.8%) 등 대금업자 이외의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개인 대출이용자의 행동(복수응답) >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개인 대출 이용자 n=400(‘특별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이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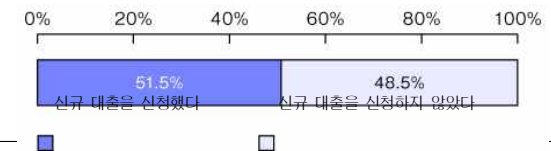


(4) 대금업자로부터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개인 이용자의 51.5%가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고 이중 15.8%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았다” 라고 응답하는가 하면 84.2%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라고 응답했다.

<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 현황 >

[대금업자로부터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개인 대출 이용자 n=491]



<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 결과 >

[예금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개인 대출 이용자 n=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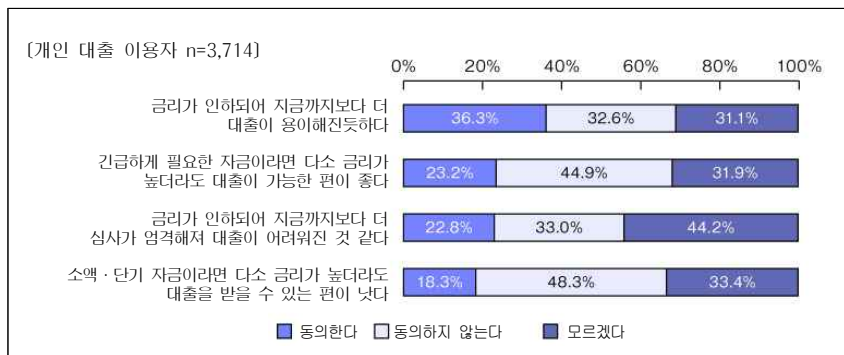
(5) 개인 대출 이용자가 대금업자를 대출 기관으로 선택한 이유로는 ‘심사가 빠르고 긴급 대출이 가능해서’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가 46.3%로 나타났다.

< 개인 대출 이용자가 대금업자를 대출기관으로 선택한 이유(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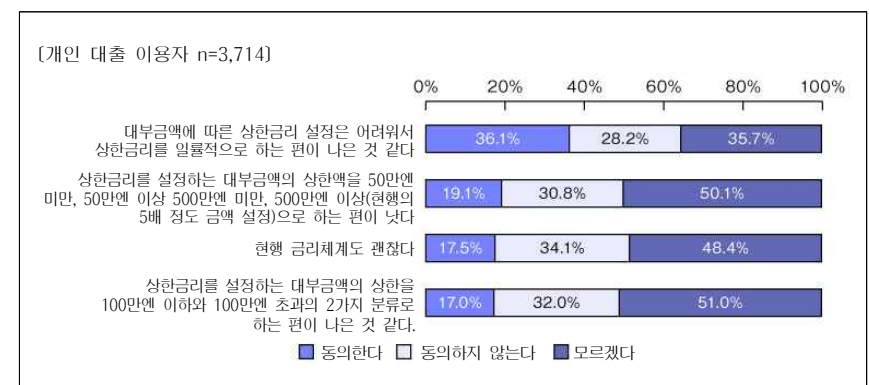
(6) 개인 대출 이용자의 36.3%가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지금까지보다 더 대출이 용이했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32.6%를 차지했다.

< 개인 대출 이용자의 금리규제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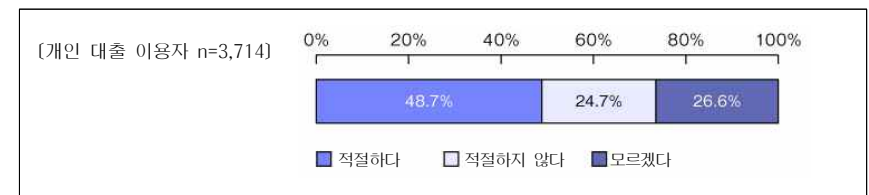
(7) 금리규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개인 대출 이용자의 의견으로는 36.1%가 “대부 금액에 따른 상한금리 설정은 어려워져 상한금리를 일률적으로 하는 편이 나은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

< 개인 대출 이용자의 금리규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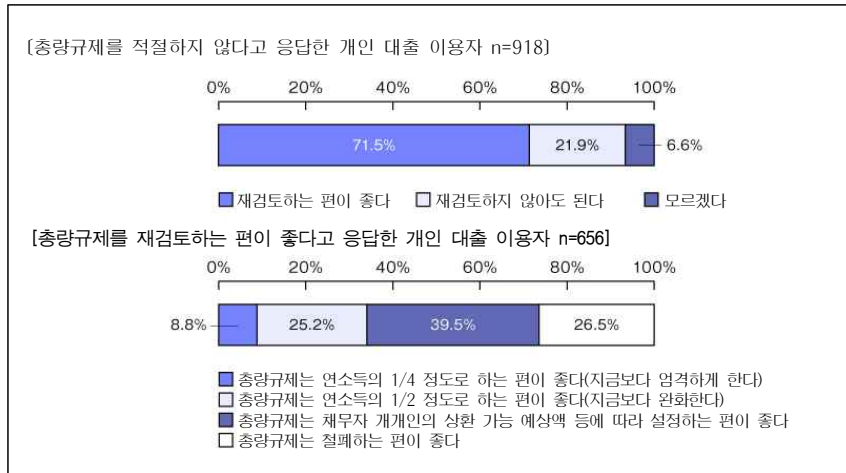
(8) 개인 대출 이용자의 48.7%가 지금의 총량규제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24.7%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 개인 대출 이용자의 총량규제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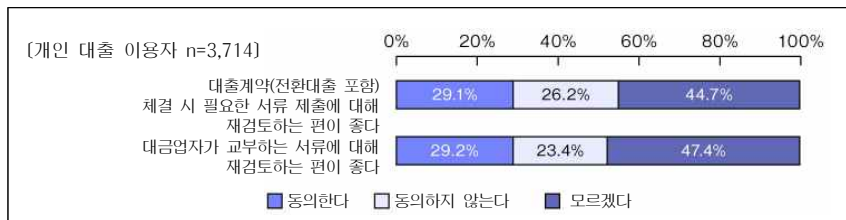
(9) 총량규제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개인 대출 이용자의 71.5%가 총량규제를 재검토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했다. 재검토 관련해서는 “총량규제는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 가능 예상액 등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총량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이 26.5%로 나타났다.

< 개인 대출 이용자의 총량규제 재검토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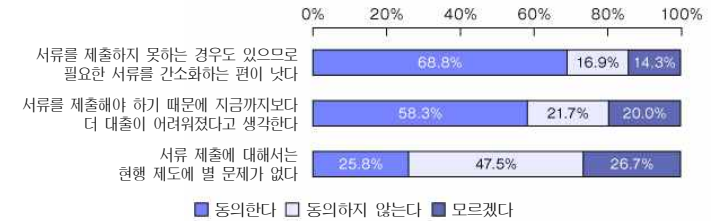
(10) 개인 대출 이용자의 29.1%가 계약 관련 사무 절차를 재검토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68.8%가 간소화를 희망하고 있다. 29.2%가 대금업자가 교부하는 서류에 대해 재검토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5.0%가 교부하는 서류의 종류와 기재사항이 너무 많아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 개인 대출 이용자의 대출 계약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대금업자의 교부서류 재검토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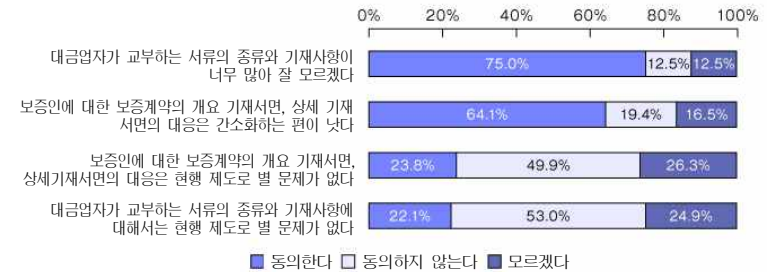


< 개인 대출 이용자의 대출 계약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대금업자가 교부하는 서류에 대한 의견 >

[대출계약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대해 재검토하는 편이 낮다고 한 개인 대출 이용자 n=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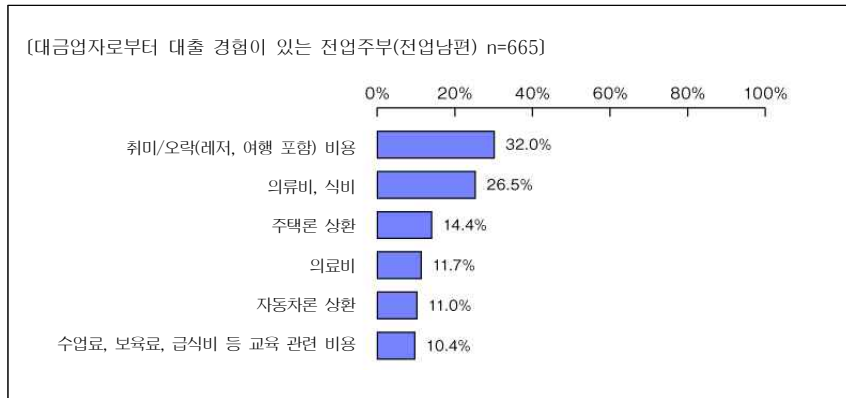
[대금업자가 교부한 서류에 대해 재검토하는 편이 낮다고 한 개인 대출 이용자 n=1,084]



3. 자금수요자(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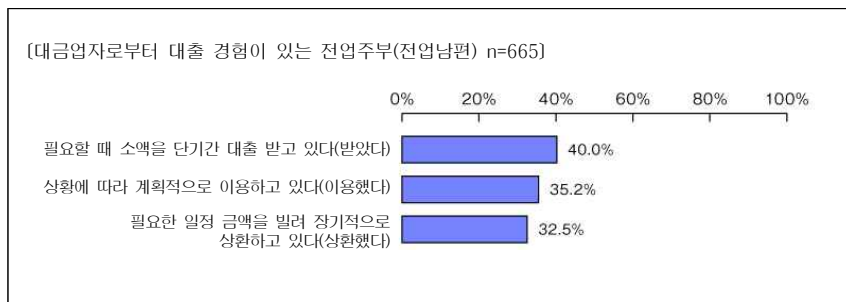
(1) 대출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가 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목적은 ‘취미/오락비용’이 3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비, 식비’가 26.5%, ‘주택론의 상환’이 14.4%로 나타났다.

< 대출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출금 용도(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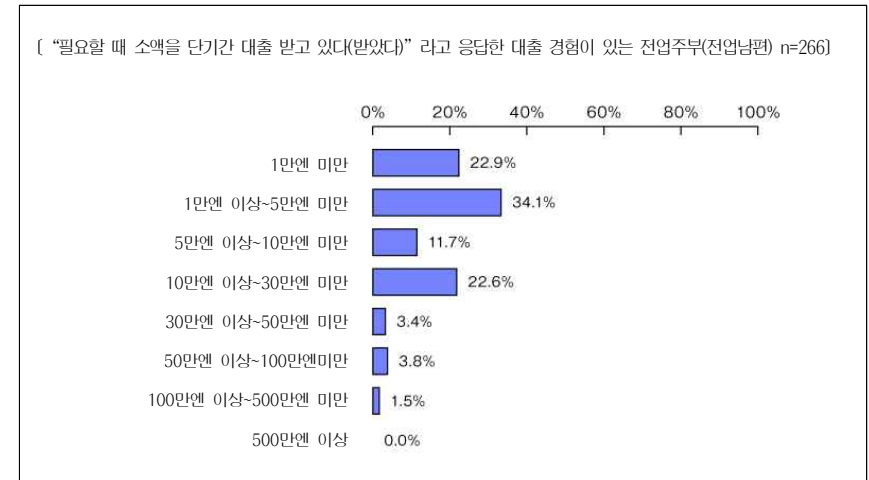


(2) 대출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가 대금업자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의 대출 패턴은 ‘필요한 경우에 소액·단기로 대출’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금액은 ‘1만엔 미만’과 ‘1만엔 이상부터 5만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계가 57.0%를 차지했다.

< 대출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금업자 이용 현황(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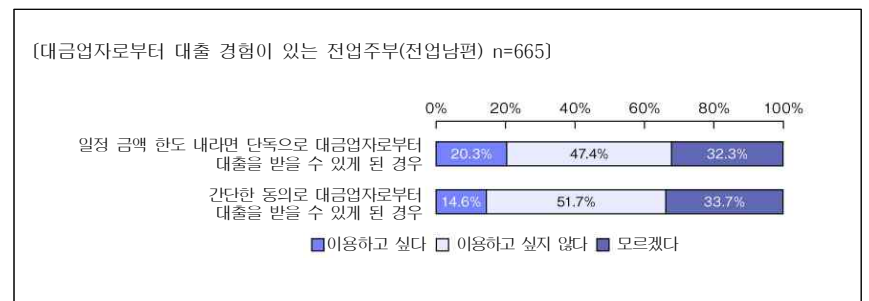


< 전업주부(전업남편)의 대금업자에게 대출한 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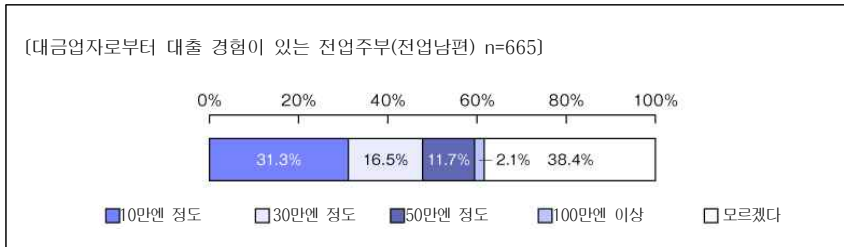
(3) 대출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가 일정 금액 한도 내라면 단독으로 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에 대한 의견으로는 20.3%가 “이용하고 싶다”라고 응답했으며, 47.4%가 “이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 전업주부(전업남편) 대출의 특례조치와 서류 절차의 간소화가 실현될 경우의 이용 동향 >



(4) 대금업자로부터 일정 금액 한도 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의 대출 희망 금액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10만엔 정도’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30만엔 정도’가 16.5%였다.

< 대출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전업남편)이 희망하는 대출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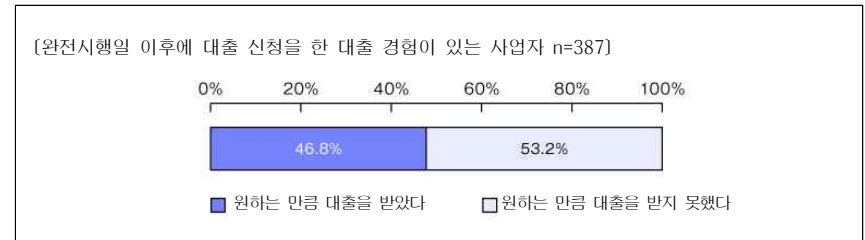
(4) 자금수요자(사업자)의 대출 현황

(1)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23.5%가 개정 대금업법의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고 이중 46.8%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53.2%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신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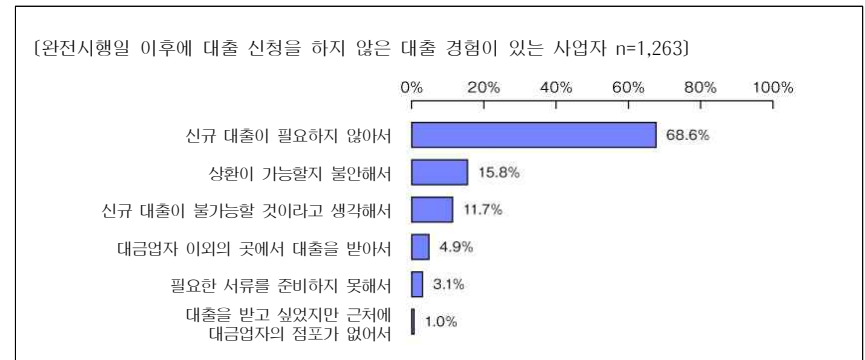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완전시행일 이후의 신청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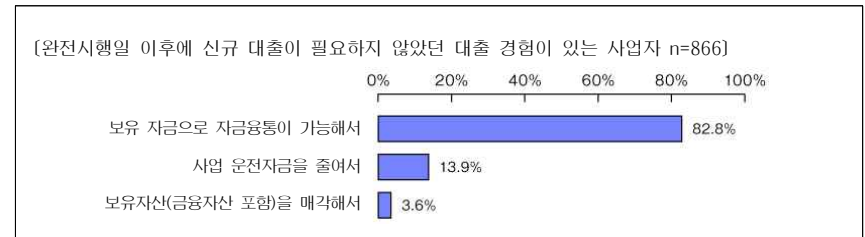


(2)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76.5%)의 68.6%는 신규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보유 자금으로 자금 융통이 가능해서’가 82.8%로 가장 많았다.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완전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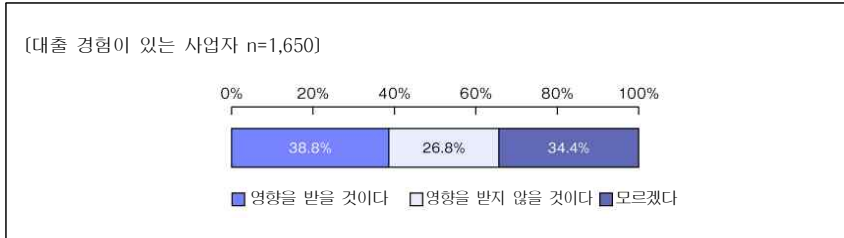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완전시행일 이후에 신규 대출이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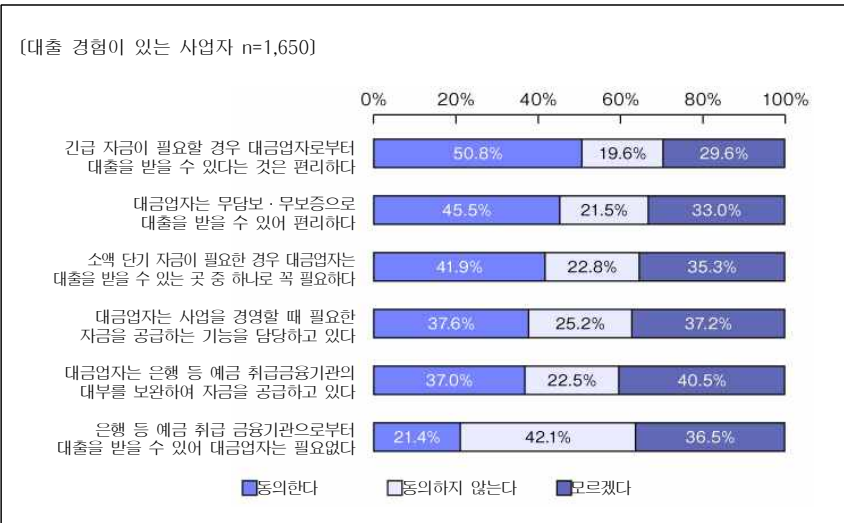
(3)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38.8%가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이 종료됨에 따라 자금 융통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의 종료에 따른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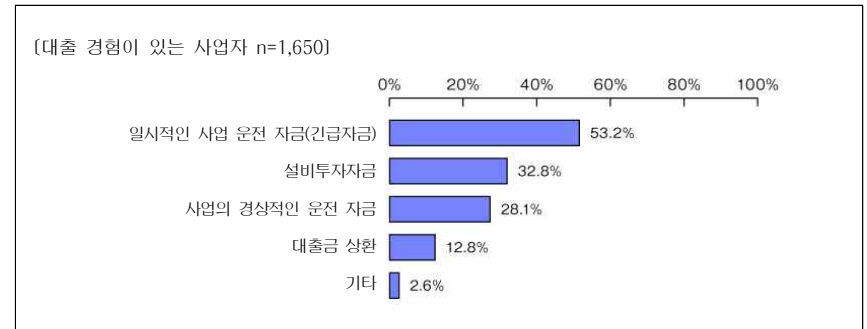


(4)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50.8%가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편리하다.” 라고 응답했으며, 대출 목적으로는 ‘일시적인 사업운전자금’ 이 5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설비투자자금’ 이 32.8%였다.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느끼는 대금업자의 기능과 역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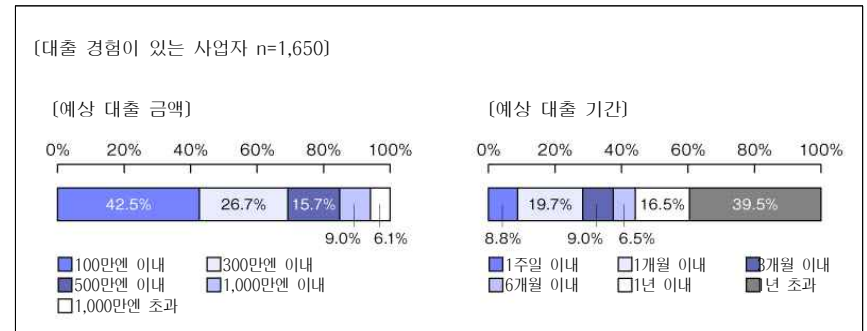


< 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목적(복수응답) >



(5) 사업자가 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액은 100만원 이내가 42.5%, 대출기간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 부터 ‘1년 이내’ 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계가 60.5%로 나타났다.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실시할 경우 예상 대출금액·기간 >



(6) 사업자가 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느끼는 장점은 ‘심사가 빠르고 긴급 자금 대출이 가능해서’ 가 62.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해서’ 가 41.9%로 나타났다.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느끼는 장점(복수응답) >

[향후 신규 대출 신청기관으로 대금업체만을 생각한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 n=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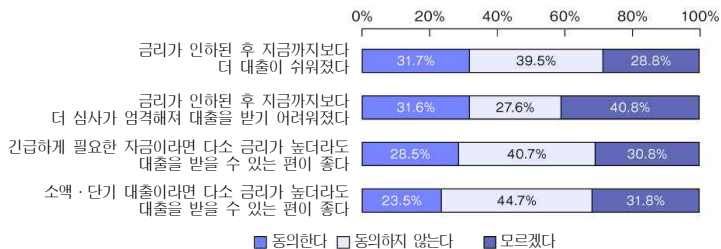


(7)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31.7%가 금리가 인하된 후 지금까지보다 더 대출을 받기 쉬워졌다고 응답한 반면 39.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8) 지금까지보다 더 심사가 엄격해져 대출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업자가 31.6%인데 비해 개인은 22.8%로 나타나 금리규제에 대한 입장은 개인과 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었다.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금리규제에 대한 의견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 n=1,650]



(9)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금리규제변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39.7%가 “대출금액에 따른 상한금리는 어려워져 상한금리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편이 좋다” 라고 응답했다.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금리규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 n=1,650]



(10)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42.6%가 계약 관련 사무 처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74.0%가 간소화를 바라고 있다.

(11) 대금업자가 교부하는 서류에 대한 의견은 43.9%가 교부 서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7.8%가 교부 서류의 종류와 기재항목이 너무 많아 알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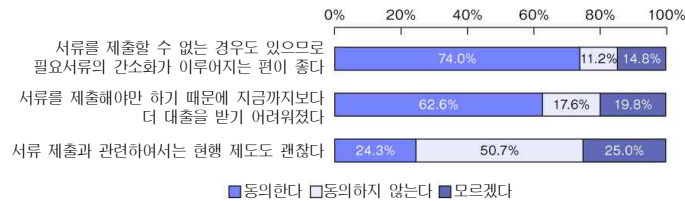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대출 계약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대금업자가 교부하는 서류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 n=1,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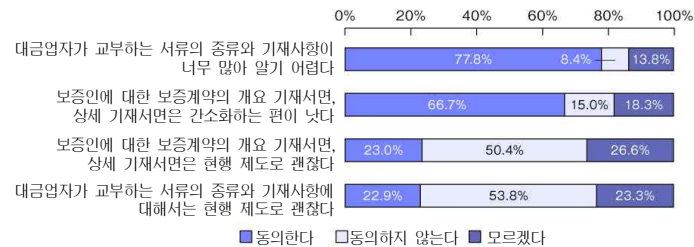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대출 계약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대금업자가 교부하는 서류에 대한 의견 〉

[대출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 n=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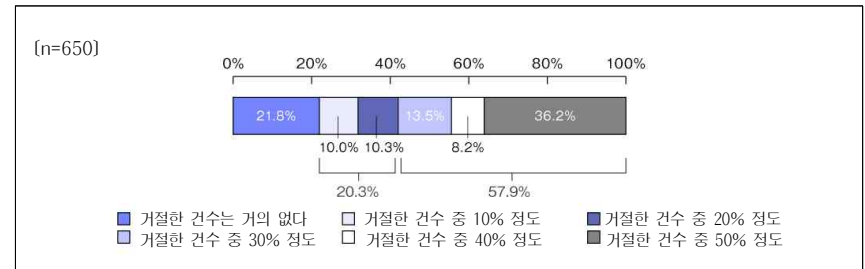
[대금업자가 교부하는 서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 n=725]



5. 대금업자의 대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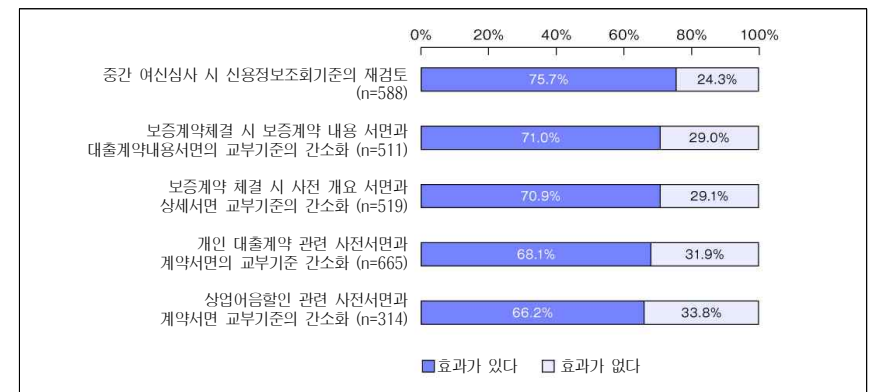
- (1) 총량규제를 이유로 소비자 대상 신규대출을 거절한 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금업자의 20.3%가 10% 정도에서 20% 정도로 응답했으며 57.9%가 30% 정도에서 50%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 소비자 대상 신규대출을 거절한 건수 중 총량규제를 이유로 한 비율 〉



- (2)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재검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효과가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은 ‘중간 여신 심사 시 신용정보조회 기준의 재검토’ (75.7%)로 나타났다.

〈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재검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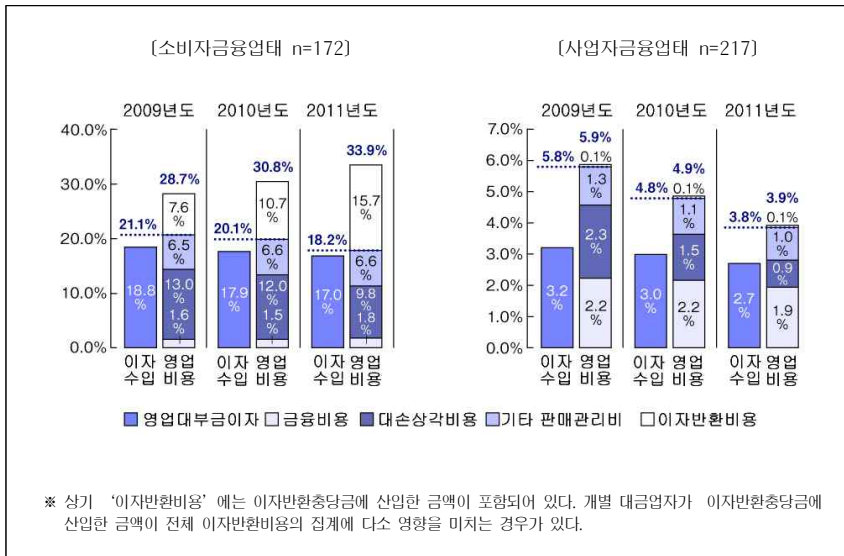
(3) 대금업자의 62.3%가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주에게 각종 서류(사업계획·수지계획·자금계획)를 제출하도록 의뢰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부담이 될 것 같다.” 라고 응답했다.

〈 대금업자의 ‘사업자에게 대출 실시 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제출을 의뢰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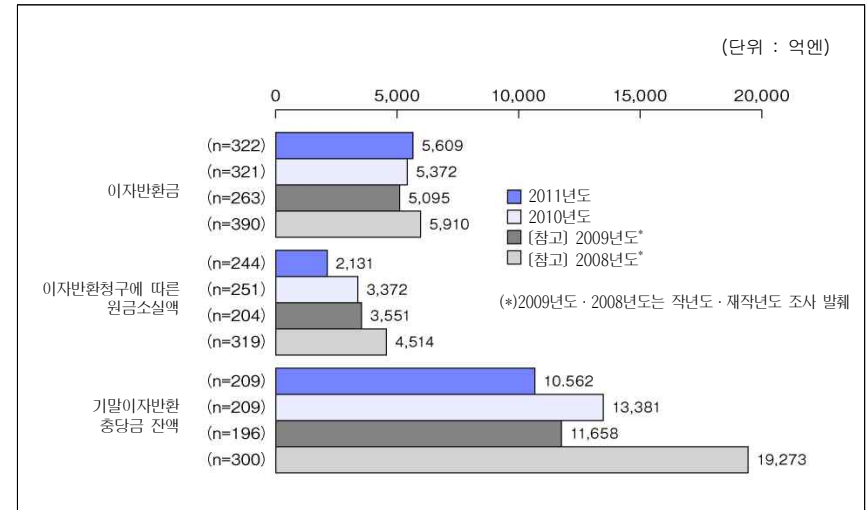
(4) 대금업자의 경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3기 기말 기준 이자 수입(영업대부금 이자)이 계속 영업비용 보다 낮아 대금업자의 수익 구조는 적자였다.

〈 각 수지항목의 영업대부금 잔액 비율 추이 - 업태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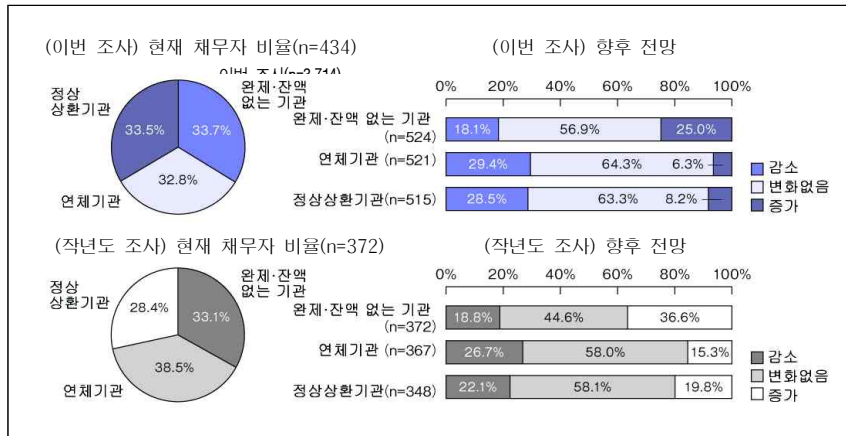
(5) 2011년도 이자반환금과 원금손실액의 합계는 7,740억엔으로 과거 4년간의 이자 반환금과 원금손실액의 합계는 약 3.5조엔, 2011년도 기말이자반환충당금 잔액 1.0조엔을 더하면 이자반환청구 관련 비용은 약 4.5조엔으로 나타났다.

〈 이자반환금, 이자반환청구에 따른 원금손실액 및 충당금 잔액의 추이 〉



(6) 이자반환청구 시 채무자 구분을 살펴보면 ‘완제·잔액이 없는 기관’이 33.7% (작년도 조사 대비 0.6포인트 상승)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상 상환기관’이 33.5%(작년도 조사 대비 5.1 포인트 상승), ‘연체기관’이 32.8%(작년도 조사 대비 5.7 포인트 하락)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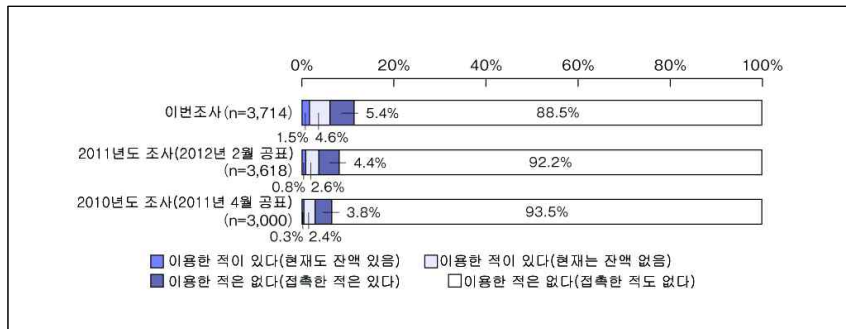
< 이자반환청구 시 채무자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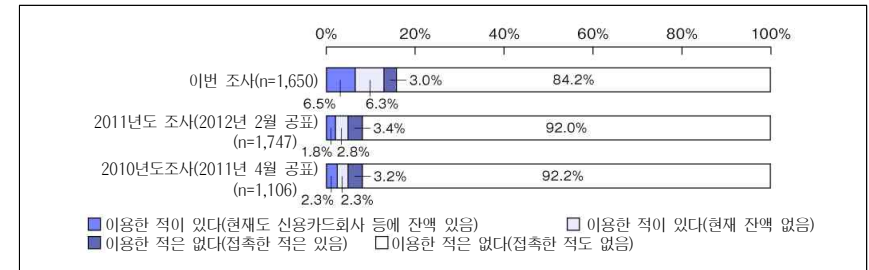
6.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자와의 접촉 현황

- (1) 개인 대출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1.5%,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5.8%로 나타나 작년도 조사(2011년도 조사) 대비 각각 3.7 포인트, 7.8포인트 상승했다.

< 개인 대출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자와 접촉한 경험 유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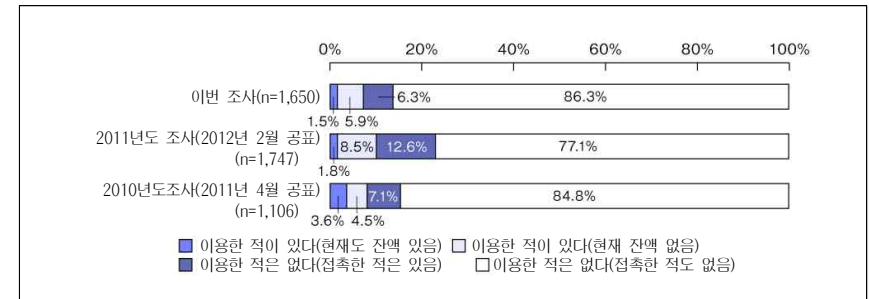


< 개인 대출 이용자의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접촉 경험 유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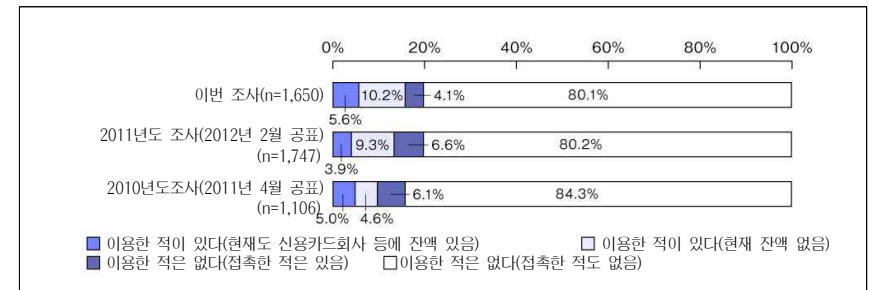


- (2)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자 접촉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3.7%,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9.9%로 나타나 작년도 조사(2011년도 조사) 대비 각각 9.2포인트 하락, 0.1 포인트 상승했다.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불법사금융 등 비정규업자 접촉 경험 유무 >



< 대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접촉 경험 유무 >



제 3 장 총회 · 이사회 · 위원회 · 협의회 · 임원 등

1. 총회

2012년 6월 12일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의안을 논의하고 모두 원안대로 승인 가결했다.

제1호 2011년도 사업보고서 승인에 관한 건

제2호 2011년도 재무제표 및 재산목록 승인에 관한 건
[2011년도 감사 보고]

제3호 2012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에 관한 건

제4호 2012년도 예산서(안) 승인에 관한 건

제5호 임원(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건

2. 이사회

2012년도에는 이사회를 12회 개최하여 회원사의 가입과 탈회, 본부·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자 모집, 지부 운영의 합리화·효율화 대상 지부, ‘분쟁 해결 등 업무에 관한 규칙’,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기본규칙’ 및 ‘업무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사내규칙 책정 시의 세칙’, ‘행정협력사무규칙’의 일부 개정, 본부 조직의 개정, 회비 미납 회원사에 대한 처분,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 본 협회의 업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 승인했다.

(1) 제1회 이사회 (2012년 4월 24일)

① 심의사항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제3호 2011년도 사업보고서(안) 승인에 관한 건

제4호 2011년도 결산보고서(안) 승인에 관한 건

제5호 대의원 선거 실시 요령에 관한 건

제6호 대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건

기타

② 보고사항

i 자율규제회의 보고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iii 총무위원회 보고

iv 기타

(2) 제2회 이사회 (2012년 5월 15일)

① 심의사항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제3호 임원 (이사·감사) 후보자 선임에 관한 건

제4호 제5회 정기총회에 부의해야 하는 의안에 관한 건

(1) 2011년도 사업보고서 승인에 관한 건

(2) 2011년도 재무제표 및 재산목록 승인에 관한 건

(3) 2012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에 관한 건

(4) 2012년도 예산서(안) 승인에 관한 건

(5) 임원 (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건

기타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총무위원회 보고
- iv 상담·분쟁해결위원회 보고
- v 기타

(3) 제3회 이사회 (2012년 6월 12일)

① 심의사항

- 제1호 회장 선임에 관한 건 (정관 제32조 제1항)
- 제2호 자율규제회의 의장 선임에 관한 건 (정관 제50조 제5항)
- 제3호 대금전략회의 의장 선임에 관한 건 (정관 제51조 제5항)
- 제4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정관 제52조 제4항)
- 제5호 부회장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32조 제2항, 제3항)
- 제6호 부회장 순위에 관한 건 (정관 제35조 제1항)
- 제7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8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기타

(4) 제4회 이사회 (2012년 7월 17일)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제3호 자율규제회의 위원 선임에 관한 건 (정관 제50조 제6항, 제7항)
- 제4호 대금전략회의 위원 선임에 관한 건 (정관 제51조 제6항)
- 제5호 총무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건 (정관 제52조 제5항)
- 제6호 상담·분쟁해결위원회 위원 1명 보충 선임에 관한 건 (정관 제53조 제2항)
- 제7호 지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자 모집에 관한 건
- 기타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기타

(5) 제5회 이사회 (2012년 8월 14일) (서면에 의한 이사회)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제3호 ‘분쟁해결 등 업무에 관한 규제’ 제19조 제2항에 따른 분쟁해결위원 후보의 동의에 관한 건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상담·분쟁해결위원회 보고

(6) 제6회 이사회 (2012년 9월 11일)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제3호 상담·분쟁해결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건 (정관 제53조 제2항)
- 제4호 지부 운영의 합리화·효율화 대상 지부에 관한 건
- 제5호 지부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건
- 기타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총무위원회 보고
- iv 기타

(7) 제7회 이사회 (2012년 10월 11일) (서면에 의한 이사회)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제3호 지부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건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총무위원회 보고
- iv 상담·분쟁해결위원회 보고
- v 시험위원회 보고

(8) 제8회 이사회 (2012년 11월 13일)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제3호 분쟁해결 등 업무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건
- 제4호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자 모집에 관한 건
- 제5호 시즈오카현 지부사무소 이전에 관한 건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총무위원회 보고
- iv 상담·분쟁해결위원회 보고
- v 기타

(9) 제9회 이사회 (2012년 12월 11일)(서면에 의한 이사회)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상담·분쟁해결위원회 보고
- iv 기타

(10) 제10회 이사회 (2013년 1월 22일) (서면에 의한 이사회)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11) 제11회 이사회 (2013년 2월 19일)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제3호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기본규칙’ 및 ‘업무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사내규칙 책정 시의 세칙’ 일부 개정에 관한 건
- 제4호 ‘행정협력사무규칙’ 의 일부 개정에 관한 건
- 제5호 본부 조직의 개정에 관한 건
- 제6호 지부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건(에히메, 가고시마)
- 기타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총무위원회 보고
- iii 시험위원회 보고
- iv 기타

(12) 제12회 이사회 (2013년 3월 19일)

① 심의사항

- 제1호 본 협회 신규 가입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6조 제3항)
- 제2호 본 협회 탈회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19조 제2항)
- 제3호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처분 건 (정관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 제4호 2013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건
- 제5호 2013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제6호 조직 개정에 따른 각종 규제의 개정에 관한 건
- 제7호 상무이사 선임 (재임)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37조 제1항)
- 제8호 사무국장의 정년 연장 승인에 관한 건 (정관 제59조 제4항)
- 기타

② 보고사항

- i 자율규제회의 보고
- ii 대금전략회의 보고
- iii 총무위원회 보고
- iv 기타

3. 자율규제회의, 대금전략회의, 총무위원회, 상담·분쟁해결위원회, 시험위원회

(1) 자율규제회의

16회 (2012년 4월 19일(서면에 의한 회의), 5월 15일, 6월 29일(서면에 의한 회의), 7월 23일(서면에 의한 회의), 8월 6일(서면에 의한 회의), 8월 22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10일(서면에 의한 회의), 10월 11일, 11월 13일, 12월 11일, 12월 25일(서면에 의한 회의), 2013년 1월 22일, 2월 13일(서면에 의한 회의), 2월 19일, 3월 11일(서면에 의한 회의), 3월 19일) 개최

- ① 개정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등의 시행에 따라 자율규제기본규칙과 동 세칙의 일부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내규칙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 ② 법령 등 위반 신고사안에 대해 조치했다.
- ③ 대금업 과제에 관한 논점에 대해 테마별로 의견을 교환했다.

(2) 대금전략회의

12회 (2012년 4월 18일(서면에 의한 회의), 5월 9일(서면에 의한 회의), 6월 6일, 7월 20일, 8월 8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5일(서면에 의한 회의), 10월 5일(서면에 의한 회의), 11월 6일, 12월 5일, 12월 25일, 2013년 1월 16일, 3월 13일) 개최

- ① 대금업이 담당하는 자금공급기능 등의 현황과 과제를 검증하기 위해 ‘대금업자’와 ‘자금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 등을 실시하고 발표했다.
- ② 2013년도 세제 개정 요청을 책정한 후 정부 등에 건의 요청했다.
- ③ 전국 9개 지구와 오키나와현에서 개최한 지구협의회와 함께 업무연수회를 개최했다.
- ④ 지구협의회 부회장과 의견 교환을 했다.

⑤ 대금업 과제에 관한 논점에 대해 테마별로 의견을 교환했다.

(3) 중무위원회

7회 (2012년 4월 19일, 5월 10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7일, 10월 4일(서면에 의한 회의), 11월 8일(서면에 의한 회의), 2013년 2월 14일, 3월 14일) 개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2013년도 예산 편성 방침, 행정협력사무규칙의 개정, 본부 조직의 개정, 조직 개정에 따른 각종 규칙의 개정, 지부사무소의 이전,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자의 모집, 지부 운영의 합리화·효율화 대상 지부, 2013년도 예산 상반기 집행 현황 등에 대해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했다.

(4) 상담·분쟁해결위원회

6회 (2012년 5월 11일, 7월 26일, 8월 13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18일, 11월 2일(서면에 의한 회의), 12월 5일(서면에 의한 회의)) 개최

부담금을 미납한 대금업자에 대한 조치와 분쟁 해결 시 ‘다수 당사자’에 관한 참고인 사안의 취급, 대금업 상담·분쟁해결센터의 중된 사무소의 주소 기재 개정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건에 대해 심의하고 분쟁해결절차 수리 사안의 대응 현황, 업무처리기본 계약의 체결 현황, 상담·민원·분쟁해결 접수 현황 등에 대해 보고했다.

(5) 시험위원회

2회 (2012년 9월 14일, 12월 13일) 개최

2012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입자 자격시험의 시험 문제를 정하고 합격자를 결정했으며 2013년도 자격시험의 출제 방침 등을 결정했다.

4. 위원회 등

(1) 자율규제위원회

13회 (2012년 4월 25일, 5월 23일, 6월 26일, 8월 1일, 8월 23일, 9월 27일, 11월 1일, 11월 29일, 12월 21일, 2013년 1월 23일, 2월 5일, 3월 5일, 3월 27일 ※모두 서면에 의한 회의) 개최

① 광고심사소위원회

12회 (2012년 4월 18일, 5월 16일(서면에 의한 회의), 6월 20일, 7월 18일, 8월 15일(서면에 의한 회의), 9월 19일, 10월 17일, 11월 21일, 12월 19일, 2013년 1월 16일(서면에 의한 회의), 2월 20일, 3월 22일) 개최

(2) 규율위원회

11회 (2012년 4월 13일(서면에 의한 회의), 5월 9일, 6월 27일, 8월 1일, 9월 6일(서면에 의한 회의), 10월 3일, 11월 5일, 12월 4일(서면에 의한 회의), 12월 18일, 2013년 2월 6일(서면에 의한 회의), 3월 6일(서면에 의한 회의)) 개최

(3) 기획조사위원회

9회 (2012년 4월 11일, 6월 5일, 8월 8일(서면에 의한 회의), 8월 30일, 9월 28일, 10월 24일, 11월 5일, 11월 29일, 2013년 3월 6일) 개최

① 세제연구소위원회

2회 (2012년 4월 26일, 5월 29일) 개최 ※6월에 폐지하고 세제연구WT으로 인계했다.

② 클래스액션WT 1회(2012년 8월 24일) 개최

③ 세제연구WT 1회(2013년 3월 4일) 개최

(4) 연수위원회

3회 (2012년 4월 11일, 5월 2일, 9월 6일 ※모두 서면에 의한 회의) 개최

(5) 인사 주전 합동 위원회

3회 (2012년 4월 16일, 5월 10일, 7월 9일 ※모두 서면에 의한 회의) 개최

(6) 재무부의

2회 (2012년 4월 19일, 2013년 2월 14일) 개최

5. 협의회

10개 지구 각 1회 (총 10회) (2012년 6월 21일(도호쿠지구), 6월 28일(홋카이도 지구), 7월 3일(시코쿠 지구), 7월 4일(쥬고쿠 지구), 7월 5일(규슈 지구), 7월 10일(도카이 지구), 7월 11일(간키 지구), 7월 12일(호쿠리쿠 지구), 7월 19일(간토 지구), 7월 24일(오кина와 지구) 개최

지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1회 (2012년 11월 22일) 개최

6. 행정기관과의 의견 교환

(1) 금융청 (총무기획국, 감독국, 감사국 3국 합동)

2회 (2012년 4월 24일, 10월 11일) 개최

(2) 간토 재무국

1회 (2012년 12월 13일) 개최

7. 임원 등의 이동

(1) 회장, 부회장의 취임

2012년 6월 12일자 취임 회장 : 이지마 이와오
부회장 : 우치다 고조, 기노시타 모리요시,
사사키 소헤이, 진나이 히로아키

(2) 공약이사의 취임 및 퇴임

- ① 2012년 6월 12일자 퇴임 가쓰베 미에코
- ② 2012년 6월 12일자 취임 우치다 고조, 가와모토 유코, 미타니 히로,
요시노 나오유키
- ③ 2012년 6월 12일자 신임 시모야치 후지코

(3) 회원 이사·회원 감사의 취임 및 퇴임

- ① 2012년 6월 12일자 퇴임 회원 이사 : 노구치 사토시
- ② 2012년 6월 12일자 취임 회원 이사 : 오이와 히데유키, 가타오카 다쓰로,
기노시타 모리요시, 구보 다케루,
사사키 소헤이
회원 감사 : 오쿠다 에이조, 야노 리헤이
- ③ 2012년 6월 12일자 신임 회원 이사 : 아마시타 하지메

(4) 상임이사·상임감사의 취임

- ① 2012년 6월 12일자 취임 상임 이사 : 이지마 이와오, 진나이 히로아키
상임 감사 : 다나카 미노루

(5) 상무이사 취임

2012년 4월 1일자 취임 기쿠이치 마모루, 고이데 마사히로

제2편

자료

제 1 장 통계자료(금융청·월차통계·공지정보·기타 통계자료 등)

금융청 대금업 관련 자료

1. 대금업체 수의 추이 등

(1) 각 연도 말 추이

< 대금업체의 장기적 추이 >

(단위 : 개)

	1999년 3월말	2000년 3월말	2001년 3월말	2002년 3월말	2003년 3월말	2004년 3월말	2005년 3월말	2006년 3월말
재무국등록	1,195	1,168	1,090	1,000	929	839	762	702
도도부현등록	29,095	28,543	27,896	26,551	25,352	22,869	17,243	13,534
합계	30,290	29,711	28,986	27,551	26,281	23,708	18,005	14,236
	2007년 3월말	2008년 3월말	2009년 3월말	2010년 3월말	2011년 3월말	2012년 3월말	2013년 3월말	
재무국등록	664	580	473	409	349	330	315	
도도부현등록	11,168	8,535	5,705	3,648	2,240	2,020	1,902	
합계	11,832	9,115	6,178	4,057	2,589	2,350	2,217	

※ 재무국과 도도부현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

(2) 재무국, 도도부현별

〈 재무국, 도도부현별 대금업체 추이 (2013년 3월말) 〉

(단위 : 개)

	2013년		2013년		2013년
간토 재무국	156	도호쿠 재무국	23	시코쿠 재무국	14
도쿄도	647	미야기현	36	가가와현	6
가나가와현	52	이와테현	9	도쿠시마현	6
사이타마현	35	후쿠시마현	4	에히메현	24
지바현	31	아키타현	15	고치현	17
야마나시현	8	아오모리현	14	소계	53
도치기현	9	야마가타현	5	시코쿠관내합계	67
이바라기현	11	소계	83	규슈 재무국	11
군마현	14	도호쿠관내 합계	106	구마모토현	21
니가타현	11	도카이 재무국	22	오이타현	8
나가노현	8	아이치현	75	미야자키현	13
소계	826	시즈오카현	40	가고시마현	17
간토관내 합계	982	미에현	20	소계	57
긴키 재무국	39	기후현	11	규슈관내합계	70
오사카부	200	소계	146	후쿠오카 재무지국	17
교토부	49	도카이관내 합계	168	후쿠오카현	107
효고현	68	호쿠리쿠 재무국	7	사가현	8
나라현	10	도야마현	15	나가사키현	25
와카야마현	13	이시카와현	11	소계	140
시가현	7	후쿠이현	10	후쿠오카관내합계	157
소계	347	소계	36	오кина와 종합사무국	3
간기관내 합계	386	호쿠리쿠관내 합계	43	오кина와현	60
홋카이도 재무국	6	쥬고쿠 재무국	17	소계	60
홋카이도	54	히로시마현	36	오кина와관내합계	63
소계	54	야마구치현	24		
홋카이도관내 합계	60	오카야마현	33	재무국 합계	315
		돗토리현	3	도도부현 합계	1,902
		시마네현	2	총합계	2,217
		소계	98		
		쥬고쿠관내 합계	115		

(주) 계수는 향후 변동될 수 있다.

2. 대출 잔액 추이

(1) 소비자 대상과 사업자 대상별 대출 잔액 (각 연도 말)

〈 대출 잔액 추이 (2002년 ~ 2012년) 〉

(단위 : 억엔)

	2002년 3월말	2003년 3월말	2004년 3월말	2005년 3월말	2006년 3월말	2007년 3월말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201,196	200,470	196,550	198,574	209,005	203,053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236,958	267,466	271,489	234,932	204,853	233,674
합계	438,154	467,937	468,040	433,506	413,858	436,727
	2008년 3월말	2009년 3월말	2010년 3월말	2011년 3월말	2012년 3월말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179,191	157,281	126,477	95,519	78,315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235,707	221,186	172,880	165,225	167,731	
합계	414,898	378,467	299,357	260,745	246,048	

(주)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2) 업태별 대출 잔액

< 대출 잔액 추이 (2002년 ~ 2012년) >

(단위 : 억엔, %)

	대출 잔액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119,341 (12.3)	120,074 (0.6)	117,169 (▲2.4)	116,720 (▲0.4)	117,403 (0.6)	108,601 (▲7.5)	89,659 (▲17.4)	72,853 (▲18.7)	53,497 (▲26.6)	36,600 (▲31.6)	30,792 (▲15.9)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2,877 (4.4)	2,187 (▲24.0)	2,288 (4.6)	1,824 (▲20.3)	1,285 (▲29.6)	2,408 (87.4)	1,653 (▲31.4)	1,933 (16.9)	1,351 (▲30.1)	1,861 (37.7)	1,460 (▲21.5)
소비자대상 주택 담보 대금업체	12,427 (▲17.5)	8,067 (▲35.1)	7,226 (▲10.4)	5,751 (▲20.4)	9,183 (59.7)	7,154 (▲22.1)	6,992 (▲2.3)	6,158 (▲11.9)	5,719 (▲7.1)	6,282 (9.8)	6,031 (▲4.0)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178,909 (▲0.6)	222,336 (24.3)	228,062 (2.6)	193,333 (▲15.2)	160,580 (▲16.9)	177,810 (10.7)	178,547 (0.4)	168,546 (▲5.6)	121,551 (▲27.9)	115,275 (▲5.2)	112,852 (▲2.1)
어음할인업체	3,697 (▲13.5)	2,702 (▲26.9)	2,679 (▲0.9)	2,385 (▲11.0)	2,206 (▲7.5)	2,348 (6.4)	1,597 (▲32.0)	961 (▲39.8)	770 (▲19.9)	615 (▲20.1)	644 (4.7)
신용카드회사	16,233 (26.0)	16,828 (3.7)	16,202 (▲3.7)	14,706 (▲9.2)	23,345 (58.7)	25,413 (8.9)	26,334 (3.6)	24,635 (▲6.5)	22,381 (▲9.1)	18,817 (▲15.9)	15,908 (▲15.5)
신용판매회사	51,917 (▲16.3)	47,702 (▲8.1)	50,870 (6.6)	53,093 (4.4)	53,504 (0.8)	57,293 (7.1)	55,509 (▲3.1)	54,434 (▲1.9)	46,746 (▲14.1)	38,532 (▲17.6)	32,923 (▲14.6)
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5,632 (▲18.2)	5,412 (▲3.9)	6,765 (25.0)	6,903 (2.0)	6,552 (▲5.1)	6,631 (1.2)	4,044 (▲39.0)	4,317 (6.8)	8,463 (96.0)	7,559 (▲10.7)	6,107 (▲19.2)
건설·부동산업자	12,085 (▲32.3)	9,248 (▲23.5)	7,313 (▲20.9)	5,507 (▲24.7)	5,432 (▲1.4)	6,010 (10.6)	5,731 (▲4.6)	4,962 (▲13.4)	3,800 (▲23.4)	2,368 (▲37.7)	2,268 (▲4.2)
전당포	988 (▲26.3)	425 (▲57.0)	437 (2.8)	240 (▲45.1)	198 (▲17.5)	251 (26.8)	141 (▲43.8)	132 (▲6.4)	113 (▲14.4)	90 (▲20.4)	63 (▲30.0)
리스회사	33,350 (▲4.8)	32,375 (▲2.9)	28,416 (▲12.2)	32,379 (13.9)	33,495 (3.4)	42,496 (26.9)	44,543 (4.8)	39,435 (▲11.5)	34,891 (▲11.5)	32,730 (▲6.2)	36,988 (13.0)
일수대금업체	694 (▲8.0)	576 (▲17.0)	607 (5.4)	660 (8.7)	672 (1.8)	307 (▲54.3)	142 (▲53.7)	95 (▲33.1)	69 (▲27.4)	2 (▲97.1)	0 (▲100.0)
비영리특례 대상법인	- (-)	- (-)	- (-)	- (-)	- (-)	- (-)	- (-)	- (-)	- (-)	7 (-)	6 (▲14.3)
합계	438,154 (▲1.6)	467,937 (6.8)	468,040 (0.0)	433,506 (▲7.4)	413,858 (▲4.5)	436,727 (5.5)	414,898 (▲5.0)	378,467 (▲8.8)	299,357 (▲27.8)	260,745 (▲12.9)	246,048 (▲5.6)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주2)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

(참고) 대금업체의 업태분류

업태	정의
①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중 무담보(주택담보 제외)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중 유담보(주택담보 제외)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소비자대상 주택 담보 대금업체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 대상 대출 잔액 중 주택담보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⑤~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⑤ 어음할인업체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이 총 대출 잔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중 어음할인잔액이 50%이상(일본사업자금융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25%이상)이고 ⑥~⑫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⑥ 신용카드회사	일본신용카드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⑦~⑫와 중복될 경우 ⑥을 우선한다)
⑦ 신용판매회사	포괄신용구입 ⁶⁾ 알선업체 또는 개별신용구입 알선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⑧~⑫와 중복될 경우에는 ⑦을 우선한다)
⑧ 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전기기계기구 관련 비영리법인과 자동차 관계의 비영리법인 등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계열사가 동 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 또는 일본백화점협회, 일본체인점협회, 일본상점연맹, 일본전문점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관계 회사가 동 협회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⑨, ⑩과 중복될 경우에는 ⑧을 우선한다)
⑨ 건설 부동산업자	건설·부동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⑩과 중복될 경우에는 ⑨를 우선한다)
⑩ 전당포	전당포 허가를 받은 업체 (⑧, ⑨, ⑩과 중복될 경우 ⑩을 우선한다)
⑪ 리스회사	사단법인 리스사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⑫ 일수대금업체	일수대금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⑧~⑩과 중복될 경우 ⑫를 우선한다)
⑬ 비영리특례대상 법인	상기의 사항에 관계없이 비영리특례 대상 법인으로 대금업 등록을 한 업체

6) 할부판매법에서 규정된 신용구입 알선의 일종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판매

(3) 재무국·도도부현별 대출 잔액 (2012년 3월말)

< 재무국·도도부현별 대출 잔액 >

(단위 : 억엔)

	업체 수	소비자대상 대출 잔액	사업자대상 대출 잔액	대출 잔액 합계
간토 재무국	156	57,752	49,056	106,808
도쿄도	526	1,606	83,710	85,318
가나가와현	49	1,018	5,282	6,301
사이타마현	30	110	129	239
지바현	28	6	58	65
아마나시현	10	4	11	16
도치기현	9	31	11	43
에바라기현	11	3	5	9
군마현	14	2	787	789
니가타현	10	3	5	9
나가노현	8	3	145	148
소계	695	2,792	90,148	92,941
간토관내합계	851	60,544	139,204	199,749
간키 재무국	41	8,628	993	9,621
오사카부	179	336	16,422	16,758
교토부	54	59	883	942
효고현	68	45	396	442
나라현	9	10	21	31
와카야마현	12	15	6	22
시가현	4	2	7	9
소계	326	469	17,736	18,207
간키관내합계	367	9,097	18,730	27,829
홋카이도 재무국	6	1,427	143	1,570
홋카이도	57	543	636	1,180
소계	57	543	636	1,180
홋카이도관내합계	63	1,971	779	2,751
도호쿠 재무국	27	234	45	279
미야기현	38	66	487	554
이와테현	10	11	2	13
후쿠시마현	4	0	1	1
아키타현	5	7	38	46
아오모리현	15	3	11	14
아마타타현	4	0	0	1
소계	86	90	542	632
도호쿠관내합계	113	324	587	912
도카이 재무국	23	3,716	202	3,919
아이치현	78	365	4,275	4,641
시즈오카현	41	70	213	284
미에현	18	17	1	18
기후현	11	4	52	57
소계	148	458	4,542	5,001
도카이관내합계	171	4,175	4,745	8,920
호쿠리쿠 재무국	7	58	21	80
도야마현	13	5	148	153
이시카와현	13	14	22	36
후쿠이현	10	6	6	12
소계	36	26	176	203
호쿠리쿠관내합계	43	85	198	283
쥬고쿠 재무국	18	373	373	746
히로시마현	40	29	493	523
야마구치현	22	19	8	28
오카야마현	33	26	16	42
돗토리현	3	2	1	4
시마네현	2	0	3	3
소계	100	78	524	603
쥬고쿠관내합계	118	451	897	1,349
시코쿠 재무국	13	200	7	207
가가와현	7	6	75	82
도쿠시마현	8	4	7	11
에히메현	25	15	25	41
고치현	19	56	68	124
소계	59	82	177	259
시코쿠관내합계	72	282	184	466
규슈 재무국	11	191	5	197
구마모토현	21	23	32	55
오이타현	6	8	9	18
미야자키현	15	32	38	70
가고시마현	16	33	55	89
소계	58	98	135	233
규슈관내합계	69	289	141	430
후쿠오카 재무국	16	823	703	1,527
후쿠오카현	101	99	1,326	1,426
사가현	8	4	42	46
나가사키현	25	17	46	64
소계	134	122	1,414	1,537
후쿠오카관내합계	150	945	2,118	3,064
오кина와 종합사무국	3	121	2	124
오кина와현	48	25	140	165
소계	48	25	140	165
오кина와관내합계	51	146	142	289
재무국 합계	321	73,527	51,555	125,083
도도부현 합계	1,747	4,788	116,175	120,965
총합계	2,068	78,315	167,731	246,048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주2) 업체 수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업체(2,296개사) 중 대출 잔액이 없는 업체(228개사)를 제외한 수이다.

3. 업체별 대출금리 (2012년 3월말)

< 업체별 대출금리 >

업체	업체 수	소비자 대상 대출					사업자 대상 대출			합계		
		잔액 (억엔)	구성비	금리 (%)	무담보 잔액 (억엔)	금리 (%)	잔액 (억엔)	구성비	금리 (%)	잔액 (억엔)	구성비	금리 (%)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559	29,732	38.0%	17.00	27,229	17.27	1,059	0.6%	10.61	30,792	12.5%	16.78
대행사	8	26,747	34.2%	17.19	24,303	17.50	899	0.5%	10.32	27,647	11.2%	16.97
대행사 이외	551	2,984	3.8%	15.30	2,925	15.35	160	0.1%	12.25	3,145	1.3%	15.14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112	1,203	1.5%	4.64	42	14.50	256	0.2%	5.38	1,460	0.6%	4.76
소비자 대상 주택 담보 대금업체	42	5,553	7.1%	3.44	24	2.51	477	0.3%	6.33	6,031	2.5%	3.67
사업자대상 대금업체	747	2,101	2.7%	5.65	483	14.08	110,750	66.0%	1.49	112,852	45.9%	1.57
어음할인업체	119	5	0.0%	11.83	3	11.49	638	0.4%	9.25	644	0.3%	9.27
신용카드회사	141	10,966	14.0%	15.10	10,725	15.42	4,942	2.9%	1.66	15,908	6.5%	10.94
신용판매회사	108	24,236	30.9%	14.02	22,562	14.87	8,686	5.2%	2.25	32,923	13.4%	10.92
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23	357	0.5%	3.44	60	11.14	5,749	3.4%	1.20	6,107	2.5%	1.33
건설·부동산업자	91	338	0.4%	7.85	8	7.03	1,930	1.2%	4.31	2,268	0.9%	4.84
전당포	29	7	0.0%	15.94	4	16.78	56	0.0%	9.18	63	0.0%	9.96
리스회사	78	3,812	4.9%	2.28	38	3.95	33,176	19.8%	2.92	36,988	15.0%	2.86
일수대금업체	5	-	-	-	-	-	0	0.0%	25.04	0	0.0%	25.04
비영리특례 대상 법인	14	1	0.0%	3.09	1	3.09	4	0.0%	2.21	6	0.0%	2.41
합계	2,068	78,315	100.0%	13.54	61,185	16.01	167,731	100.0%	1.95	246,048	100.0%	5.64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금리”는 “평균약정금리”

(주2)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금업체”에서 “대행사”란 대출 잔액 500억엔이 넘는 업체를 말한다.

(주3) 업체 수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업체(2,296개사) 중 대출 잔액이 없는 업체(228개사)를 제외한 수이다.

4. 업태별 대출건수, 1건당 평균 대출 잔액 (2012년 3월말)

〈 업태별 대출건수, 1건당 평균 대출 잔액 〉

업태	업체 수	소비자 대상 대출						사업자 대상 대출			합계	
		건수 (건)	잔액 (억원)	1건당 평균 대출 잔액 (천원)	무담보 건수 (건)	무담보 잔액 (억원)	1건당 평균 대출 잔액 (천원)	건수 (건)	잔액 (억원)	1건당 평균 대출 잔액 (천원)	건수 (건)	잔액 (억원)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559	6,245,039	29,732	463	6,341,447	27,229	429	58,097	1,059	6,483,136	6,483,136	30,792
대행사	8	5,480,996	26,747	488	5,403,206	24,303	450	44,961	899	5,525,957	5,525,957	27,647
대행사 이외	551	944,043	2,984	316	938,241	2,925	312	13,136	160	957,179	957,179	3,145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112	55,338	1,203	2,174	16,280	42	258	2,345	256	57,683	57,683	1,460
소비자 대상 주택 담보 대금업체	42	57,710	5,553	9,622	2,726	24	880	1,307	477	59,017	59,017	6,031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747	255,720	2,101	822	241,349	483	200	109,921	110,750	365,641	365,641	112,852
어음할인업체	119	495	5	1,010	443	3	677	36,536	638	37,031	37,031	644
신용카드회사	141	12,943,485	10,966	85	12,940,259	10,725	83	43,331	4,942	12,986,816	12,986,816	15,908
신용판매회사	108	19,268,478	24,236	126	19,250,644	22,562	117	100,239	8,686	19,368,717	19,368,717	32,923
유통·제조업체 계열 회사	23	27,732	357	1,287	24,891	60	241	2,616	5,749	30,348	30,348	6,107
건설·부동산업자	91	8,070	338	4,188	1,796	8	445	8,256	1,930	16,326	16,326	2,268
전당포	29	2,316	7	302	2,045	4	196	1,088	56	3,404	3,404	63
리스회사	78	43,334	3,812	8,797	14,337	38	265	19,544	33,176	62,878	62,878	36,988
일수대금업체	5	-	-	-	-	-	-	599	0	599	599	0
비영리특례 대상 법인	14	271	1	369	271	1	369	287	4	558	558	6
합계	2,068	39,087,988	78,315	200	38,836,488	61,185	158	384,166	167,731	39,472,154	39,472,154	246,048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주2) 업체 수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업체(2,296개사) 중 대출 잔액이 없는 업체(228개사)를 제외한 수이다.

(주3)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의 “대행사”란 대출 잔액이 500억원을 넘는 업체를 말한다.

(주4) “건수”는 각 업체의 건수를 단순 합계한 수치이다. 건수 계산 방법은 각 업체의 계약형태 및 채권관리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건당 평균 대출 잔액 등을 업태 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소비자대상 무담보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2012년 3월말)

(1) 대출 금리별

〈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대출 금리별) 〉

금리	해당업체 수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잔액				
		구성비 (%)	잔액 (억원)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대출 잔액(천원)
28% 초과	13	2.3	29	0.1	11,014	0.2	263
26% 초과 ~ 28% 이하	10	1.8	937	3.4	278,911	4.4	336
24% 초과 ~ 26% 이하	20	3.6	77	0.3	38,367	0.6	201
22% 초과 ~ 24% 이하	29	5.2	41	0.2	22,221	0.4	185
20% 초과 ~ 22% 이하	47	8.4	306	1.1	114,978	1.8	266
18% 초과 ~ 20% 이하	122	21.8	3,740	13.7	1,097,325	17.3	34
16% 초과 ~ 18% 이하	191	34.2	16,369	60.1	3,714,471	58.6	441
14% 초과 ~ 16% 이하	37	6.6	5,117	18.8	999,496	15.8	512
12% 초과 ~ 14% 이하	16	2.9	17	0.1	9,999	0.2	170
10% 초과 ~ 12% 이하	10	1.8	5	0.0	1,754	0.0	285
8% 초과 ~ 10% 이하	11	2.0	10	0.0	2,084	0.0	480
6% 초과 ~ 8% 이하	10	1.8	7	0.0	669	0.0	1,046
4% 초과 ~ 6% 이하	13	2.3	123	0.5	4,036	0.1	3,048
2% 초과 ~ 4% 이하	23	4.1	234	0.9	14,143	0.2	1,655
2% 이하	7	1.3	211	0.8	31,979	0.5	660
합계	559	100.0	27,229	100.0	6,341,447	100.0	429

(주)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2) 대출 잔액 규모별

<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대출 잔액 규모별) >

대출잔액 규모별	해당업체 수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 잔액					
		구성비 (%)	잔액 (억엔)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대출 잔액(천엔)
5,000억엔 초과	2	0.4	14,878	54.6	3,069,324	48.4	485
1,000억엔 초과~5,000억엔 이하	3	0.5	7,534	27.7	1,694,609	26.7	445
500억엔 초과~1,000억엔 이하	2	0.4	1,457	5.4	568,358	9.0	256
100억엔 초과~500억엔 이하	8	1.4	1,808	6.6	398,768	6.3	453
50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5	0.9	416	1.5	178,719	2.8	233
10억엔 초과~50억엔 이하	26	4.7	579	2.1	179,349	2.8	323
5억엔 초과~10억엔 이하	25	4.5	178	0.7	76,904	1.2	231
1억엔 초과~5억엔 이하	114	20.4	241	0.9	106,153	1.7	227
5,000만엔 초과~1억엔 이하	104	18.6	72	0.3	36,082	0.6	200
1,000만엔 초과~5,000만엔 이하	188	33.6	57	0.2	30,456	0.5	187
1,000만엔 이하	82	14.7	3	0.0	2,725	0.0	110
합계	559	100.0	27,229	100.0	6,341,447	100.0	429

(주)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6.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2012년 3월말)

(1) 대출 금리별

<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대출 금리별) >

금리	해당업체 수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구성비 (%)	잔액 (억엔)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대출 잔액 (백만엔)
28% 초과	6	0.8	3	0.0	330	0.3	0.9
26% 초과 ~ 28% 이하	1	0.1	0	0.0	26	0.0	0.0
24% 초과 ~ 26% 이하	1	0.1	10	0.0	26	0.0	38.5
22% 초과 ~ 24% 이하	4	0.5	66	0.1	250	0.2	26.4
20% 초과 ~ 22% 이하	10	1.3	29	0.0	516	0.5	5.6
18% 초과 ~ 20% 이하	13	1.7	20	0.0	1,305	1.2	1.5
16% 초과 ~ 18% 이하	49	6.6	33	0.0	5,618	5.3	0.6
14% 초과 ~ 16% 이하	124	16.6	409	0.4	4,796	4.5	8.5
12% 초과 ~ 14% 이하	60	8.0	1,200	1.1	43,290	40.9	2.8
10% 초과 ~ 12% 이하	44	5.9	405	0.4	12,603	11.9	3.2
8% 초과 ~ 10% 이하	41	5.5	214	0.2	643	0.6	33.3
6% 초과 ~ 8% 이하	39	5.2	1,245	1.1	3,851	3.6	32.3
4% 초과 ~ 6% 이하	69	9.2	2,436	2.2	2,457	2.3	99.1
2% 초과 ~ 4% 이하	123	16.5	7,961	7.2	5,795	5.5	137.4
2% 이하	163	21.8	96,598	87.3	24,356	23.0	396.6
합계	747	100.0	110,634	100.0	105,862	100.0	104.5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주2)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중 어음환인업체의 잔액 약 116억엔을 제외했다.

(2) 대출 잔액 규모별

〈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대출 잔액 규모별) 〉

대출 잔액 규모별	해당업체 수	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					
		구성비 (%)	잔액 (억엔)	구성비 (%)	건수 (건)	구성비 (%)	1건당 평균대출 잔액 (백만엔)
5,000억엔 초과	4	0.5	37,783	34.2	7,337	6.9	515.0
1,000억엔 초과~5,000억엔 이하	15	2.0	34,926	31.6	2,084	2.0	1675.9
500억엔 초과~1,000억엔 이하	28	3.7	19,003	17.2	33,145	31.3	57.3
100억엔 초과~500억엔 이하	49	6.6	12,469	11.3	29,267	27.6	42.6
50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41	5.5	2,880	2.6	2,331	2.2	123.6
10억엔 초과~50억엔 이하	117	15.7	2,639	2.4	15,303	14.5	17.2
5억엔 초과~10억엔 이하	58	7.8	427	0.4	2,054	1.9	20.8
1억엔 초과~5억엔 이하	164	22.0	396	0.4	8,649	8.2	4.6
5,000만엔 초과~1억엔 이하	89	11.9	65	0.1	2,702	2.6	2.4
1,000만엔 초과~5,000만엔 이하	126	16.9	39	0.0	2,707	2.6	1.4
1,000만엔 이하	56	7.5	2	0.0	283	0.3	0.7
합계	747	100.0	110,634	100.0	105,862	100.0	104.5

(주1) 대금업체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주2)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의 대출 잔액 중 어음할인업체의 잔액 약 116억엔을 제외했다.

7. 대금업체의 행정처분건수 추이

〈 대금업체의 행정처분건수 추이 〉

(단위 : 건)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010 년도	2011 년도	2012년도				
											4~6 월	7~9 월	10~ 12월	1~3 월	계
재무·국영·공공·대기업·중소기업	처분사유	업무개선 (법제24조의 6의 3)	-	-	-	0	7	1	0	1	0	0	0	0	0
		영업정지 (구, 규제법 제36조, 법 제24조의 6의 4)	5	5	14	1	3	1	0	0	0	0	0	0	0
		등록취소 (구, 규제법 제37조, 법 제24조의 6의 5)	3	0	2	1	2	0	1	0	0	0	0	0	0
		소재불명으로 인한 등록 취소(구, 규제법 제38조, 법 제24조의 6의 6)	0	0	0	0	0	0	0	0	0	0	0	0	0
		처분건수 합계	8	5	16	2	12	2	1	1	0	0	0	0	0
노조·부원·영·공공·대기업·중소기업	처분사유	업무개선 (법제24조의 6의 3)	-	-	-	0	19	18	9	4	2	1	1	0	4
		영업정지 (구, 규제법 제36조, 법 제24조의 6의 4, 법 제 24조의 6의 5)	449	604	169	81	83	45	27	16	1	5	3	1	10
		등록취소 (구, 규제법 제37조, 법 제24조의 6의 5)	504	514	322	280	194	131	56	19	0	1	2	0	3
		소재불명으로 인한 등록 취소(구, 규제법 제38조, 법 제24조의 6의 6)	651	473	154	144	151	47	6	2	0	2	0	0	2
		처분건수 합계	1,604	1,591	645	505	447	241	98	41	3	9	6	1	19
합계	처분사유	업무개선 (법제24조의 6의 3)	-	-	-	0	26	19	9	5	2	1	1	0	4
		영업정지 (구, 규제법 제36조, 법 제24조의 6의 4, 법 제 24조의 6의 5)	454	609	183	82	86	46	27	16	1	5	3	1	10
		등록취소 (구, 규제법 제37조, 법 제24조의 6의 5)	507	514	324	281	196	131	57	19	0	1	2	0	3
		소재불명으로 인한 등록 취소(구, 규제법 제38조, 법 제24조의 6의 6)	651	473	154	144	151	47	6	2	0	2	0	0	2
		처분건수 합계	1,612	1,596	661	507	459	243	99	42	3	9	6	1	19

(주) 표 중에 “구, 규제법”은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법”은 대금업법을 말한다.

8 금융청·재무국·도도부현에 접수된 대금업체 관련 민원 (민원·상담·조회) 건수

(1) 내용별

< 대금업체 관련 민원 건수 (내용별) >

(단위 : 건)

구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010 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	계	계	계	4~6월	7~9월	10~12월	1~3월	계	4~6월	7~9월	10~12월	1~3월	계
민원 접수 건수	49,635	44,928	35,461	29,843	5,611	5,609	4,755	5,520	21,495	5,050	4,530	4,135	4,014	17,729
무등록업자와 관련된 사항	14,942	14,243	8,267	7,139	1,731	1,778	1,564	1,933	7,006	1,769	1,573	1,494	1,458	6,294
추심행위	2,060	1,850	716	454	101	107	80	97	385	93	96	78	56	323
계약내용	723	622	269	183	40	67	31	40	178	31	52	28	31	142
금리	1,353	636	392	190	33	39	32	27	131	26	23	26	17	92
연금담보	60	41	29	6	0	5	1	3	9	1	1	1	0	3
정부 공개	4,004	2,393	1,684	905	146	107	83	85	421	55	67	69	30	221
과잉대부	53	24	31	12	5	1	4	5	15	1	2	1	2	6
행정당국사칭, 등록업체사칭	404	501	188	75	15	13	7	23	58	37	64	36	17	154
보증계약	127	120	77	38	7	12	5	7	31	5	5	1	0	11
광고·권유(사칭 이외)	471	254	115	66	11	8	10	4	33	14	27	3	5	49
기타	3,867	2,270	1,558	1,059	184	199	180	196	759	183	149	124	142	598
민원 계	13,122	8,711	5,059	2,988	542	558	433	487	2,020	446	486	367	300	1,599
상담·조회 내용	채무조정 등	7,635	6,139	2,781	2,238	452	463	420	444	1,779	368	364	274	1,277
금리	592	714	439	674	75	68	61	74	278	48	45	37	28	158
상당기관	1,100	950	790	593	79	78	89	87	333	72	46	61	58	237
등록확인(무등록 의심)	9,507	11,972	9,467	9,499	2,005	2,081	1,790	2,162	8,038	2,061	1,855	1,705	1,722	7,343
제도개정요청	148	87	146	115	8	7	13	30	58	5	12	8	10	35
법령 등 해석	1,738	1,387	4,449	1,913	393	344	320	354	1,411	326	300	279	281	1,186
기타	15,793	14,968	12,330	11,823	2,057	2,010	1,629	1,882	7,578	1,724	1,422	1,404	1,344	5,894
상담·조회 계	36,513	36,217	30,402	26,855	5,069	5,051	4,322	5,033	19,475	4,604	4,044	3,768	3,714	16,130

(주) 건수의 경우 그 내용이 복수이더라도 각각 계산하지 않고 주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1건으로 계산

(2) 접수기관별

< 대금업체 관련 민원 건수 (접수기관별) >

(단위 : 건)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금융청	재무국	도도부현	계	금융청	재무국	도도부현	계	금융청	재무국	도도부현	계	금융청	재무국	도도부현	계	
민원 접수 건수	3,704	14,292	17,465	35,461	4,465	10,548	14,830	29,843	1,637	7,390	12,468	21,495	1,158	5,933	10,638	17,729	
무등록업자와 관련된 사항	362	2,299	5,606	8,267	363	1,571	5,205	7,139	334	1,234	5,438	7,006	206	1,074	5,014	6,294	
민원처리 내역	추심행위	22	198	496	716	13	130	311	454	5	144	236	385	17	107	199	323
	계약내용	19	54	196	269	2	30	151	183	0	48	130	178	1	22	119	142
	금리	5	28	359	392	16	35	139	190	0	13	118	131	1	17	74	92
	연금담보	0	0	29	29	0	0	6	6	0	0	9	9	1	0	2	3
	정부 공개	15	1,182	487	1,684	7	548	350	905	3	207	211	421	2	111	108	221
	과잉대부	4	5	22	31	0	4	8	12	0	9	6	15	0	1	5	6
	행정당국사칭, 등록업체사칭	20	9	159	188	0	52	23	75	0	14	44	58	0	14	140	154
	보증계약	4	16	57	77	0	6	32	38	0	6	25	31	1	4	6	11
	광고·권유 (사칭 이외)	6	11	98	115	0	4	62	66	0	6	27	33	4	7	38	49
	기타	32	457	1,069	1,558	268	318	473	1,059	32	306	421	759	20	280	298	598
민원 계	127	1,960	2,972	5,059	306	1,127	1,555	2,988	40	753	1,227	2,020	47	563	989	1,599	
상담·조회 내용	채무조정 등	84	395	2,302	2,781	38	176	2,024	2,238	27	34	1,718	1,779	43	54	1,180	1,277
	금리	101	73	265	439	270	142	262	674	90	44	144	278	45	34	79	158
	상당기관	327	90	373	790	186	98	309	593	29	116	188	333	44	71	122	237
	등록확인 (무등록 의심)	308	3,474	5,685	9,467	211	4,031	5,257	9,499	165	2,860	5,013	8,038	129	2,470	4,744	7,343
	제도개정요청	122	13	11	146	52	20	43	115	19	36	3	58	32	2	1	35
	법령 등 해석	407	3,546	496	4,449	391	711	811	1,913	334	463	614	1,411	297	332	557	1,186
	기타	2,228	4,741	5,361	12,330	3,011	4,243	4,569	11,823	933	3,084	3,561	7,578	521	2,407	2,966	5,894
상담·조회 계	3,577	12,332	14,493	30,402	4,159	9,421	13,275	26,855	1,597	6,637	11,241	19,475	1,111	5,370	9,649	16,130	

일본대금업협회 월차통계자료

1. 개요

(1) 월차통계자료

월차통계자료로 다음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통계명칭	갱신 시기	개요
회원사 현황	(지지난달말 실적) 매월 20일~25일경	가입 회원사 수 추이 등
상당·민원·분쟁 현황	(지지난달말 실적) 매월 20일~25일경	일본대금업협회에 설치된 대금업 상당·분쟁해결센터에서 응 대한 상당·민원·분쟁건수 및 그 내용
월차실태조사	(지지난달말 실적) 매월 20일~25일경	특정 회원사의 협조 하에 작성하고 있는 대금업 시장 동향 조사

(2) 월차실태조사

월차실태조사란 특정 회원사의 협조를 받아 동향을 월별로 조사·분석한 통계자료
로 전체 회원사 대출 잔액의 80% 이상의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다.

업태	협조 회사	커버리지	대상 사업자
소비자금융업태	16개사	89.9%	·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금업체 · 소비자 대상 유담보 대금업체 · 소비자 대상 주택담보 대금업체 등
크레디트업태 등	28개사	90.4%	· 신용카드회사 · 제조업체 계열 회사 · 신용판매회사
사업자금융업태	14개사	35.1%	· 사업자 대상 대금업체 · 리스회사 · 어음할인업체 등
전체	58개사	80.3%	-

(주1) 커버리지가란 2012년 4월 기준 각 대금업체의 직전 결산연도말 대출 잔액 대비 조사에 협력한 회
원사의 대출 잔액 비율을 나타낸다.

(주2) 협조한 회원사 수는 2013년 3월말 기준 수치

2. 회원사 수

(1) 회원사 수와 가입율

〈 회원사 수와 가입율 추이 〉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12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월말 회원사 수	4,063	3,776	3,561	2,990	2,525	2,100	1,670	1,560	1,486	1,410	1,362	1,312
등록대금업체 수	10,108	9,115	7,564	6,178	4,909	4,057	2,828	2,589	2,455	2,350	2,280	2,217
협회 가입율	40.2%	41.4%	47.1%	48.4%	51.4%	51.8%	59.1%	60.3%	60.5%	60.0%	59.7%	59.2%

(2) 재무국·도도부현별 회원사 수

〈 재무국·도도부현별 회원사 수와 가입율 (2013년 3월) 〉

	회원사 수	등록업체 수	비율
간토 재무국	131	156	84.0%
도쿄도	248	647	38.3%
가나가와현	30	52	57.7%
사이타마현	19	35	54.3%
지바현	22	31	71.0%
아마나시현	8	8	100.0%
도치기현	8	9	88.9%
이바라기현	9	11	81.8%
군마현	8	14	57.1%
니가타현	5	11	45.5%
나가노현	3	8	37.5%
소계	360	826	43.6%
간토관내합계	491	982	50.0%
긴키 재무국	38	39	97.4%
오사카부	103	200	51.5%
교토부	37	49	75.5%
효고현	32	68	47.1%
나라현	7	10	70.0%
와카야마현	6	13	46.2%
시가현	6	7	85.7%
소계	191	347	55.0%
긴키관내합계	229	386	59.3%
홋카이도 재무국	5	6	83.3%
홋카이도	40	54	74.1%
소계	40	54	74.1%
홋카이도관내합계	45	60	75.0%
도호쿠 재무국	22	23	95.7%
미야기현	31	36	86.1%
이와테현	6	9	66.7%
후쿠시마현	3	4	75.0%
아키타현	12	15	80.0%
아오모리현	7	14	50.0%
아마가타현	4	5	80.0%
소계	63	83	75.9%
도호쿠관내합계	85	106	80.2%
도카이 재무국	21	22	95.5%
아이치현	39	75	52.0%
시즈오카현	33	40	82.5%
미에현	12	20	60.0%
기후현	7	11	63.6%
소계	91	146	62.3%
도카이관내합계	112	168	66.7%
호쿠리쿠 재무국	7	7	100.0%
도야마현	11	15	73.3%
이사와현	5	11	45.5%
후쿠이현	7	10	70.0%
소계	23	36	63.9%
호쿠리쿠관내합계	30	43	69.8%
쥬고쿠 재무국	17	17	100.0%
히로시마현	27	36	75.0%
아마구치현	20	24	83.3%
오카야마현	19	33	57.6%
돗토리현	3	3	100.0%
시마네현	2	2	100.0%
소계	71	98	72.4%
쥬고쿠관내합계	88	115	76.5%
시코쿠 재무국	13	14	92.9%
가가와현	5	6	83.3%
도쿠시마현	4	6	66.7%
에히메현	10	24	41.7%
고치현	13	17	76.5%
소계	32	53	60.4%
시코쿠관내합계	45	67	67.2%
규슈 재무국	11	11	100.0%
구마모토현	18	21	85.7%
오미타현	6	8	75.0%
미야자키현	5	13	38.5%
가고시마현	8	17	47.1%
소계	37	59	62.7%
규슈관내합계	48	70	68.6%
후쿠오카 재무국	15	17	88.2%
후쿠오카현	55	107	51.4%
사가현	3	8	37.5%
나가사키현	21	25	84.0%
소계	79	140	56.4%
후쿠오카관내합계	94	157	59.9%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3	3	100.0%
오키나와현	42	60	70.0%
소계	42	60	70.0%
오키나와관내합계	45	63	71.4%
재무국 합계	283	315	89.8%
도도부현 합계	1,029	1,902	54.1%
총합계	1,312	2,217	59.2%

(주1) 계수는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주2) “등록업체 수”는 금융청에서 공표한 수치이다.

< 재무국 · 도도부현별 회원사 수 추이 (2011년 ~ 2013년, 매년 3월말 기준) >

	2011년	2012년	2013년
간토 재무국	135	132	131
도쿄도	293	267	248
가나가와현	35	30	30
사이타마현	26	22	19
지바현	21	23	22
야마나시현	12	10	8
도치기현	10	8	8
이바라기현	14	11	9
군마현	12	10	8
니가타현	9	5	5
나가노현	4	3	3
소계	436	389	360
간토관내합계	571	521	491
긴키 재무국	45	40	38
오사카부	123	110	103
교토부	44	43	37
효고현	45	37	32
나라현	7	7	7
와카야마현	8	7	6
시가현	11	6	6
소계	238	210	191
긴키관내합계	283	250	229
홋카이도재무국	6	5	5
홋카이도	54	46	40
소계	54	46	40
홋카이도관내합계	60	51	45
도호쿠재무국	26	25	22
미야기현	36	33	31
이와테현	9	8	6
후쿠시마현	3	3	3
아키타현	12	12	12
아오모리현	8	7	7
야마가타현	3	3	4
소계	71	66	63
도호쿠관내합계	97	91	85
도카이 재무국	25	24	21
아이치현	48	43	39
시즈오카현	36	34	33
미에현	14	11	12
기후현	8	8	7
소계	106	96	91
도카이관내합계	131	120	112

	2011년	2012년	2013년
호쿠리쿠 재무국	7	7	7
도야마현	13	10	11
이시카와현	7	6	5
후쿠이현	9	7	7
소계	29	23	23
호쿠리쿠관내합계	36	30	30
쥬고쿠 재무국	18	18	17
히로시마현	34	32	27
아마구치현	24	22	20
오카야마현	22	20	19
돗토리현	3	3	3
시마네현	2	2	2
소계	85	79	71
쥬고쿠관내합계	103	97	88
시코쿠 재무국	16	13	13
가가와현	6	6	5
도쿠시마현	9	6	4
에히메현	14	12	10
고치현	14	14	13
소계	43	38	32
시코쿠관내합계	59	51	45
규슈 재무국	13	11	11
구마모토현	22	21	18
오이타현	9	7	6
미야자키현	5	5	5
가고시마현	12	11	8
소계	48	44	37
규슈관내합계	61	55	48
후쿠오카 재무국	16	14	15
후쿠오카현	65	57	55
사가현	6	3	3
나가사키현	23	22	21
소계	94	82	79
후쿠오카관내합계	110	96	94
오кина와 중합사무국	4	3	3
오кина와현	45	45	42
소계	45	45	42
오кина와관내합계	49	48	45
재무국 합계	311	292	283
도도부현 합계	1,249	1,118	1,029
총합계	1,560	1,410	1,312

3. 대출 잔액 · 대출건수

(1) 업태별 대출 잔액 · 대출건수 추이

< 업태별 대출 잔액과 점유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 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소비자	2011년도	3,570,615	3,522,931	3,460,782	3,538,360	3,429,108	3,347,777	3,304,731	3,265,408	3,207,797	3,171,507	3,151,016	3,113,544
	2012년도	3,094,375	3,030,224	2,993,556	2,963,928	2,926,325	2,893,247	2,869,932	2,860,972	2,828,819	2,817,634	2,807,911	2,795,057
	전년동월대비	-13.3%	-14.0%	-13.5%	-16.2%	-14.7%	-13.6%	-13.2%	-12.4%	-11.8%	-11.2%	-10.9%	-10.2%
사업자	2011년도	844,638	839,748	825,408	819,092	814,801	794,970	800,090	793,076	793,911	766,898	713,292	710,303
	2012년도	775,828	767,025	762,127	746,055	754,974	758,264	755,983	748,061	781,378	719,678	699,373	701,719
	전년동월대비	-8.1%	-8.7%	-7.7%	-8.9%	-7.3%	-4.6%	-5.5%	-5.7%	-1.6%	-6.2%	-2.0%	-1.2%
크레디트	2011년도	5,664,986	5,576,575	5,504,253	5,309,748	5,259,998	5,235,501	5,131,661	5,031,937	4,998,881	4,882,157	4,772,849	4,763,443
	2012년도	4,658,267	4,648,927	4,590,443	4,521,418	4,502,984	4,503,708	4,408,572	4,394,607	4,453,936	4,381,501	4,577,806	4,594,073
	전년동월대비	-17.8%	-16.6%	-16.6%	-14.8%	-14.4%	-14.0%	-14.1%	-12.7%	-10.9%	-10.3%	-4.1%	-3.6%
전체	2011년도	10,080,239	9,939,254	9,790,443	9,667,200	9,503,907	9,378,248	9,236,482	9,090,421	9,000,589	8,820,562	8,637,157	8,587,290
	2012년도	8,528,470	8,446,176	8,346,126	8,231,401	8,184,283	8,155,219	8,034,487	8,003,640	8,064,133	7,918,813	8,085,090	8,090,849
	전년동월대비	-15.4%	-15.0%	-14.8%	-14.9%	-13.9%	-13.0%	-13.0%	-12.0%	-10.4%	-10.2%	-6.4%	-5.8%
업태별 잔액비율	2011년도	소비자금융업체	35.4%	35.4%	35.3%	36.6%	36.1%	35.7%	35.8%	35.9%	35.6%	36.0%	36.3%
		사업자금융업체	8.4%	8.4%	8.4%	8.5%	8.6%	8.5%	8.7%	8.7%	8.8%	8.7%	8.3%
		크레디트업체 등	56.2%	56.1%	56.2%	54.9%	55.3%	55.8%	55.6%	55.4%	55.5%	55.3%	5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2년도	소비자금융업체	36.3%	35.9%	35.9%	36.0%	35.8%	35.5%	35.7%	35.7%	35.1%	35.6%	34.7%
		사업자금융업체	9.1%	9.1%	9.1%	9.1%	9.2%	9.3%	9.4%	9.3%	9.7%	9.1%	8.7%
		크레디트업체 등	54.6%	55.0%	55.0%	54.9%	55.0%	55.2%	54.9%	54.9%	55.2%	55.3%	56.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업태별 대출 건수 추이 >

(단위 : 건)

조사 대상 회원사 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금융업	신용조사	2011년도	6,278,806	6,213,388	6,113,609	6,259,761	6,174,759	6,079,625	5,986,154	5,918,806	5,810,195	5,736,073	5,696,909	5,623,794
	전년동월대비	2012년도	5,567,008	5,431,651	5,376,708	5,290,744	5,233,840	5,181,790	5,120,150	5,086,821	5,020,966	4,975,853	4,934,989	4,906,457
			-11.3%	-12.6%	-12.1%	-15.5%	-15.2%	-14.8%	-14.5%	-14.1%	-13.6%	-13.3%	-13.4%	-12.8%
제조업	크레디트	2011년도	356,382	346,350	319,695	311,296	301,454	290,526	283,879	259,040	252,044	232,105	225,368	217,738
	전년동월대비	2012년도	226,950	222,686	218,527	213,899	209,375	206,461	202,948	188,961	187,038	170,113	162,860	157,719
			-36.3%	-35.7%	-31.6%	-31.3%	-30.5%	-28.9%	-28.5%	-27.1%	-25.8%	-26.7%	-27.7%	-27.6%
비 제조업	크레디트	2011년도	102,568,540	102,285,766	102,179,130	102,501,958	101,778,627	101,332,609	101,094,997	100,874,533	99,980,916	99,757,466	99,380,681	99,218,218
	전년동월대비	2012년도	98,003,611	97,627,201	97,564,383	97,184,721	96,948,045	96,990,848	96,278,065	96,402,839	95,715,461	95,599,466	96,209,638	95,749,567
			-4.4%	-4.6%	-4.5%	-5.2%	-4.7%	-4.3%	-4.8%	-4.4%	-4.3%	-4.2%	-3.2%	-3.5%
전체	전체	2011년도	109,203,728	108,845,514	108,612,434	109,073,015	108,254,840	107,702,760	107,365,030	107,052,379	106,043,155	105,725,844	105,302,958	105,059,750
		2012년도	103,827,569	103,281,538	103,159,618	102,689,260	102,391,260	102,379,099	101,601,163	101,678,621	100,923,465	100,745,432	101,307,487	100,813,743
			-4.9%	-5.1%	-5.0%	-5.4%	-5.4%	-4.9%	-5.4%	-5.0%	-4.8%	-4.7%	-3.8%	-4.0%
		전년동월대비												

(주) 크레디트업태 등의 대출건수에는 현금서비스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2) 소비자 대상 대출

< 업태별 대출 잔액 추이 >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금융업	소비자	2011년도	3,471,040	3,421,779	3,359,164	3,370,988	3,318,186	3,239,110	3,196,153	3,158,689	3,103,374	3,066,731	3,046,206	3,009,817
	전년동월대비	2012년도	2,992,260	2,928,384	2,893,220	2,865,466	2,835,687	2,807,264	2,785,177	2,775,251	2,744,202	2,733,075	2,720,665	2,704,550
			-13.8%	-14.4%	-13.9%	-15.0%	-14.5%	-13.3%	-12.9%	-12.1%	-11.6%	-10.9%	-10.7%	-10.1%
제조업	소비자	2011년도	223,298	220,476	207,910	205,668	203,233	200,818	199,100	192,899	190,775	189,336	188,055	187,413
	전년동월대비	2012년도	187,154	186,406	185,457	185,276	184,201	183,961	183,130	177,431	177,638	174,570	173,858	174,387
			-16.2%	-15.5%	-10.8%	-9.9%	-9.4%	-8.4%	-8.0%	-8.0%	-6.9%	-7.8%	-7.5%	-7.0%
비제조업	크레디트	2011년도	4,124,732	4,052,635	3,974,361	3,800,418	3,752,591	3,692,265	3,640,120	3,562,038	3,472,533	3,398,373	3,338,726	3,264,305
	전년동월대비	2012년도	3,201,967	3,180,366	3,120,905	3,045,976	3,012,013	2,987,946	2,952,458	2,936,931	2,856,587	2,818,288	2,922,858	2,878,106
			-22.4%	-21.5%	-21.5%	-19.9%	-19.7%	-19.1%	-18.9%	-17.5%	-17.7%	-17.1%	-12.5%	-11.8%
전체	전체	2011년도	7,819,070	7,694,890	7,541,435	7,377,074	7,274,010	7,132,193	7,035,373	6,913,626	6,766,682	6,654,440	6,572,987	6,461,535
		2012년도	6,381,381	6,295,156	6,199,582	6,096,718	6,031,901	5,979,171	5,920,765	5,889,613	5,778,427	5,725,933	5,817,381	5,757,043
			-18.4%	-18.2%	-17.8%	-17.4%	-17.1%	-16.2%	-15.8%	-14.8%	-14.6%	-14.0%	-11.5%	-10.9%

< 업태별 대출 건수 추이 >

(단위 : 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제조업	신규조사	2011년도	6,251,616	6,186,354	6,085,770	6,224,975	6,140,092	6,045,127	5,952,719	5,885,429	5,777,845	5,703,636	5,664,447	5,594,963
	전년동월대비	2012년도	5,537,581	5,402,265	5,348,383	5,262,420	5,205,613	5,153,633	5,093,023	5,059,820	4,994,212	4,949,193	4,908,424	4,878,729
			-11.4%	-12.7%	-12.1%	-15.5%	-15.2%	-14.7%	-14.4%	-14.0%	-13.6%	-13.2%	-13.3%	-12.8%
제조업	신규조사	2011년도	266,584	256,645	229,987	221,587	211,683	200,713	193,828	169,012	161,992	156,548	149,858	144,452
	전년동월대비	2012년도	140,097	135,771	131,585	127,896	122,323	119,381	115,787	101,780	99,730	96,216	88,158	85,658
			-47.4%	-47.1%	-42.8%	-42.3%	-42.2%	-40.3%	-40.3%	-39.8%	-38.4%	-38.5%	-41.2%	-40.7%
비제조업	신규조사	2011년도	102,385,638	102,103,506	101,997,407	102,328,062	101,598,191	101,154,559	100,924,989	100,706,916	99,813,497	99,590,220	99,241,853	99,079,801
	전년동월대비	2012년도	97,896,390	97,489,890	97,427,279	97,049,645	96,813,525	96,856,608	96,139,140	96,263,272	95,576,591	95,400,278	96,070,379	95,609,691
			-4.4%	-4.5%	-4.5%	-5.2%	-4.7%	-4.2%	-4.7%	-4.4%	-4.2%	-4.1%	-3.2%	-3.5%
전체	신규조사	2011년도	108,903,838	108,546,505	108,313,164	108,774,624	107,949,966	107,400,399	107,071,536	106,761,357	105,753,334	105,405,404	105,056,158	104,818,616
	전년동월대비	2012년도	103,574,068	103,027,926	102,907,247	102,439,961	102,141,461	102,129,622	101,347,950	101,424,872	100,670,533	100,505,687	101,066,961	100,574,078
			-4.9%	-5.1%	-5.0%	-5.8%	-5.4%	-4.9%	-5.3%	-5.0%	-4.8%	-4.7%	-3.8%	-4.0%

(주) 크레디트업태 등의 대출건수에는 현금서비스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 대출종류별 대출 잔액, 대출건수의 추이 >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금융업 (은행, 저축은행, 보험업, 증권업, 기타금융업)	대중금융업 (은행, 저축은행, 보험업, 증권업, 기타금융업)	2011년도	6,623,552	6,504,651	6,361,061	6,198,767	6,102,098	5,973,281	5,883,266	5,766,166	5,623,049	5,523,453	5,446,000	5,347,438
		2012년도	5,282,108	5,200,941	5,112,679	5,011,334	4,947,816	4,900,688	4,852,619	4,824,132	4,714,456	4,666,313	4,759,970	4,711,072
		전년동월대비	-20.3%	-20.0%	-19.6%	-19.2%	-18.9%	-18.0%	-17.5%	-16.3%	-16.2%	-15.5%	-12.6%	-11.9%
	비대중금융업 (신용카드업, 보험업, 증권업, 기타금융업)	2011년도	344,515	339,687	332,176	333,128	327,899	323,091	316,212	311,899	307,459	301,838	298,328	291,047
		2012년도	285,027	280,290	276,681	271,809	268,196	265,079	260,609	257,190	253,940	249,359	248,313	244,103
		전년동월대비	-17.3%	-17.5%	-16.7%	-18.4%	-18.2%	-18.0%	-17.6%	-17.5%	-17.4%	-17.4%	-16.8%	-16.1%
	제조업	2011년도	851,003	850,552	848,197	845,178	844,013	835,821	835,895	835,560	836,173	829,149	828,659	823,050
		2012년도	814,246	813,925	810,222	813,574	815,888	813,403	807,537	808,291	810,032	810,261	809,097	801,867
		전년동월대비	-4.3%	-4.3%	-4.5%	-3.7%	-3.3%	-2.7%	-3.4%	-3.3%	-3.1%	-2.3%	-2.4%	-2.6%
제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제조업)	대중금융업 (은행, 저축은행, 보험업, 증권업, 기타금융업)	2011년도	108,751,146	108,394,359	108,162,773	108,624,793	107,800,698	107,253,836	106,925,629	106,616,766	106,693,342	105,308,220	104,914,316	104,681,121
		2012년도	103,437,749	102,892,683	102,772,346	102,305,429	102,006,771	101,995,028	101,215,913	101,292,379	100,536,116	100,374,055	100,396,383	100,445,574
		전년동월대비	-4.9%	-5.1%	-5.0%	-5.8%	-5.4%	-4.9%	-5.3%	-5.0%	-4.8%	-4.7%	-3.8%	-4.0%
	비대중금융업 (신용카드업, 보험업, 증권업, 기타금융업)	2011년도	82,020	81,474	79,886	79,209	78,618	77,055	76,492	75,041	74,493	72,964	72,633	69,146
		2012년도	68,715	67,274	66,844	65,445	64,996	64,622	63,173	62,817	61,385	60,947	59,680	59,177
		전년동월대비	-16.2%	-17.4%	-16.3%	-17.4%	-17.3%	-16.1%	-17.4%	-16.3%	-17.6%	-16.5%	-17.8%	-14.4%
	제조업	2011년도	70,670	70,672	70,505	70,621	70,650	69,508	69,415	69,550	69,499	69,219	69,209	68,349
		2012년도	67,604	67,969	68,056	69,087	69,693	69,972	68,864	69,675	69,631	70,684	70,897	69,327
		전년동월대비	-4.3%	-3.8%	-3.5%	-2.2%	-1.4%	0.7%	-0.8%	0.2%	0.2%	2.1%	2.4%	1.4%

(3) 사업자 대상 대출

< 업태별 대출 잔액 추이 >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소기업 [1000명]	2011년도	99,574	101,152	101,618	167,371	110,922	108,666	108,578	106,719	104,423	104,776	104,810	103,726
	2012년도	102,114	101,840	100,335	98,461	90,638	85,982	84,754	85,720	84,617	84,558	87,246	90,507
	전년동월대비	2.6%	0.7%	-1.3%	-41.2%	-18.3%	-20.9%	-21.9%	-19.7%	-19.0%	-19.3%	-16.8%	-12.7%
	전년동월대비	2.6%	0.7%	-1.3%	-41.2%	-18.3%	-20.9%	-21.9%	-19.7%	-19.0%	-19.3%	-16.8%	-12.7%
중기업 [1000명]	2011년도	621,340	619,271	617,497	613,424	611,567	594,152	600,989	600,177	603,136	577,561	525,237	522,890
	2012년도	588,673	580,619	576,670	560,779	570,773	574,302	572,852	570,630	603,739	545,108	525,514	527,331
	전년동월대비	-5.3%	-6.2%	-6.6%	-8.6%	-6.7%	-3.3%	-4.7%	-4.9%	0.1%	-5.6%	0.1%	0.8%
	전년동월대비	-5.3%	-6.2%	-6.6%	-8.6%	-6.7%	-3.3%	-4.7%	-4.9%	0.1%	-5.6%	0.1%	0.8%
대기업 [100명]	2011년도	1,540,254	1,523,939	1,529,892	1,509,330	1,507,407	1,543,236	1,491,540	1,469,899	1,526,347	1,483,783	1,434,122	1,499,137
	2012년도	1,456,299	1,468,560	1,469,537	1,475,442	1,490,970	1,515,762	1,456,113	1,457,676	1,597,348	1,563,212	1,654,948	1,715,966
	전년동월대비	-5.5%	-3.6%	-3.9%	-2.2%	-1.1%	-1.8%	-2.4%	-0.8%	4.7%	5.4%	15.4%	14.3%
	전년동월대비	-5.5%	-3.6%	-3.9%	-2.2%	-1.1%	-1.8%	-2.4%	-0.8%	4.7%	5.4%	15.4%	14.3%
전체	2011년도	2,261,168	2,244,362	2,249,007	2,290,125	2,229,896	2,246,054	2,201,107	2,176,795	2,233,906	2,166,120	2,064,169	2,125,753
	2012년도	2,147,086	2,151,019	2,146,542	2,134,682	2,152,381	2,176,046	2,113,719	2,114,026	2,285,704	2,192,878	2,267,708	2,333,804
	전년동월대비	-5.0%	-4.2%	-4.6%	-6.8%	-3.5%	-3.1%	-4.0%	-2.9%	2.3%	1.2%	9.9%	9.8%
	전년동월대비	-5.0%	-4.2%	-4.6%	-6.8%	-3.5%	-3.1%	-4.0%	-2.9%	2.3%	1.2%	9.9%	9.8%

< 업태별 대출 건수 추이 >

(단위 : 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소기업 [1000명]	2011년도	27,190	27,044	27,839	34,786	34,667	34,498	33,435	33,377	32,350	32,437	32,462	29,431
	2012년도	29,427	29,386	28,325	28,324	28,227	28,157	27,127	27,001	26,754	26,660	26,565	27,728
	전년동월대비	8.2%	8.7%	1.7%	-18.6%	-18.6%	-18.4%	-18.9%	-19.1%	-17.3%	-17.8%	-18.2%	-5.8%
	전년동월대비	8.2%	8.7%	1.7%	-18.6%	-18.6%	-18.4%	-18.9%	-19.1%	-17.3%	-17.8%	-18.2%	-5.8%
중기업 [1000명]	2011년도	89,798	89,705	89,708	89,709	89,771	89,813	90,051	90,028	90,052	75,557	75,510	73,286
	2012년도	86,853	86,915	86,942	86,003	87,052	87,080	87,161	87,181	87,308	73,897	74,702	72,061
	전년동월대비	-3.3%	-3.1%	-3.1%	-4.1%	-3.0%	-3.0%	-3.2%	-3.2%	-3.0%	-2.2%	-1.1%	-1.7%
	전년동월대비	-3.3%	-3.1%	-3.1%	-4.1%	-3.0%	-3.0%	-3.2%	-3.2%	-3.0%	-2.2%	-1.1%	-1.7%
대기업 [100명]	2011년도	182,902	182,259	181,722	173,896	180,436	178,049	170,007	167,617	167,419	167,446	138,828	138,416
	2012년도	137,221	137,311	137,103	135,075	134,520	134,240	138,925	139,567	138,870	139,187	139,259	139,875
	전년동월대비	-25.0%	-24.7%	-24.6%	-22.3%	-25.4%	-24.6%	-18.3%	-16.7%	-17.1%	-16.9%	0.3%	1.1%
	전년동월대비	-25.0%	-24.7%	-24.6%	-22.3%	-25.4%	-24.6%	-18.3%	-16.7%	-17.1%	-16.9%	0.3%	1.1%
전체	2011년도	299,890	299,008	299,269	298,391	304,874	302,360	293,493	291,022	289,821	275,440	246,800	241,133
	2012년도	253,501	253,612	252,370	249,402	249,799	249,477	253,213	253,749	252,932	239,744	240,526	239,664
	전년동월대비	-15.5%	-15.2%	-15.7%	-16.4%	-18.1%	-17.5%	-13.7%	-12.8%	-12.7%	-13.0%	-2.5%	-0.6%
	전년동월대비	-15.5%	-15.2%	-15.7%	-16.4%	-18.1%	-17.5%	-13.7%	-12.8%	-12.7%	-13.0%	-2.5%	-0.6%

(주) 크레디트업대 등의 대출건수는 현금서비스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 대출종류별 대출 잔액, 대출건수의 추이 >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주) 크레디트업대 (인) 크레디트업대	2011년도	298,001	294,807	304,518	363,934	300,718	290,487	297,595	300,449	292,485	268,669	234,743	220,351
	2012년도	247,737	247,899	243,983	201,805	246,177	226,681	228,137	224,705	257,721	205,606	205,401	204,694
	전년동월대비	-16.9%	-15.9%	-19.9%	-44.5%	-18.1%	-22.0%	-23.3%	-25.2%	-11.9%	-23.5%	-12.5%	-7.1%
	2011년도	650,743	649,839	639,866	637,585	643,335	630,633	628,922	611,220	620,796	618,551	564,530	576,821
	2012년도	615,184	612,574	608,667	640,371	595,983	598,537	596,586	595,277	595,262	590,436	573,034	581,349
	전년동월대비	-5.5%	-5.7%	-4.9%	0.4%	-7.4%	-5.1%	-4.4%	-2.6%	-4.1%	-4.5%	1.5%	0.8%
	2011년도	1,312,425	1,299,715	1,304,623	1,288,606	1,285,843	1,324,934	1,279,591	1,265,126	1,320,645	1,278,900	1,264,896	1,328,581
	2012년도	1,284,165	1,290,544	1,293,892	1,292,506	1,310,222	1,350,829	1,288,998	1,294,044	1,432,721	1,396,836	1,489,273	1,547,761
	전년동월대비	-2.2%	-0.7%	-0.8%	0.3%	1.9%	2.0%	0.7%	2.3%	8.5%	9.2%	17.7%	16.5%
	2011년도	275,056	274,559	275,305	274,854	281,756	279,721	271,095	268,834	268,309	254,169	225,786	220,636
	2012년도	233,646	233,974	233,084	200,069	231,264	231,180	235,345	235,574	235,436	222,464	223,306	222,809
	전년동월대비	-15.1%	-14.8%	-15.3%	-27.0%	-17.9%	-17.4%	-13.2%	-12.4%	-12.3%	-12.5%	-1.1%	1.0%
(주) 크레디트업대 (인) 크레디트업대	2011년도	10,893	11,094	11,125	11,162	11,146	11,034	11,218	11,389	11,075	11,219	11,306	11,226
	2012년도	11,022	11,080	11,127	40,910	11,028	11,046	10,940	11,508	11,089	11,132	11,301	11,281
	전년동월대비	1.2%	-0.1%	0.0%	266.5%	-1.1%	0.1%	-2.5%	1.0%	0.1%	-0.8%	0.0%	0.5%
	2011년도	13,940	13,354	12,839	12,375	11,972	11,605	11,180	10,799	10,437	10,052	9,708	9,271
	2012년도	8,833	8,558	8,159	7,823	7,507	7,250	6,928	6,667	6,407	6,148	5,918	5,574
	전년동월대비	-36.6%	-35.9%	-36.5%	-36.8%	-37.3%	-37.5%	-38.0%	-38.3%	-38.6%	-38.8%	-39.0%	-39.9%

(주1) “기타 영업대부”란 대금업법상 “대부” 중 관계회사 간 대출과 같이 다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주2) “대출건수”에는 크레디트업대 등의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4. 월간대출금액 · 계약건수

(1) 소비자 대상 대출

< 업태별 월간대출금액 추이 >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소비자 금융 업태	2011년도	89,806	97,488	97,629	97,095	103,524	117,620	111,624	107,231	107,263	93,498	107,970	148,921
	2012년도	113,141	117,145	114,824	114,977	125,176	142,667	138,186	139,987	139,998	119,834	127,022	157,974
	전년동월대비	26.0%	20.2%	17.6%	18.4%	20.9%	21.3%	23.8%	30.5%	30.5%	28.2%	17.6%	6.1%
기업 금융 업태	2011년도	1,404	1,489	1,807	1,709	1,995	2,390	2,132	2,211	2,388	1,859	2,189	2,247
	2012년도	2,047	2,256	2,520	2,449	2,037	2,280	2,738	2,917	3,114	2,195	2,445	3,120
	전년동월대비	45.8%	51.5%	39.5%	43.3%	2.1%	-4.6%	28.4%	31.9%	30.4%	18.1%	11.7%	38.9%
기업 비 금융 업태	2011년도	150,856	166,153	150,254	142,471	156,452	168,862	160,671	166,890	138,392	142,034	147,020	164,280
	2012년도	149,923	172,849	149,304	143,886	153,680	166,192	162,041	169,492	142,159	146,810	156,096	173,609
	전년동월대비	-0.6%	4.0%	-0.6%	1.0%	-1.8%	-1.6%	0.9%	1.6%	2.7%	3.4%	6.2%	5.7%
전 체	2011년도	242,066	265,130	249,690	241,275	261,971	288,872	274,427	276,332	248,043	237,391	257,179	315,448
	2012년도	265,111	292,250	266,648	261,312	280,893	311,139	302,965	312,396	285,271	268,839	285,563	334,703
	전년동월대비	9.5%	10.2%	6.8%	8.3%	7.2%	7.7%	10.4%	13.1%	15.0%	13.2%	11.0%	6.1%

< 업태별 월간 계약건수 추이 >

(단위 : 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소비자 금융 업태	2011년도	47,977	55,641	46,424	43,962	49,364	53,095	41,333	41,796	34,475	39,703	43,180	51,173
	2012년도	45,255	52,774	43,055	43,027	48,968	52,985	52,898	52,622	44,924	50,542	54,250	65,811
	전년동월대비	-5.7%	-5.2%	-7.3%	-2.1%	-0.8%	-0.2%	28.0%	25.9%	30.3%	27.3%	25.6%	28.6%
기업 금융 업태	2011년도	163	146	162	143	229	200	199	175	192	155	217	194
	2012년도	449	1,158	876	773	659	619	671	989	894	789	250	270
	전년동월대비	175.5%	693.2%	440.7%	440.6%	187.8%	209.5%	237.2%	465.1%	365.6%	409.0%	15.2%	39.2%
기업 비 금융 업태	2011년도	709,221	751,465	723,415	709,701	689,665	687,215	705,582	736,901	740,433	727,728	715,228	835,577
	2012년도	802,328	816,120	777,448	778,174	750,521	762,847	817,447	754,878	858,399	829,072	834,532	980,734
	전년동월대비	13.1%	8.6%	7.5%	9.6%	8.8%	11.0%	15.9%	2.4%	15.9%	13.9%	16.7%	17.4%
전 체	2011년도	757,361	807,252	770,001	753,806	739,258	740,510	747,114	778,872	775,100	767,586	758,625	886,944
	2012년도	848,032	870,052	821,379	821,974	800,148	816,451	871,016	808,489	904,217	880,403	889,032	1,046,815
	전년동월대비	12.0%	7.8%	6.7%	9.0%	8.2%	10.3%	16.6%	3.8%	16.7%	14.7%	17.2%	18.0%

(주) 크레디트업체 등의 계약건수에는 현금서비스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 승인율 추이 >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2011년도	32.1%	32.3%	33.1%	32.2%	32.4%	32.2%	32.8%	33.1%	32.5%	32.5%	33.4%	33.5%
2012년도	33.8%	34.8%	35.8%	34.6%	36.1%	36.1%	35.3%	36.3%	36.3%	34.2%	35.1%	35.7%
전년동월대비	1.7%	2.4%	2.7%	2.3%	3.7%	3.8%	2.5%	3.2%	3.8%	1.6%	1.7%	2.3%

(주) 승인율은 소비자금융업태의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승인율(당월 계약 수/당월 신청 수)

(2) 사업자 대상 대출

< 업태별 월간대출금액 추이 >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소비 자 금융 업태	2011년도	4,693	6,938	7,370	7,162	4,157	7,249	6,519	6,385	8,284	6,061	6,585	11,277
	2012년도	5,304	7,701	7,105	5,335	8,255	8,042	7,447	8,902	9,531	6,720	6,711	13,409
	전년동월대비	13.0%	11.0%	-3.6%	-25.5%	98.6%	10.9%	14.2%	39.4%	15.1%	10.9%	1.9%	18.9%
사업 자 금융 업태	2011년도	30,059	25,822	23,889	21,200	23,123	19,219	16,355	19,953	31,250	22,243	23,688	47,868
	2012년도	33,922	39,359	22,177	24,035	26,313	30,370	26,379	36,162	23,572	18,322	19,877	41,324
	전년동월대비	12.9%	52.4%	-7.2%	13.4%	13.8%	58.0%	61.3%	81.2%	-24.6%	-17.6%	-16.1%	-13.7%
크레 디트 업체 등	2011년도	178,231	178,062	233,601	196,612	175,071	259,726	198,075	178,652	275,861	197,217	185,435	198,363
	2012년도	169,723	193,149	203,542	194,317	239,998	448,662	552,925	194,421	540,243	548,515	234,589	244,571
	전년동월대비	-4.8%	8.5%	-12.9%	-1.2%	37.1%	72.7%	179.1%	8.8%	95.8%	178.1%	26.5%	23.3%
전체	2011년도	212,983	210,822	264,860	224,974	202,351	286,194	220,949	204,990	315,395	225,521	215,708	257,508
	2012년도	208,949	240,209	232,824	223,687	274,566	487,074	586,751	239,485	573,346	573,557	261,177	299,304
	전년동월대비	-1.9%	13.9%	-12.1%	-0.6%	35.7%	70.2%	165.6%	16.8%	81.8%	154.3%	21.1%	16.2%

< 업태별 월간 계약건수 추이 >

(단위 : 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소비 자 금융 업태	2011년도	185	226	239	259	219	253	281	268	292	241	284	291
	2012년도	255	264	294	315	317	337	286	323	312	296	309	376
	전년동월대비	37.8%	16.8%	23.0%	21.6%	44.7%	33.2%	1.8%	20.5%	6.8%	22.8%	8.8%	29.2%
사업 자 금융 업태	2011년도	1,161	1,126	1,310	1,207	1,209	1,177	1,097	1,119	1,376	922	1,111	1,095
	2012년도	1,078	1,146	1,102	1,277	1,217	1,126	1,174	1,055	1,237	973	1,122	1,171
	전년동월대비	-7.1%	1.8%	-15.9%	5.8%	0.7%	-4.3%	7.0%	-5.7%	-10.1%	5.5%	1.0%	6.9%
크레 디트 업체 등	2011년도	747	865	949	1,057	845	1,025	940	871	1,137	653	1,034	1,090
	2012년도	979	965	911	1,042	983	992	953	1,041	1,272	839	1,002	1,268
	전년동월대비	31.1%	11.6%	-4.0%	-1.4%	16.3%	-3.2%	1.4%	19.5%	11.9%	28.5%	-3.1%	16.3%
전체	2011년도	2,093	2,217	2,498	2,523	2,273	2,455	2,318	2,258	2,805	1,816	2,429	2,476
	2012년도	2,312	2,375	2,307	2,634	2,517	2,455	2,413	2,419	2,821	2,108	2,433	2,815
	전년동월대비	10.5%	7.1%	-7.6%	4.4%	10.7%	0.0%	4.1%	7.1%	0.6%	16.1%	0.2%	13.7%

(주) 크레디트업체 등의 계약건수에는 현금서비스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론카드의 발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5. 평균약정금리

< 대출종류별 평균 약정 금리의 장기적 추이 >

2010년도 (참고)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무담보대출 (주택담보제외)	18.14%	18.05%	17.70%	17.63%	17.59%	17.31%	17.00%	16.93%	16.86%	16.76%	16.70%	16.66%
유담보대출 (주택담보제외)	11.68%	11.62%	12.42%	12.39%	12.38%	12.38%	9.58%	9.56%	9.53%	9.53%	9.53%	9.48%
주택담보대출	2.90%	2.90%	2.89%	2.88%	2.89%	2.88%	2.89%	2.88%	2.85%	2.84%	2.86%	2.85%
전체	16.98%	16.88%	16.62%	16.52%	16.47%	16.13%	15.73%	15.64%	15.54%	15.28%	15.34%	15.31%

2011년도 (참고)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무담보대출 (주택담보제외)	16.53%	16.47%	16.43%	16.33%	16.25%	16.28%	16.22%	16.16%	16.14%	16.06%	16.04%	15.16%
유담보대출 (주택담보제외)	9.44%	9.45%	9.44%	9.36%	9.45%	9.45%	9.35%	9.30%	9.28%	9.29%	9.25%	7.04%
주택담보대출	2.86%	2.87%	2.89%	2.89%	2.89%	2.89%	2.89%	2.89%	2.88%	2.88%	2.87%	2.86%
전체	15.20%	15.13%	15.08%	14.94%	14.86%	14.87%	14.79%	14.71%	14.65%	14.57%	14.52%	13.65%

2012년도 (참고)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무담보대출 (주택담보제외)	15.92%	15.86%	15.87%	15.81%	15.78%	15.80%	15.77%	15.75%	15.75%	15.70%	15.72%	15.68%
유담보대출 (주택담보제외)	9.19%	9.20%	9.13%	9.10%	9.10%	8.99%	9.07%	8.94%	8.96%	8.94%	8.80%	8.79%
주택담보대출	2.87%	2.87%	2.87%	2.87%	2.87%	2.87%	2.88%	2.89%	2.89%	2.90%	2.89%	2.89%
전체	14.40%	14.32%	14.31%	14.23%	14.18%	14.18%	14.16%	14.13%	14.10%	14.03%	14.08%	14.04%

6. 점포수

< 업태별 점포수 추이 >

(단위 : 개)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신규가입점포	무담보대출	2011년도	164	165	165	165	164	162	162	162	162	162	160
		2012년도	164	160	153	155	156	154	151	150	150	149	149
		전년동월대비	0.0%	-3.0%	-7.3%	-6.1%	-4.9%	-4.9%	-6.8%	-7.4%	-7.4%	-8.0%	-8.0%
	유담보대출	2011년도	4,376	4,332	4,283	4,177	4,133	4,100	4,098	4,105	4,079	4,072	4,030
		2012년도	4,020	4,019	4,022	3,990	3,972	3,950	3,929	3,804	3,803	3,820	3,815
		전년동월대비	-8.1%	-7.2%	-6.1%	-4.5%	-3.9%	-3.7%	-4.1%	-7.3%	-6.8%	6.2%	-5.3%
	합계	2011년도	4,540	4,497	4,448	4,342	4,297	4,262	4,260	4,267	4,241	4,234	4,192
		2012년도	4,184	4,179	4,175	4,145	4,128	4,104	4,080	3,954	3,953	3,969	3,964
		전년동월대비	-7.8%	-7.1%	-6.1%	-4.5%	-3.9%	-3.7%	-4.2%	-7.3%	-6.8%	-6.3%	-5.4%
	사회가입점포	무담보대출	2011년도	126	126	126	130	130	130	128	128	128	128
2012년도			127	127	125	127	127	124	124	124	125	124	123
전년동월대비			0.8%	0.8%	-0.8%	-2.3%	-2.3%	-4.6%	-3.1%	-3.1%	-2.3%	-3.1%	-2.4%
유담보대출		2011년도	0	0	0	0	0	0	0	0	0	0	0
		2012년도	0	0	0	0	0	0	0	0	0	0	0
		전년동월대비	-	-	-	-	-	-	-	-	-	-	-
합계		2011년도	126	126	126	130	130	130	128	128	128	128	126
		2012년도	127	127	125	127	127	124	124	124	125	124	123
		전년동월대비	0.8%	0.8%	-0.8%	-2.3%	-2.3%	-4.6%	-3.1%	-3.1%	-2.3%	-3.1%	-2.4%
기타점포(합계 30)		무담보대출	2011년도	812	761	636	767	765	753	742	745	745	741
	2012년도		716	716	759	756	762	741	742	744	741	742	741
	전년동월대비		-11.8%	-5.9%	19.3%	-1.4%	-0.4%	-1.6%	0.0%	-0.1%	-0.5%	0.1%	0.3%
	유담보대출	2011년도	376	271	271	271	271	244	269	269	269	270	274
		2012년도	399	299	300	304	303	304	305	307	310	310	309
		전년동월대비	6.1%	10.3%	10.7%	12.2%	11.8%	24.6%	13.4%	14.1%	15.2%	14.8%	5.8%
	합계	2011년도	1,188	1,032	907	1,038	1,036	997	1,011	1,014	1,014	1,011	1,013
		2012년도	1,115	1,015	1,059	1,060	1,065	1,045	1,047	1,051	1,051	1,052	1,050
		전년동월대비	-6.1%	-1.6%	16.8%	2.1%	2.8%	4.8%	3.6%	3.6%	3.6%	4.1%	3.7%
	전체	무담보대출	2011년도	1,102	1,052	927	1,062	1,059	1,045	1,032	1,035	1,035	1,031
2012년도			1,007	1,003	1,037	1,038	1,045	1,019	1,017	1,018	1,016	1,015	1,013
전년동월대비			-8.6%	-4.7%	11.9%	-2.3%	-1.3%	-2.5%	-1.5%	-1.6%	-1.8%	-1.6%	-1.4%
유담보대출		2011년도	4,752	4,603	4,554	4,448	4,404	4,344	4,367	4,374	4,348	4,342	4,304
		2012년도	4,419	4,318	4,322	4,294	4,275	4,254	4,234	4,111	4,113	4,130	4,124
		전년동월대비	-7.0%	-6.2%	-5.1%	-3.5%	-2.9%	-2.1%	-3.0%	-6.0%	-5.4%	-4.9%	-4.2%
합계		2011년도	5,854	5,655	5,481	5,510	5,463	5,389	5,399	5,409	5,383	5,373	5,331
		2012년도	5,426	5,321	5,359	5,332	5,320	5,273	5,251	5,129	5,129	5,129	5,137
		전년동월대비	-7.3%	-5.9%	-2.2%	-3.2%	-2.6%	-2.2%	-2.2%	-5.2%	-4.7%	-4.7%	-3.6%

7. 신용보증잔액, 건수

〈 신용보증잔액 추이 〉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이차보증 잔액	2011년도	4,156,021	4,166,685	4,146,327	4,146,141	4,123,537	4,284,330	4,311,786	4,329,390	4,324,191	4,315,351	4,334,792	4,362,363
	2012년도	4,394,301	4,454,895	4,473,975	4,475,774	4,504,301	4,535,844	4,572,742	4,605,194	4,604,686	4,616,976	4,645,404	4,684,074
	전년동월대비	5.7%	6.9%	7.9%	8.0%	9.2%	5.9%	6.1%	6.4%	6.5%	7.0%	7.2%	7.4%

〈 신용보증건수 추이 〉

(단위 : 건)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이차보증 건수	2011년도	6,086,822	6,096,610	6,103,757	6,109,176	6,049,303	6,194,037	6,243,534	6,273,713	6,272,564	6,236,727	6,160,342	6,211,296
	2012년도	6,340,975	6,489,153	6,532,032	6,520,290	6,552,450	6,598,638	6,643,010	6,652,218	6,665,572	6,639,090	6,713,154	6,757,252
	전년동월대비	4.2%	6.4%	7.0%	6.7%	8.3%	6.5%	6.4%	6.0%	6.3%	6.5%	9.0%	8.8%

8. 이자반환금, 이자반환에 따른 원금손실액

〈 업체별 이자반환금, 이자반환에 따른 원금손실액 추이 〉

(단위 : 백만원)

조사대상 회원사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60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9개사	58개사	58개사
이차보증 금	소 미 진 입 금	2011년도	37,090	37,626	42,442	45,749	44,058	39,288	37,976	31,403	32,189	24,481	24,645	36,373
		2012년도	31,290	27,547	29,201	23,759	23,896	25,457	22,547	21,655	24,582	20,385	21,279	26,127
		전년동월대비	-15.6%	-26.8%	-31.2%	-48.1%	-45.8%	-35.2%	-40.6%	-31.0%	-23.6%	-16.7%	-13.7%	-28.2%
	상 회 계 금	2011년도	233	227	228	208	174	168	178	205	240	228	169	199
		2012년도	190	226	222	199	162	209	142	90	77	75	195	95
		전년동월대비	-18.5%	-0.4%	-2.6%	-4.3%	-6.9%	24.4%	-20.2%	-56.1%	-67.9%	-67.1%	15.4%	-52.3%
	기 타 회 계 금	2011년도	9,665	8,861	9,054	7,888	6,923	6,544	7,108	7,075	7,043	6,512	6,436	6,758
		2012년도	7,012	6,967	6,052	7,144	5,925	5,587	5,764	5,478	5,914	5,139	5,677	5,855
		전년동월대비	-27.4%	-21.4%	-33.2%	-9.4%	-14.4%	-14.6%	-18.9%	-22.6%	-16.0%	-21.1%	-11.8%	-13.4%
	합 계	2011년도	46,988	46,714	51,724	53,845	51,155	46,000	45,262	38,683	39,472	31,221	31,250	43,330
		2012년도	38,492	34,740	35,475	31,102	29,983	31,253	28,453	27,223	30,573	25,599	27,151	32,077
		전년동월대비	-18.1%	-25.6%	-31.4%	-42.2%	-41.4%	-32.1%	-37.1%	-29.6%	-22.5%	-18.0%	-13.1%	-26.0%
이자반환 금	소 미 진 입 금	2011년도	14,754	13,237	14,595	11,596	12,397	10,957	9,108	9,833	10,485	6,673	6,585	10,389
		2012년도	7,194	6,674	7,441	5,694	5,486	5,870	4,314	4,508	5,596	4,237	4,210	4,904
		전년동월대비	-51.2%	-49.6%	-49.0%	-50.9%	-55.7%	-46.4%	-52.6%	-54.2%	-46.6%	-36.5%	-36.1%	-52.8%
	상 회 계 금	2011년도	218	201	174	167	125	109	109	131	124	122	89	88
		2012년도	68	84	81	65	51	44	47	39	27	34	31	40
		전년동월대비	-68.8%	-58.2%	-53.4%	-61.1%	-59.2%	-59.6%	-56.9%	-70.2%	-78.2%	-72.1%	-65.2%	-54.5%
	기 타 회 계 금	2011년도	8,489	7,530	7,663	6,296	5,842	5,352	4,953	5,079	4,689	4,130	4,013	4,299
		2012년도	3,933	3,856	3,287	3,470	3,197	2,707	2,877	2,592	2,553	2,322	2,384	2,372
		전년동월대비	-53.7%	-48.8%	-57.1%	-44.9%	-45.3%	-49.4%	-41.9%	-49.0%	-45.6%	-43.8%	-40.6%	-44.8%
	합 계	2011년도	23,461	20,968	22,432	18,059	18,364	16,418	14,170	15,043	15,298	10,925	10,687	14,776
		2012년도	11,195	10,614	10,809	9,229	8,734	8,621	7,238	7,139	8,176	6,593	6,625	7,316
		전년동월대비	-52.3%	-49.4%	-51.8%	-48.9%	-52.4%	-47.5%	-48.9%	-52.5%	-46.6%	-39.7%	-38.0%	-50.5%
전체	2011년도		70,449	67,682	74,156	71,904	69,519	62,418	59,432	53,726	54,770	42,146	41,937	58,106
	2012년도		49,687	45,354	46,284	40,331	38,717	39,874	35,691	34,362	38,749	32,192	33,776	39,393
	전년동월대비		-29.5%	-33.0%	-37.6%	-43.9%	-44.3%	-36.1%	-39.9%	-36.0%	-29.3%	-23.6%	-19.5%	-32.2%

공지정보 · 기타 통계 자료

1. 지정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한 정보 현황

< 일본신용정보기구(JICC) 등록 현황 >

		등록인수 (만명)	5건 이상 대출 이용자 (만명)	전체인원에 대한 비율	등록건수 (만건)	5건 이상 대출이용자 (만건)	등록 잔액 합계액 (억엔)	5건 이상 대출이용자 (억엔)
2010년	4월	1,508	112	7.4%	3,122	658	122,592	26,795
	5월	1,534	110	7.2%	3,132	641	122,234	26,006
	6월	1,538	107	7.0%	3,109	626	120,840	25,449
	7월	1,517	103	6.8%	3,050	599	117,568	24,075
	8월	1,518	100	6.6%	3,028	579	115,770	23,046
	9월	1,515	97	6.4%	3,002	561	113,741	22,065
	10월	1,495	91	6.1%	2,943	528	110,544	20,599
	11월	1,486	82	5.5%	2,863	472	105,383	17,952
2011년	12월	1,460	77	5.3%	2,789	442	101,551	16,600
	1월	1,455	75	5.2%	2,765	430	100,142	15,977
	2월	1,456	73	5.0%	2,752	419	99,012	15,452
	3월	1,449	70	4.8%	2,720	402	97,147	14,682
	4월	1,459	71	4.9%	2,738	404	109,821	15,893
	5월	1,462	69	4.7%	2,725	393	108,585	15,339
	6월	1,453	66	4.5%	2,691	378	106,770	14,643
	7월	1,439	63	4.4%	2,648	362	104,715	13,926
	8월	1,444	62	4.3%	2,642	353	104,040	13,530
	9월	1,442	61	4.2%	2,626	343	103,071	13,078
	10월	1,423	56	3.9%	2,563	318	100,387	12,067
	11월	1,425	54	3.8%	2,551	308	99,783	11,647
	12월	1,405	52	3.7%	2,502	294	97,625	11,039
2012년	1월	1,402	51	3.6%	2,487	286	96,903	10,732
	2월	1,390	49	3.5%	2,451	277	95,117	10,303
	3월	1,384	47	3.4%	2,426	266	94,025	9,849
	4월	1,381	45	3.3%	2,404	251	93,141	9,275
	5월	1,383	43	3.1%	2,389	240	92,229	8,825
	6월	1,383	42	3.0%	2,381	236	91,476	8,596
	7월	1,377	41	3.0%	2,361	228	90,708	8,312
	8월	1,367	39	2.9%	2,333	219	89,702	7,982
	9월	1,375	39	2.8%	2,341	216	89,774	7,820
	10월	1,368	36	2.6%	2,312	201	88,627	7,186
	11월	1,365	35	2.6%	2,298	195	88,120	6,963
	12월	1,347	34	2.5%	2,260	188	86,783	6,684
2013년	1월	1,341	33	2.5%	2,244	183	86,356	6,517
	2월	1,339	32	2.4%	2,233	178	86,137	6,352
	3월	1,333	31	2.3%	2,212	171	85,304	6,081

(주1) 각 월별수치는 월말 기준의 “잔액 있음”의 수치이다.

<출처 : 일본신용정보기구>

(주2) 2009년 4월~2010년 3월까지의 수치는 미공표

< CIC 등록 현황 >

		등록인수 (만명)	5건 이상 대출 이용자 (만명)	전체인원에 대한 비율	등록건수 (만건)	5건 이상 대출이용자 (만건)	등록 잔액 합계액 (억엔)	5건 이상 대출이용자 (억엔)
2010년	4월	1,531	70	4.6%	2,687	421	118,714	-
	5월	1,527	68	4.5%	2,668	412	117,754	17,712
	6월	1,530	67	4.4%	2,664	404	117,501	17,361
	7월	1,518	64	4.2%	2,626	386	115,703	16,470
	8월	1,512	63	4.2%	2,605	374	114,263	15,815
	9월	1,511	61	4.0%	2,590	361	112,891	15,134
	10월	1,510	59	3.9%	2,576	349	112,066	14,528
	11월	1,499	57	3.8%	2,550	338	110,221	13,931
2011년	12월	1,490	55	3.7%	2,522	327	108,778	13,300
	1월	1,471	53	3.6%	2,478	314	106,338	12,649
	2월	1,470	52	3.5%	2,468	306	105,259	12,156
	3월	1,467	50	3.4%	2,451	296	103,783	11,663
	4월	1,463	49	3.3%	2,431	285	102,163	11,099
	5월	1,461	47	3.2%	2,416	276	100,734	10,633
	6월	1,462	46	3.1%	2,404	267	99,782	10,185
	7월	1,424	41	2.9%	2,310	238	97,471	9,096
	8월	1,426	39	2.7%	2,302	229	96,281	8,649
	9월	1,519	47	3.1%	2,505	273	104,050	10,283
	10월	1,518	46	3.0%	2,492	265	103,185	9,872
	11월	1,514	44	2.9%	2,475	256	102,054	9,490
	12월	1,502	42	2.8%	2,441	245	100,764	9,032
2012년	1월	1,485	41	2.8%	2,403	235	99,046	8,601
	2월	1,471	39	2.7%	2,369	226	97,329	8,234
	3월	1,468	38	2.6%	2,353	218	96,405	7,893
	4월	1,459	36	2.5%	2,320	204	94,978	7,342
	5월	1,457	34	2.3%	2,301	193	93,820	6,928
	6월	1,455	33	2.3%	2,288	186	93,256	6,645
	7월	1,442	31	2.1%	2,254	176	92,074	6,287
	8월	1,435	30	2.1%	2,235	169	91,423	6,022
	9월	1,436	29	2.0%	2,225	164	91,061	5,809
	10월	1,425	27	1.9%	2,193	152	89,873	5,317
	11월	1,425	26	1.8%	2,185	147	89,528	5,162
	12월	1,415	25	1.8%	2,162	141	88,820	4,930
2013년	1월	1,402	24	1.7%	2,133	135	87,852	4,714
	2월	1,399	23	1.6%	2,123	131	87,487	4,579
	3월	1,395	22	1.6%	2,110	126	86,960	4,430

(주) 각 월별수치는 매월 20일 기준의 “잔액 있음”의 수치이다.

<출처 : CIC>

2.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 예금 취급 금융기관 · 공적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추이 〉

(단위 : 억엔)

	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공적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전체
	주택대출	소비자 신용	기업 · 정부 등 대상	합계	주택대출	소비자신용 · 기업 · 정부 등 대상	합계	
1991년도	564,162	267,045	6,437,054	7,268,261	469,866	2,626,556	3,096,422	10,364,683
1992년도	579,063	262,689	6,605,209	7,446,961	512,226	2,884,947	3,397,173	10,844,134
1993년도	594,857	248,917	6,582,103	7,425,877	579,976	3,236,040	3,816,016	11,241,893
1994년도	614,591	235,025	6,538,745	7,388,361	665,445	3,525,336	4,190,781	11,579,142
1995년도	706,734	222,991	6,611,462	7,541,187	664,492	3,671,145	4,335,637	11,876,824
1996년도	773,403	212,443	6,442,850	7,428,696	723,678	3,878,647	4,602,325	12,031,021
1997년도	826,931	198,217	6,374,556	7,399,704	751,478	4,055,997	4,807,475	12,207,179
1998년도	874,519	185,510	6,114,689	7,174,718	745,099	4,260,514	5,005,613	12,180,331
1999년도	940,070	178,786	5,769,539	6,888,395	763,970	4,479,288	5,243,258	12,131,653
2000년도	978,224	168,835	5,654,961	6,802,020	769,801	4,475,020	5,244,821	12,046,841
2001년도	1,034,762	156,396	5,471,878	6,663,036	732,056	4,354,569	5,086,625	11,749,661
2002년도	1,097,149	143,286	5,045,230	6,285,665	661,292	4,226,005	4,887,297	11,172,962
2003년도	1,189,439	132,213	4,728,099	6,049,751	584,120	4,020,068	4,604,188	10,653,939
2004년도	1,242,965	133,900	4,475,852	5,852,717	524,624	3,813,037	4,337,661	10,190,378
2005년도	1,308,628	127,436	4,510,244	5,946,308	466,194	3,490,157	3,956,351	9,902,659
2006년도	1,343,437	122,791	4,579,871	6,046,099	423,186	3,263,530	3,686,716	9,732,815
2007년도	1,382,392	117,352	4,586,949	6,086,693	385,270	2,965,804	3,351,074	9,437,767
2008년도	1,426,389	120,982	4,677,371	6,224,742	343,860	2,726,187	3,070,047	9,294,789
2009년도	1,477,698	112,614	4,461,411	6,051,723	304,376	2,663,576	2,967,952	9,019,675
2010년도	1,508,533	107,086	4,448,226	6,063,845	286,413	2,555,198	2,841,611	8,905,456
2011년도	1,539,055	101,219	4,484,661	6,124,935	273,336	2,457,451	2,730,787	8,855,722

(주) 자금 순환 통계의 경우 새롭게 수집한 기초자료와 제도 변경을 반영한 소급 개정치를 매년 3월에 발표하고 있다. 이번 2001년 1~3월 이후 4분기 계수와 2000년도 이후의 연도 계수의 소급개정을 실시했다.

〈출처 : 일본은행〉

3. 신용공여액 현황 [총괄]

〈 신용공여액 총괄 시계열표 〉

(단위 : 억엔)

거래형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신용카드 물류금융	할부판매	3,438	3,329	3,230	3,160	3,029	2,878	2,487	2,334	2,068	1,966	1,984
	할부구입일선	21,239	21,774	22,552	23,480	25,007	27,162	29,691	30,010	30,719	33,316	34,997
	할부방식 계	24,677	25,103	25,782	26,640	28,036	30,040	32,178	32,344	32,787	35,282	36,981
	비할부판매	26,927	28,784	31,786	34,881	38,805	37,119	40,468	42,901	50,843	56,773	61,199
	비할부구입일선	181,135	192,903	208,251	230,090	254,860	280,536	315,155	349,100	359,558	376,833	397,846
	비할부방식 계	208,062	221,687	240,037	264,971	293,665	317,655	355,623	392,001	410,401	433,606	459,045
	신용카드 물류구입 계	232,739	246,790	265,819	291,611	321,701	347,695	387,801	424,345	443,188	468,888	496,026
판매 신용	할부판매	10,874	10,109	9,916	9,630	9,786	9,301	8,543	7,260	7,146	6,430	6,337
	할부구입일선	48,270	43,767	39,912	37,914	37,307	33,758	28,608	27,454	24,060	21,505	21,510
	론제휴판매	507	426	387	368	156	103	-	-	-	-	-
	제휴론	25,227	27,393	29,494	29,581	29,635	28,946	24,868	22,397	21,335	21,055	22,111
	할부방식 계	84,878	81,695	79,709	77,493	76,884	72,108	62,019	57,111	52,541	48,990	49,958
	비할부판매	23,931	22,185	21,321	20,492	20,423	19,533	19,184	16,794	13,937	12,539	11,362
	비할부구입일선	13,467	12,789	12,452	12,349	11,339	10,520	9,354	8,705	8,158	7,637	7,461
	비할부방식 계	37,398	34,974	33,773	32,841	31,762	30,053	28,538	25,499	22,095	20,176	18,823
	개별신용 계	122,276	116,669	113,482	110,334	108,646	102,161	90,557	82,610	74,636	69,166	68,781
	판매신용 계	355,015	363,459	379,301	401,945	430,347	449,856	478,358	506,955	517,824	538,054	564,807
소비자 자신용	할부방식 계	109,555	106,789	105,491	104,133	104,920	102,148	94,197	89,455	85,328	84,272	86,939
	비할부방식 계	245,460	256,661	273,810	297,812	325,427	347,708	384,161	417,500	432,496	453,782	477,868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74,805	75,991	75,662	76,363	75,238	75,465	69,521	58,291	47,514	31,071	23,515
	기타 소비자론	25,726	26,300	25,534	25,437	25,373	24,331	20,463	16,837	13,388	9,717	9,010
	소계	100,531	102,291	101,196	101,800	100,611	99,796	89,984	75,128	60,902	40,788	32,525
	민간금융기관	39,858	40,448	39,461	33,005	40,458	26,364	24,440	24,282	23,406	22,202	25,631
	소비자금융회사	106,327	101,917	97,507	102,845	104,194	92,703	82,635	58,036	41,670	28,723	23,793
	소비자론 계	246,716	244,656	238,164	237,650	245,263	218,863	197,059	157,446	125,978	91,713	81,949
	정기예금담보대출	112,644	96,647	91,254	81,739	71,804	69,269	69,013	64,663	51,785	45,319	37,549
	동산담보대출	853	830	799	772	750	720	689	673	653	645	635
소비자 자금용	소비자금융 계	385,948	364,766	350,846	339,472	334,709	303,583	281,492	237,513	193,147	152,408	120,133
	소비자신용 합계	740,963	728,225	730,147	741,417	765,056	753,439	759,850	744,468	710,971	690,462	684,940

〈출처 : 일본크레디트협회〉

4. 리스취급액 현황

< 기업 규모별 리스취급액 추이 >

(단위 : 억엔)

기업규모분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전년도대비			
	리스취급액	구성비	리스취급액	구성비	리스취급액	구성비	리스취급액	구성비	리스취급액	구성비	9/8	10/9	11/10	12/11
1 대기업(자본금 1억엔 초과 법인)	28,042	46.3	24,569	49.9	20,301	44.6	19,935	43.3	21,921	45.0	87.6	82.6	98.2	110.0
성장기업 등	10,077	16.6	12,436	25.3	9,870	21.7	10,269	22.3	10,852	22.3	123.4	79.4	104.0	105.7
2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 개인사업자)	28,218	46.6	20,997	42.7	21,388	47.0	22,307	48.5	22,841	46.8	74.4	101.9	104.3	102.4
3 권공서, 기타	4,305	7.1	3,653	7.4	3,864	8.5	3,756	8.2	3,993	8.2	84.9	105.8	97.2	106.3
합계	60,564	100.0	49,219	100.0	45,553	100.0	45,997	100.0	48,754	100.0	81.3	92.6	101.0	106.0

<출처 : 공익사단법인 리스사업협회(리스통계)>

< 업종별 리스취급액 추이 >

업종분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전년도대비			
		리스 취급액	구성비	리스 취급액	구성비	리스 취급액	구성비	리스 취급액	구성비	리스 취급액	구성비	9/8	10/9	11/10	12/11
1	농업·임업·어업·광업	326	0.5	598	1.2	328	0.7	276	0.6	313	0.6	183.5	54.8	84.0	113.7
2	건설업	2,447	4.0	1,933	3.9	1,968	4.3	2,003	4.4	2,229	4.6	79.0	101.8	101.8	111.3
3	제조업	15,171	25.0	10,746	21.8	9,218	20.2	9,345	20.3	9,311	19.1	70.8	85.8	101.4	99.6
	식품 등 제조업	1,895	3.1	1,455	3.0	1,413	3.1	1,425	3.1	1,668	3.4	76.8	97.1	100.8	117.1
	섬유·목재·펄프 등 제조업	1,582	2.6	1,527	3.1	927	2.0	810	1.8	801	1.6	96.5	60.7	87.4	99.0
	화학·석유·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	1,699	2.8	1,081	2.2	1,008	2.2	940	2.0	980	2.0	63.6	93.3	93.2	104.3
	철강·비철금속·금 속제품 등 제조업	1,815	3.0	1,259	2.6	1,134	2.5	1,122	2.4	1,056	2.2	69.4	90.1	98.9	94.2
	생산용·전기·정보 통신·운송 등 기계기구 제조업	6,206	10.2	4,046	8.2	3,396	7.5	3,771	8.2	3,424	7.0	65.2	83.9	111.0	90.8
	기타 제조업	1,974	3.3	1,379	2.8	1,340	2.9	1,279	2.8	1,382	2.8	69.9	97.2	95.4	108.1
	비제조업	38,277	63.2	32,412	65.9	30,692	67.4	30,864	67.1	32,987	67.7	84.7	94.7	100.6	106.9
4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626	1.0	497	1.0	447	1.0	310	0.7	589	1.2	79.4	89.8	69.5	189.9
	정보통신업	2,208	3.6	2,230	4.5	2,361	5.2	2,823	6.1	2,578	5.3	101.0	105.9	119.6	91.3
	운송업·우편업	3,358	5.5	3,242	6.6	2,789	6.1	2,743	6.0	3,032	6.2	96.5	86.0	98.4	110.5
	도매업·소매업	10,561	17.4	8,378	17.0	7,906	17.4	8,420	18.3	8,877	18.2	79.3	94.4	106.5	105.4
	금융업·보험업	1,946	3.2	1,752	3.6	1,519	3.3	1,118	2.4	1,341	2.7	90.1	86.7	73.6	119.9
	부동산업·물품대여업	2,739	4.5	3,417	6.9	2,811	6.2	2,554	5.6	3,532	7.2	124.8	82.3	90.9	138.3
	숙박업·음식서비스업	1,308	2.2	922	1.9	985	2.2	1,031	2.2	1,079	2.2	70.5	106.8	104.7	104.7
	의료·복지	3,635	6.0	2,771	5.6	3,142	6.9	3,389	7.4	3,477	7.1	76.2	113.4	107.9	102.6
기타 서비스	11,896	19.6	9,202	18.7	8,732	19.2	8,476	18.4	8,483	17.4	77.4	94.9	97.1	100.1	
5	공무·기타	4,343	7.2	3,531	7.2	3,347	7.3	3,509	7.6	3,914	8.0	81.3	94.8	104.9	111.5
합계		60,564	100.0	49,219	100.0	45,553	100.0	45,997	100.0	48,754	100.0	81.3	92.6	101.0	106.0

(주) 2008년도에 업종분류를 개정하여 2008년도의 전년도 대비 내역은 조정을 하지 않은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공표했다.

<출처 : 공익사단법인 리스사업협회(리스통계)>

5. 다중채무에 관한 상담 현황

< 국민생활센터(PIO-NET에 접수된 상담건수) ·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다중채무 관련 상담건수 추이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0,101	95,162	77,951	72,390	45,265	37,276

<출처 : 국민생활센터>

<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에서 실시한 법률상담 지원건수 추이 >

(단위 : 건)

	다중채무사건	금전사건	기타 사건	합계	다중채무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2007년도	10,191	51,859	6,860	68,910	14.8%
2008년도	12,472	58,902	9,068	80,442	15.5%
2009년도	16,054	72,672	12,496	101,222	15.9%
2010년도	20,431	74,283	15,503	110,217	18.5%
2011년도	24,664	60,094	18,993	103,751	23.8%
2012년도	28,763	55,358	20,886	105,007	27.4%

(주) 2012년도의 수치는 4월 7일 현재 잠정 속보치

<출처 : 일본사법지원센터>

6. 다중채무에 관한 카운슬링 실시 현황

〈 내용별 카운슬링 실시 현황 〉

	매년 총 건수(건)	안내·타기관 조회		전화상담		카운슬링 접수		카운슬링 실시건수		개입		변호사회 등 소개		기타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2009 년도	7,143	2,951	41.3%	4,192	58.7%	1,785	25.0%	1,648	23.1%	1,033	14.5%	394	5.5%	221	3.1%
2010 년도	6,224	2,367	38.0%	3,857	62.0%	1,653	26.6%	1,539	24.7%	925	14.9%	363	5.8%	251	4.0%
2011 년도	4,099	1,385	33.8%	2,714	66.2%	1,127	27.5%	1,017	24.8%	571	13.9%	244	6.0%	202	4.9%
2012 년도	4,137	1,302	31.5%	2,835	68.5%	1,245	30.1%	1,072	25.9%	544	13.1%	269	6.5%	259	6.3%

(주) '비율'은 문의 총 건수에 대한 수치

〈출처 : 공익재단법인 일본크레딧 카운슬링협회〉

〈 지역별 카운슬링 실시 현황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도쿄	개입	427	56.0%	364	49.9%	191	45.5%	154	38.6%
	변호사회 등 소개	255	33.5%	258	35.3%	163	38.8%	163	40.9%
	기타	80	10.5%	108	14.8%	66	15.7%	82	20.6%
	합계	762	100.0%	730	100.0%	420	100.0%	399	100.0%
후쿠오카	개입	110	59.8%	104	59.4%	79	62.2%	56	51.4%
	변호사회 등 소개	24	13.0%	31	17.7%	9	7.1%	19	17.4%
	기타	50	27.2%	40	22.9%	39	30.7%	34	31.2%
	합계	184	100.0%	175	100.0%	127	100.0%	109	100.0%
나고야	개입	145	77.5%	108	71.1%	56	65.9%	70	74.5%
	변호사회 등 소개	20	10.7%	14	9.2%	8	9.4%	4	4.3%
	기타	22	11.8%	30	19.7%	21	24.7%	20	21.3%
	합계	187	100.0%	152	100.0%	85	100.0%	94	100.0%
센다이	개입	88	11.4%	94	63.9%	40	50.0%	77	50.3%
	변호사회 등 소개	27	38.6%	26	17.7%	15	18.8%	38	24.8%
	기타	35	50.0%	27	18.4%	25	31.3%	38	24.8%
	합계	150	100.0%	147	100.0%	80	100.0%	153	100.0%
히로시마	개입	123	82.6%	92	81.4%	74	83.1%	45	65.2%
	변호사회 등 소개	18	12.1%	7	6.2%	5	5.6%	6	8.7%
	기타	8	5.4%	14	12.4%	10	11.2%	18	26.1%
	합계	149	100.0%	113	100.0%	89	100.0%	69	100.0%
니가타	개입	83	74.1%	83	83.0%	68	62.4%	70	57.4%
	변호사회 등 소개	19	17.0%	14	14.0%	25	22.9%	22	18.0%
	기타	10	8.9%	3	3.0%	16	14.7%	30	24.6%
	합계	112	100.0%	100	100.0%	109	100.0%	122	100.0%
시즈오카	개입	57	54.8%	80	65.6%	45	61.6%	42	64.6%
	변호사회 등 소개	31	29.8%	13	10.7%	14	19.2%	4	6.2%
	기타	16	15.4%	29	23.8%	14	19.2%	19	29.2%
	합계	104	100.0%	122	100.0%	73	100.0%	65	100.0%
구마모토	개입	-	-	-	-	8	53.3%	6	54.5%
	변호사회 등 소개	-	-	-	-	4	26.7%	0	0.0%
	기타	-	-	-	-	3	20.0%	5	45.5%
	합계	-	-	-	-	15	100.0%	11	100.0%
하마마쓰	개입	-	-	-	-	2	20.0%	6	40.0%
	변호사회 등 소개	-	-	-	-	1	10.0%	4	26.7%
	기타	-	-	-	-	7	70.0%	5	33.3%
	합계	-	-	-	-	10	100.0%	15	100.0%
후쿠시마 기타	개입	-	-	-	-	8	88.9%	18	51.4%
	변호사회 등 소개	-	-	-	-	0	0.0%	9	25.7%
	기타	-	-	-	-	1	11.1%	8	22.9%
	합계	-	-	-	-	9	100.0%	35	100.0%
전체	개입	1,033	62.7%	925	60.1%	571	56.1%	544	50.7%
	변호사회 등 소개	394	23.9%	363	23.6%	244	24.0%	269	25.1%
	기타	221	13.4%	251	16.3%	202	19.9%	259	24.2%
	합계	1,648	100.0%	1,539	100.0%	1,017	100.0%	1,072	100.0%

(주) '후쿠시마·기타'에는 후쿠시마(2012년도)와 다카마쓰(2012년 9월~), 가나자와(2012년 10월~),

오кина와(2013년 1월~) 포함

〈출처 : 공익재단법인 일본크레딧 카운슬링협회〉

< 남녀성비별 카운슬링 실시 현황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남성	919	55.8%	812	52.8%	569	55.9%	600	56.0%
여성	729	44.2%	727	47.2%	448	44.1%	472	44.0%
합계	1,648	100.0%	1,539	100.0%	1,017	100.0%	1,072	100.0%

<출처 : 공익재단법인 일본크레딧 카운슬링협회>

< 연령대별 카운슬링 실시 현황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20대	230	14.0%	193	12.5%	159	15.6%	152	15.6%
30대	428	26.0%	361	23.5%	298	29.3%	273	29.3%
40대	454	27.5%	397	25.8%	225	22.1%	243	22.1%
50대	280	17.0%	285	18.5%	179	17.6%	184	17.6%
60대 이상	256	15.5%	303	19.7%	156	15.4%	220	15.4%
합계	1,648	100.0%	1,539	100%	1,017	100.0%	1,072	100.0%
(참고) 40세 이상	990	60.1%	985	64.0%	560	55.1%	647	60.4%

<출처 : 공익재단법인 일본크레딧 카운슬링협회>

< 상담자 1인당 채무건수와 채무액(연령대별) 추이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1인당 채무건수 (건)	1인당 채무액 (만엔)	1인당 채무건수 (건)	1인당 채무액 (만엔)	1인당 채무건수 (건)	1인당 채무액 (만엔)	1인당 채무건수 (건)	1인당 채무액 (만엔)
20대	5.8	208	5.2	206	5.5	222	4.9	251
30대	6.0	384	6.0	392	5.8	343	5.3	359
40대	7.2	657	7.1	638	6.8	755	5.9	692
50대	6.8	638	6.7	725	6.4	813	6.2	732
60대 이상	6.0	479	5.7	418	5.1	426	5.0	419
전체	6.4	493	6.2	499	6.0	510	5.5	496

(주) 2011년도의 20대에는 20세 미만 1명의 채무건수와 채무액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 공익재단법인 일본크레딧 카운슬링협회>

< 카운슬링을 받은 상담자의 대출 이유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건수(건)	해당율	건수(건)	해당율	건수(건)	해당율	건수(건)	해당율
남 성	생활비 총당	500	54.4%	472	58.1%	326	57.3%	357	59.5%
	실업·이직·소득 감소	459	49.9%	411	50.6%	269	47.3%	279	46.5%
	유형·음식·교제	304	33.1%	257	31.7%	162	28.5%	164	27.3%
	사치품·소득 이상의 쇼핑	83	9.0%	87	10.7%	63	11.1%	57	9.5%
	교육·자격 취득	84	9.1%	90	11.1%	51	9.0%	82	13.7%
	의료·관혼상제	123	13.4%	110	13.5%	59	10.4%	45	7.5%
	도박	222	24.2%	170	20.9%	116	20.4%	103	17.2%
	자동차·오토바이	122	13.3%	110	13.5%	82	14.4%	73	12.2%
	이사	50	5.4%	56	6.9%	26	4.6%	45	7.5%
	사업비·운전자금	58	6.3%	51	6.3%	49	8.6%	42	7.0%
	응답 총 수	2,288	-	2,056	-	1,387	-	1,412	-
	상담자 총 수	919	-	812	-	569	-	600	-
여 성	생활비 총당	470	64.5%	469	64.5%	307	68.5%	294	62.3%
	실업·이직·소득 감소	371	50.9%	382	52.5%	223	49.8%	249	52.8%
	유형·음식·교제	102	14.0%	110	15.1%	72	16.1%	82	17.4%
	사치품·소득 이상의 쇼핑	162	22.2%	128	17.6%	122	27.2%	124	26.3%
	교육·자격 취득	125	17.1%	156	21.5%	65	14.5%	83	17.6%
	의료·관혼상제	137	18.8%	156	21.5%	56	12.5%	81	17.2%
	도박	49	6.7%	37	5.1%	11	2.5%	11	2.3%
	자동차·오토바이	46	6.3%	47	6.5%	28	6.3%	34	7.2%
	이사	47	6.4%	59	8.1%	44	9.8%	39	8.3%
	사업비·운전자금	43	5.9%	36	5.0%	18	4.0%	29	6.1%
	응답 총 수	1,804	-	1,835	-	1,094	-	1,144	-
	상담자 총 수	729	-	727	-	448	-	472	-
전 체	생활비 총당	970	58.9%	941	61.1%	633	62.2%	651	60.7%
	실업·이직·소득 감소	830	50.4%	793	51.5%	492	48.4%	528	49.3%
	유형·음식·교제	406	24.6%	367	23.8%	234	23.0%	246	22.9%
	사치품·소득 이상의 쇼핑	245	14.9%	215	14.0%	185	18.2%	181	16.9%
	교육·자격 취득	209	12.7%	246	16.0%	116	11.4%	165	15.4%
	의료·관혼상제	260	15.8%	266	17.3%	115	11.3%	126	11.8%
	도박	271	16.4%	207	13.5%	127	12.5%	114	10.6%
	자동차·오토바이	168	10.2%	157	10.2%	110	10.8%	107	10.0%
	이사	97	5.9%	115	7.5%	70	6.9%	84	7.8%
	사업비·운전자금	101	6.1%	87	5.7%	67	6.6%	71	6.6%
	응답 총 수	4,092	-	3,891	-	2,481	-	2,556	-
	상담자 총 수	1,648	-	1,539	-	1,017	-	1,072	-

(주) 카운슬링을 받은 상담자가 크레딧나 론 목적으로 신고한 사유(복수응답, 관련성이 높은 상위 3가지를 집계) 중 상위 10가지 사유에 대해 공표했다. 대출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7. 자기파산 현황

< 자기파산 신청건수 추이 >

(단위 : 건)

	자연인의 자기파산 신청건수	법인·기타 자기파산 신청건수	합계
2005년도	184,422	7,786	192,208
2006년도	165,932	8,110	174,042
2007년도	148,248	9,365	157,613
2008년도	129,508	10,627	140,135
2009년도	126,265	10,990	137,255
2010년도	120,930	9,840	130,770
2011년도	100,510	9,398	109,908

<출처 : 대법원 '파산 신규사건 수-수리구분별-전국 지방법원'>

8. 자살자 동향

< 남녀성비별 자살자수 추이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남성	23,272	72.0%	23,540	72.3%	22,813	70.9%	23,478	70.9%	22,831	70.8%	23,472	71.5%	22,283	70.3%	20,955	68.4%	19,273	69.2%
여성	9,053	28.0%	9,012	27.7%	9,342	29.1%	9,615	29.1%	9,418	29.2%	9,373	28.5%	9,407	29.7%	9,696	31.6%	8,585	30.8%
합계	32,325	100.0%	32,552	100.0%	32,155	100.0%	33,093	100.0%	32,249	100.0%	32,845	100.0%	31,690	100.0%	30,651	100.0%	27,858	100.0%

<출처 : 경찰청>

< 연령대별 자살자수 추이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19세	589	1.8%	608	1.9%	623	1.9%	548	1.7%	611	1.9%	565	1.7%	552	1.7%	622	2.0%	587	2.1%
20~29세	3,247	10.0%	3,409	10.5%	3,395	10.6%	3,309	10.0%	3,438	10.7%	3,470	10.6%	3,240	10.6%	3,304	10.8%	3,000	10.8%
30~39세	4,333	13.4%	4,606	14.1%	4,497	14.0%	4,767	14.4%	4,850	15.0%	4,794	14.6%	4,596	14.6%	4,455	14.5%	3,781	13.6%
40~49세	5,102	15.8%	5,208	16.0%	5,008	15.6%	5,096	15.4%	4,970	15.4%	5,261	16.0%	5,165	16.0%	5,053	16.5%	4,616	16.6%
50~59세	7,772	24.0%	7,586	23.3%	7,246	22.5%	7,046	21.3%	6,363	19.7%	6,491	19.8%	5,959	19.8%	5,375	17.5%	4,668	16.8%
60세 이상	10,994	34.0%	10,894	33.5%	11,120	34.6%	12,107	36.6%	11,793	36.6%	12,034	36.6%	11,982	36.6%	11,661	38.0%	11,048	39.7%
미상	288	0.9%	241	0.7%	266	0.8%	220	0.7%	224	0.7%	230	0.7%	196	0.7%	181	0.6%	158	0.6%
합계	32,325	100%	32,552	100%	32,155	100%	33,093	100%	32,249	100%	32,845	100%	31,690	100%	30,651	100%	27,858	100%

<출처 : 경찰청>

< 원인·동기별 자살자수 추이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유연 있음	10,443	32.3%	10,360	31.8%	10,466	32.5%	23,209	70.1%	23,490	72.8%	24,434	74.4%	23,572	74.4%	22,581	73.7%	20,615	74.0%
가정문제	1,009	3.1%	1,011	3.1%	1,043	3.2%	3,751	11.3%	3,912	12.1%	4,117	12.5%	4,497	14.2%	4,547	14.8%	4,089	14.7%
건강문제	4,087	12.6%	4,145	12.7%	4,341	13.5%	14,684	44.4%	15,153	47.0%	15,867	48.3%	15,802	49.9%	14,621	47.7%	13,629	48.9%
경제생활문제	3,436	10.6%	3,255	10.0%	3,010	9.4%	7,318	22.1%	7,404	23.0%	8,377	25.5%	7,438	23.5%	6,406	20.9%	5,219	18.7%
업무문제	628	1.9%	654	2.0%	709	2.2%	2,207	6.7%	2,412	7.5%	2,528	7.7%	2,590	8.2%	2,689	8.8%	2,472	8.9%
남녀문제	312	1.0%	317	1.0%	295	0.9%	949	2.9%	1,115	3.5%	1,121	3.4%	1,103	3.5%	1,138	3.7%	1,035	3.7%
학교문제	76	0.2%	71	0.2%	91	0.3%	338	1.0%	387	1.2%	364	1.1%	371	1.2%	429	1.4%	417	1.5%
기타	594	1.8%	622	1.9%	645	2.0%	1,500	4.5%	1,538	4.8%	1,613	4.9%	1,533	4.8%	1,621	5.3%	1,535	5.5%
미상	301	0.9%	285	0.9%	332	1.0%	-	-	-	-	-	-	-	-	-	-	-	-
유연 없음	21,882	67.7%	22,192	68.2%	21,689	67.5%	9,884	29.9%	8,759	27.2%	8,411	25.6%	8,118	25.6%	8,070	26.3%	7,243	26.0%
합계	32,325	100.0%	32,552	100.0%	32,155	100.0%	33,093	100.0%	32,249	100.0%	32,845	100.0%	31,690	100.0%	30,651	100.0%	27,858	100.0%

(주) 2007년 이후에는 유연 등 자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 명백하게 확정할 수 있는 원인·동기를 자살자 1인당 세 가지까지 카운트 가능하도록 해서 유연 있음의 원인·동기별 합이 유연 있음의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출처 : 경찰청>

9. 생활보호 수급 현황

〈 생활보호 수급자 수 추이 〉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피보호세대수(전세대)	999	1,042	1,076	1,105	1,149	1,274	1,409	1,528	1,578
피보호 실 인원(천명)	1,423	1,476	1,514	1,543	1,593	1,764	1,952	2,108	2,161

(주) 실수는 1개월 평균

<출처 : 후생노동성>

10. 정규 · 비정규 직원 · 종업원의 고용 현황

〈 정규 · 비정규 직원 · 종업원 고용자 수의 추이 (전체)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정규 직원 · 종업원	3,410	68.5%	3,374	67.4%	3,411	67.0%	3,441	66.5%	3,399	65.9%	3,380	66.2%	3,355	65.6%	3,185	64.8%	3,185	64.8%
비정규 직원 · 종업원	1,564	31.4%	1,633	32.6%	1,677	33.0%	1,732	33.5%	1,760	34.1%	1,721	33.7%	1,756	34.4%	1,733	35.2%	1,733	35.2%
전체	4,975	100.0%	5,007	100.0%	5,088	100.0%	5,174	100.0%	5,159	100.0%	5,102	100.0%	5,111	100.0%	4,918	100.0%	4,918	100.0%

(주) 2011년의 실수 및 비율은 이와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 제외

<출처 : 총무성>

〈 정규 · 비정규 직원 · 종업원 고용자 수의 추이 (남녀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정규 직원 종업원	남자	2,385	69.9%	2,357	69.9%	2,375	69.6%	2,402	69.8%	2,358	69.4%	2,334	69.1%	2,309	68.8%	2,200	69.1%	2,300	68.8%
	여자	1,025	30.1%	1,018	30.2%	1,036	30.4%	1,039	30.2%	1,040	30.6%	1,046	30.9%	1,046	31.2%	985	30.9%	1,041	31.2%
	합계	3,410	100.0%	3,374	100.0%	3,411	100.0%	3,441	100.0%	3,399	100.0%	3,380	100.0%	3,355	100.0%	3,185	100.0%	3,341	100.0%
비정규 직원 종업원	남자	466	29.8%	507	31.0%	517	30.8%	538	31.1%	559	31.8%	526	30.6%	538	30.6%	545	31.4%	566	31.2%
	여자	1,098	70.2%	1,125	68.9%	1,159	69.1%	1,194	68.9%	1,202	68.3%	1,195	69.4%	1,217	69.3%	1,188	68.6%	1,247	68.8%
	합계	1,564	100.0%	1,633	100.0%	1,677	100.0%	1,732	100.0%	1,760	100.0%	1,721	100.0%	1,756	100.0%	1,733	100.0%	1,813	100.0%
전체	남자	2,851	57.3%	2,864	57.2%	2,894	56.9%	2,941	56.8%	2,917	56.5%	2,860	56.1%	2,848	55.7%	2,745	55.8%	2,865	55.6%
	여자	2,124	42.7%	2,143	42.8%	2,194	43.1%	2,234	43.2%	2,242	43.5%	2,242	43.9%	2,263	44.3%	2,173	44.2%	2,288	44.4%
	합계	4,975	100.0%	5,007	100.0%	5,088	100.0%	5,174	100.0%	5,159	100.0%	5,102	100.0%	5,111	100.0%	4,918	100.0%	5,153	100.0%

(주) 2011년의 실수 및 비율은 이와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 제외

<출처 : 총무성>

〈 정규 · 비정규 직원 · 종업원 고용자 수의 추이 (연령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인원 (명)	비율
정규 직원 · 종업원	15~24세	307	9.0%	290	8.6%	298	8.7%	292	8.5%	286	8.4%	277	8.2%	262	7.8%	239	7.5%	243	7.3%
	25~34세	1,018	29.9%	992	29.4%	982	28.8%	940	27.3%	916	26.9%	884	26.2%	862	25.7%	808	25.4%	825	24.7%
	35~44세	815	23.9%	832	24.7%	852	25.0%	890	25.9%	898	26.4%	920	27.2%	930	27.7%	908	28.5%	968	29.0%
	45~54세	774	22.7%	749	22.2%	737	21.6%	740	21.5%	731	21.5%	732	21.7%	740	22.1%	706	22.2%	750	22.5%
	55~64세	447	13.1%	459	13.6%	481	14.1%	512	14.9%	498	14.7%	490	14.5%	488	14.5%	453	14.2%	473	14.2%
	65세 이상	50	1.5%	52	1.5%	60	1.8%	68	2.0%	70	2.1%	77	2.3%	73	2.2%	71	2.2%	81	2.4%
	합계	3,410	100.0%	3,374	100.0%	3,411	100.0%	3,441	100.0%	3,399	100.0%	3,380	100.0%	3,355	100.0%	3,185	100.0%	3,340	100.0%
비정규 직원 · 종업원	15~24세	253	16.2%	265	16.2%	254	15.1%	253	14.6%	248	14.1%	227	13.2%	226	12.9%	219	12.6%	218	12.0%
	25~34세	310	19.8%	319	19.5%	330	19.7%	326	18.8%	315	17.9%	305	17.7%	301	17.1%	287	16.6%	297	16.4%
	35~44세	292	18.7%	302	18.5%	321	19.1%	332	19.2%	347	19.7%	341	19.8%	351	20.0%	354	20.4%	369	20.4%
	45~54세	316	20.2%	321	19.7%	320	19.1%	327	18.9%	321	18.2%	323	18.8%	328	18.7%	316	18.2%	344	19.0%
	55~64세	296	18.9%	316	19.4%	332	19.8%	354	20.4%	375	21.3%	367	21.3%	387	22.0%	394	22.7%	406	22.4%
	65세 이상	96	6.1%	108	6.6%	122	7.3%	140	8.1%	153	8.7%	157	9.1%	162	9.2%	163	9.4%	179	9.9%
	합계	1,564	100.0%	1,633	100.0%	1,677	100.0%	1,732	100.0%	1,760	100.0%	1,721	100.0%	1,756	100.0%	1,733	100.0%	1,813	100.0%
전체	15~24세	560	11.3%	555	11.1%	551	10.8%	544	10.5%	535	10.4%	504	9.9%	488	9.5%	458	9.3%	461	8.9%
	25~34세	1,329	26.7%	1,312	26.2%	1,311	25.8%	1,265	24.4%	1,231	23.9%	1,190	23.3%	1,163	22.8%	1,095	22.3%	1,122	21.8%
	35~44세	1,107	22.3%	1,134	22.6%	1,173	23.1%	1,222	23.6%	1,246	24.2%	1,262	24.7%	1,282	25.1%	1,262	25.7%	1,337	25.9%
	45~54세	1,089	21.9%	1,071	21.4%	1,057	20.8%	1,068	20.6%	1,052	20.4%	1,055	20.7%	1,068	20.9%	1,022	20.8%	1,094	21.2%
	55~64세	743	14.9%	776	15.5%	813	16.0%	866	16.7%	872	16.9%	858	16.8%	875	17.1%	847	17.2%	879	17.1%
	65세 이상	146	2.9%	160	3.2%	182	3.6%	209	4.0%	223	4.3%	234	4.6%	235	4.6%	234	4.8%	259	5.0%
	합계	4,975	100.0%	5,007	100.0%	5,088	100.0%	5,174	100.0%	5,159	100.0%	5,102	100.0%	5,111	100.0%	4,918	100.0%	5,154	100.0%

(주) '비정규 직원·종업원'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노동자 파견사무소의 파견직원', '계약직원·촉탁' 및 '기타'로 구분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새롭게 본 항목을 만들어 집계한 수치를 게재했다. 2009년과 2010년의 결과는 2011년 5월 17일에 변경한 수치인 관계로 과거에 공표한 수치와 다른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의 '정규 직원·종업원'과 '비정규 직원·종업원'의 비율도 재계산한 결과로 변경했다.

<출처 : 총무성>

제2장 법령 등의 일부 개정 관련 ‘법령집 제6판’ 신구대조표

※ 2012년 9월 15일 발행 《법령집 제6판》 게재 이후 법령 등 개정에 대해 게재(2012년 8월 2일~2013년 4월 1일)

본문 표기	개정 후 표기
대금업법 시행규칙	
(분쟁해결위원의 이해관계 등) 제30조의 26 <중략> ② 법 제41조의 50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생활상담(소비자계약법(2000년 법률 제61호) 제13조 제3항 제5호 가목에 규정한 소비생활상담을 말한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1. <생략> 2. <u>재단법인 일본산업협회(1918년 2월 26일에 재단법인 국산장려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가 부여하는 소비생활어드바이저 자격</u>	(분쟁해결위원의 이해관계 등) 제30조의 26 <중략> ② 법 제41조의 50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생활상담(소비자계약법(2000년 법률 제61호) 제13조 제3항 제5호 가목에 규정한 소비생활상담을 말한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1. <생략> 2. <u>일반재단법인 일본산업협회가 부여하는 소비생활어드바이저 자격</u>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5조 이용 목적에 따른 제한 (법 제16조 관련) 1~2 <생략> 3.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법령에 따른 경우 (예) <중략> ●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22호. 이하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제5조 이용 목적에 따른 제한 (법 제16조 관련) 1~2 <생략> 3.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법령에 따른 경우 (예) <중략> ●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22호. 이하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제15조 개시 (법 제25조 관련) <중략> ③ 타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예) ●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제9조 제2항(고객에 대한 신고사실 누락)	제15조 개시 (법 제25조 관련) <중략> ③ 타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예) ●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제8조 제2항(고객에 대한 신고사실 누락)

대금업자 대상 종합감독지침	
(목차) <중략> II-2-4 <u>본인 확인</u> ,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22호. 이하 “범죄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u>본인 확인</u> 및 “ <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 ”에 관한 내부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조직범죄로 인한 금융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 일본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금업자의 감독 시 예를 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으로 한다.	(목차) <중략> II-2-4 <u>거래 시 확인</u> ,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22호. 이하 “범죄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u>거래 시 확인</u> 및 “ <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 ”에 관한 내부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조직범죄로 인한 금융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 일본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금업자의 감독 시 예를 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으로 한다. (㉞) <u>거래 시 확인 및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관한 유의사항” (2012년 10월 금융청)을 참고로 한다.</u>
(1) 주요 체크사항 ① 범죄수법에 따라 <u>본인 확인</u> 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가. 가. 사내규칙 등에서 <u>본인 확인</u> 을 실시하기 위한 사내체제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직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였으며 임직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나. <u>본인 확인</u> 을 실시할 경우 생년월일과 주소 등 자금수요자의 속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본인 확인 서류 제출 등으로 그 신빙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는지. 자금수요자 등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자금수요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u>본인 확인</u> 정보는 거래의 계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그 속성을 항상 파악하고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 다. 대금업자가 과거에 취득한 <u>본인 확인</u> 정보는 신빙성과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u>거래 상대방이 거래의 명의인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출을 요청하는 등 자금수요자 등의 본인 확인을 재확인하고 있는지</u>	(1) 주요 체크사항 ① 범죄수법에 따라 <u>거래 시 확인</u> 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가. 가. 사내규칙 등에서 <u>거래 시 확인</u> 을 실시하기 위한 사내체제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직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였으며 임직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나. <u>거래 시 확인</u> 을 실시할 경우 생년월일과 주소 등 자금수요자의 속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본인 확인 서류 제출 등으로 그 신빙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는지. 자금수요자 등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자금수요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u>거래 시 확인</u> 정보는 거래의 계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그 속성을 항상 파악하고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 다. 다음의 a.-c. 와 같이 엄격한 고객관리를 실시할 필요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실시할 경우에는 고객의 본인 특정사항을 통상 사용하는 방법에 더하여 본인 확인 서류 또는 보완서류의 제시를 받는 등 통상의 거래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적절하게 (재)거래 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산 및 소득 현황의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적절하게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a. <u>거래 상대방이 관련 거래 시 확인과 관련하여 고객 등 또는 대표자 등을 가장할 우려가 있을 경우의 해당 거래</u> b. <u>관련 거래 시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관 거래 시 확인 관련 사항을 하위로 기재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고객 등과의 거래</u> c. <u>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제도의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u>

라. 자금수요자 등의 <u>본인 확인</u> 시 거래 형태(예를 들면 인터넷에 의한 비대면 거래 등)를 고려한 조치를 강구했는지. 마. 임직원 채용 시 자금세탁 대책을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차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 임직원에게 <u>본인 확인</u> 관련 연수·교육이 정기적이며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연수 등을 받은 임직원의 이해 정도를 일상 업무 처리 시 실천도 감안하여 평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 <u>본인 확인</u> 실시 관련 사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 감사를 통해 그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검증하여 실시 방법을 재검토하는 등 그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 ② 범수법에 따라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지 가. 사내규칙 등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를 실시하기 위한 사내체제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임직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였으며 임직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나.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대금업자가 취득한 <u>본인 확인</u> 정보, 거래 시의 현황, 기타 대금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거래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후 거래 필요성의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거래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 등이 인정된 경우 적절하게 대응·관리하는지. 다. “<u>의심스러운 거래</u>”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신속하게 당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지 라. “<u>의심스러운 거래</u>”의 판단 시 자금수요자 등의 속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마. 임직원 채용 시 자금세탁 대책을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차원에서 선고되고 있는지 바. “<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이 정기적이며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연수 등을 받은 임직원의 이해 정도를 일상 업무 처리 시 실천도 감안하여 평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 관련 사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감사를 통해 그 실시 현황을 파악·검증하고 실시 방법을 재검토하는 등 그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 ③ <u>본인 확인</u>과 “<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u>본인 확인</u>을 적절하게 실시함으로써 자금수요자 등의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 및 자금수요자 등의 거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상태에서 “<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를 판단하도록 일체적이면서 일원적인 사내체제 등이 강구되어 있는지	<u>않다고 인정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고객 등과의 거래 등</u> 라. 자금수요자 등의 <u>거래 시 확인</u> 시 거래 형태(예를 들면 인터넷에 의한 비대면 거래 등)를 고려한 조치를 강구했는지. 마. 임직원 채용 시 자금세탁 대책을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차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 임직원에게 <u>거래 시 확인</u> 관련 연수·교육이 정기적이며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연수 등을 받은 임직원의 이해 정도를 일상 업무 처리 시 실천도 감안하여 평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 <u>거래 시 확인</u> 실시 관련 사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감사를 통해 그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검증하여 실시 방법을 재검토하는 등 그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 ② 범수법에 따라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지 가. 사내규칙 등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를 실시하기 위한 사내체제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임직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였으며 임직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나.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대금업자가 취득한 <u>거래 시 확인</u> 정보, 거래 시의 현황, 기타 대금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거래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후 거래 필요성의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거래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 등이 인정된 경우 적절하게 대응·관리하는지. 다. “<u>의심스러운 거래</u>”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신속하게 당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지 라. “<u>의심스러운 거래</u>”의 판단 시 자금수요자 등의 속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마. 임직원 채용 시 자금세탁 대책을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차원에서 선고되고 있는지 바. “<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이 정기적이며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연수 등을 받은 임직원의 이해 정도를 일상 업무 처리 시 실천도 감안하여 평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 관련 사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감사를 통해 그 실시 현황을 파악·검증하고 실시 방법을 재검토하는 등 그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 ③ <u>거래 시 확인</u>과 “<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u>거래 시 확인</u>을 적절하게 실시함으로써 자금수요자 등의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 및 자금수요자 등의 거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상태에서 “<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를 판단하도록 일체적이면서 일원적인 사내체제 등이 강구되어 있는지
--	---

대금업자 등록 심사 사무 체크리스트(대금업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 <생략>	대금업자 등록 심사 사무 체크리스트(대금업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 <생략>																																																				
<table> <tr> <th>적합 여부</th><th>심사내용</th></tr> <tr> <td colspan="2"><생략></td></tr> <tr> <td colspan="2"><u>본인 확인</u> 관련 사내체제 (감독지침 II-2-4(1)①)</td></tr> <tr> <td>☐</td><td><u>본인 확인</u> 책임부서가 명확한지</td></tr> <tr> <td>☐</td><td>자금수요자 등의 속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 등으로 그 신빙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td></tr> <tr> <td>☐</td><td>자금수요자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관리를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td></tr> <tr> <td>☐</td><td>자금수요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u>본인 확인</u> 정보는 거래의 계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그 속성을 항상 파악하고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td></tr> <tr> <td>☐</td><td>대금업자가 과거에 취득한 <u>본인 확인</u> 정보에 신빙성과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거래 상대방이 거래의 명의인을 가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본인 확인</u> 서류의 재제출을 요청하는 등, 자금수요자 등의 본인 확인에 대해 재확인을 실시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td></tr> <tr> <td>☐</td><td>자금수요자 등의 <u>본인 확인</u> 시 거래 형태를 고려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td></tr> <tr> <td>☐</td><td><u>본인 확인</u> 실시와 관련하여 사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감사를 통해 실시 현황을 파악·검증하고 실시방법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td></tr> <tr> <td colspan="2"><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 관련 사내규칙 (감독지침 II-2-4(1)②)</td></tr> <tr> <td>☐</td><td>“<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의 책임부서가 명확한지</td></tr> <tr> <td>☐</td><td>“<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대금업자가 취득한 <u>본인 확인</u> 정보, 거래 시 현황, 기타 대금</td></tr> </table>	적합 여부	심사내용	<생략>		<u>본인 확인</u> 관련 사내체제 (감독지침 II-2-4(1)①)		☐	<u>본인 확인</u> 책임부서가 명확한지	☐	자금수요자 등의 속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 등으로 그 신빙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자금수요자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관리를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자금수요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u>본인 확인</u> 정보는 거래의 계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그 속성을 항상 파악하고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대금업자가 과거에 취득한 <u>본인 확인</u> 정보에 신빙성과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거래 상대방이 거래의 명의인을 가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본인 확인</u> 서류의 재제출을 요청하는 등, 자금수요자 등의 본인 확인에 대해 재확인을 실시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자금수요자 등의 <u>본인 확인</u> 시 거래 형태를 고려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	<u>본인 확인</u> 실시와 관련하여 사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감사를 통해 실시 현황을 파악·검증하고 실시방법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 관련 사내규칙 (감독지침 II-2-4(1)②)		☐	“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 ”의 책임부서가 명확한지	☐	“ <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 ”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대금업자가 취득한 <u>본인 확인</u> 정보, 거래 시 현황, 기타 대금	<table> <tr> <th>적합 여부</th><th>심사내용</th></tr> <tr> <td colspan="2"><생략></td></tr> <tr> <td colspan="2"><u>거래 시 확인</u> 관련 사내규칙 (감독지침 II-2-4(1)①)</td></tr> <tr> <td>☐</td><td><u>거래 시 확인</u> 책임부서가 명확한지</td></tr> <tr> <td>☐</td><td>자금수요자 등의 속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 등으로 그 신빙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td></tr> <tr> <td>☐</td><td>자금수요자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관리를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td></tr> <tr> <td>☐</td><td>자금수요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u>거래 시 확인</u> 정보는 거래의 계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그 속성을 항상 파악하고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td></tr> <tr> <td>☐</td><td>엄격한 고객관리를 할 필요성이 특별히 높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실시할 경우에는 고객의 본인 특정사항을 통상적인 방법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본인 확인 서류 또는 보완 서류의 제시를 받는 등 통상 거래보다 더 엄격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재)거래 시 적절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자산 및 소득 현황의 확인이 의무화된 경우 적절하게 확인이 이루어지는지</td></tr> <tr> <td>☐</td><td>자금수요자 등의 <u>거래 시 확인</u> 시 거래 형태를 고려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td></tr> <tr> <td>☐</td><td><u>거래 시 확인</u> 실시와 관련하여 사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감사를 통해 실시 현황을 파악·검증하고 실시방법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td></tr> <tr> <td colspan="2"><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 관련 사내규칙 (감독지침 II-2-4(1)②)</td></tr> <tr> <td>☐</td><td>“<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의 책임부서가 명확한지</td></tr> <tr> <td>☐</td><td>“<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대금업자가 취득한 <u>거래 시 확인</u> 정보, 거래 시 현황, 기타 대</td></tr> </table>	적합 여부	심사내용	<생략>		<u>거래 시 확인</u> 관련 사내규칙 (감독지침 II-2-4(1)①)		☐	<u>거래 시 확인</u> 책임부서가 명확한지	☐	자금수요자 등의 속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 등으로 그 신빙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자금수요자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관리를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자금수요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u>거래 시 확인</u> 정보는 거래의 계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그 속성을 항상 파악하고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엄격한 고객관리를 할 필요성이 특별히 높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실시할 경우에는 고객의 본인 특정사항을 통상적인 방법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본인 확인 서류 또는 보완 서류의 제시를 받는 등 통상 거래보다 더 엄격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재)거래 시 적절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자산 및 소득 현황의 확인이 의무화된 경우 적절하게 확인이 이루어지는지	☐	자금수요자 등의 <u>거래 시 확인</u> 시 거래 형태를 고려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	<u>거래 시 확인</u> 실시와 관련하여 사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감사를 통해 실시 현황을 파악·검증하고 실시방법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 관련 사내규칙 (감독지침 II-2-4(1)②)		☐	“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 ”의 책임부서가 명확한지	☐	“ <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 ”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대금업자가 취득한 <u>거래 시 확인</u> 정보, 거래 시 현황, 기타 대
적합 여부	심사내용																																																				
<생략>																																																					
<u>본인 확인</u> 관련 사내체제 (감독지침 II-2-4(1)①)																																																					
☐	<u>본인 확인</u> 책임부서가 명확한지																																																				
☐	자금수요자 등의 속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 등으로 그 신빙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자금수요자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관리를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자금수요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u>본인 확인</u> 정보는 거래의 계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그 속성을 항상 파악하고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대금업자가 과거에 취득한 <u>본인 확인</u> 정보에 신빙성과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거래 상대방이 거래의 명의인을 가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본인 확인</u> 서류의 재제출을 요청하는 등, 자금수요자 등의 본인 확인에 대해 재확인을 실시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자금수요자 등의 <u>본인 확인</u> 시 거래 형태를 고려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	<u>본인 확인</u> 실시와 관련하여 사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감사를 통해 실시 현황을 파악·검증하고 실시방법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 관련 사내규칙 (감독지침 II-2-4(1)②)																																																					
☐	“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 ”의 책임부서가 명확한지																																																				
☐	“ <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 ”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대금업자가 취득한 <u>본인 확인</u> 정보, 거래 시 현황, 기타 대금																																																				
적합 여부	심사내용																																																				
<생략>																																																					
<u>거래 시 확인</u> 관련 사내규칙 (감독지침 II-2-4(1)①)																																																					
☐	<u>거래 시 확인</u> 책임부서가 명확한지																																																				
☐	자금수요자 등의 속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 등으로 그 신빙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자금수요자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관리를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자금수요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u>거래 시 확인</u> 정보는 거래의 계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그 속성을 항상 파악하고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엄격한 고객관리를 할 필요성이 특별히 높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실시할 경우에는 고객의 본인 특정사항을 통상적인 방법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본인 확인 서류 또는 보완 서류의 제시를 받는 등 통상 거래보다 더 엄격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재)거래 시 적절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자산 및 소득 현황의 확인이 의무화된 경우 적절하게 확인이 이루어지는지																																																				
☐	자금수요자 등의 <u>거래 시 확인</u> 시 거래 형태를 고려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	<u>거래 시 확인</u> 실시와 관련하여 사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감사를 통해 실시 현황을 파악·검증하고 실시방법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 관련 사내규칙 (감독지침 II-2-4(1)②)																																																					
☐	“ <u>의심스러운 거래 신고</u> ”의 책임부서가 명확한지																																																				
☐	“ <u>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u> ”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대금업자가 취득한 <u>거래 시 확인</u> 정보, 거래 시 현황, 기타 대																																																				

	업자가 보유한 해당 거래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고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해당 거래 관련 특별히 문제 등이 인정된 경우 적절하게 대응·관리를 실시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금업자가 보유한 해당 거래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고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그 거래 관련 특별히 문제 등이 인정된 경우 적절하게 대응·관리를 실시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신속하게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신속하게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	“의심스러운 거래”의 판단 시 자금수요자 등의 속성이 고려되어 있는지	☐	“의심스러운 거래”의 판단 시 자금수요자 등의 속성이 고려되어 있는지
☐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관련 사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 감독을 통해 그 실시 현황을 파악·검증하고 실시방법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관련 사내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 감독을 통해 그 실시 현황을 파악·검증하고 실시방법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	본인 확인 조사와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의 판단을 일체적이면서 일원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내체제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	거래 시 확인 조사와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의 판단을 일체적이면서 일원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내체제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생략>		<생략>	

사우가이드라인 제3편 금융회사 관계 13. 지정신용정보기관 관계

(별지) 지정신용정보기관 간에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지정신용정보기관 간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신용정보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법 제41조의 2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용정보기관간의 제공업무가 부가되어 있다. 1-1 본인특정요건(법 제41조의 35 제1항 제1호) ①~⑥ <생략> ⑦ 【본인확인서류에 기재된 본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호번호】(시행규칙 제30조의 13 제1항 제7호) ● 가입 대금업자가 시행규칙 제30조의 13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받는 방법으로 <u>본인 확인</u> 을 실시한 경우 해당 본인 확인 서류에 기재된 본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호번호로 한다.	(별지) 지정신용정보기관 간에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지정신용정보기관 간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신용정보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법 제41조의 2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용정보기관간의 제공업무가 부가되어 있다. 1-1 본인특정요건(법 제41조의 35 제1항 제1호) ①~⑥ <생략> ⑦ 【본인확인서류에 기재된 본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호번호】(시행규칙 제30조의 13 제1항 제7호) ● 가입 대금업자가 시행규칙 제30조의 13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받는 방법으로 본인 특정사항의 확인을 한 경우 해당 본인 확인 서류에 기재된 본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호번호로 한다.
---	---

사우가이드라인 제3편 금융회사 관계 15. 등록감습기관 관계

Ⅲ. 등록감습기관의 감독 관련 사무처리 상 기타 유의 사항 Ⅲ-1 등록감습교재(대금업법 제24조의 40, 시행규칙 제26조의 63 제3호 관계) (1) <생략> (2) 주요 체크사항 등록감습교재의 내용은 “대금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Ⅲ. 등록감습기관의 감독 관련 사무처리 상 기타 유의 사항 Ⅲ-1 등록감습교재(대금업법 제24조의 40, 시행규칙 제26조의 63 제3호 관계) (1) <생략> (2) 주요 체크사항 등록감습교재의 내용은 “대금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	--

63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청장관이 정하는 시간 등을 정하는 건”(2010년 금융청 고시 제89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해당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으로 한다. ① 대금업 관련 법령에 관한 과목 가. ~ 라. <생략> 마. 고시의 하단에 규정된 “기타 관계 법률에서 대부 및 대부에 부속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이어야 한다. a. 회사법(조직형태, 대표권, 법인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b.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63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청장관이 정하는 시간 등을 정하는 건”(2010년 금융청 고시 제89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해당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으로 한다. ① 대금업 관련 법령에 관한 과목 가. ~ 라. <생략> 마. 고시의 하단에 규정된 “기타 관계 법률에서 대부 및 대부에 부속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이어야 한다. a. 회사법(조직형태, 대표권, 법인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b.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거래 시 확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	--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기본규칙

(사내체제정비) 제11조 회원사는 업무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내체제 정비할 경우 협회에서 정하는 업무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사내규칙 책정 시의 세칙에 유의하여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내규칙 등을 책정하고 사내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 대응 시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사내체제 정비에 함께 대금업 업무를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4) <생략> (5) 본인 확인, 의심스러운 거래	(사내체제정비) 제11조 회원사는 업무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내체제 정비할 경우 협회에서 정하는 업무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사내규칙 책정 시의 세칙에 유의하여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내규칙 등을 책정하고 사내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 대응 시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사내체제 정비에 함께 대금업 업무를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거래 시 확인, 의심스러운 거래
(본인 확인 방법) 제74조 <중략> 2. 회원사는 채무자 등이 해당 채무자 등의 거래 관련 거래력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 보관하고 있는 대부계약, 기타 거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사용할 때 채무자 등의 부담이 더 적은 방법으로 채무자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무자 등에게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22호)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본인 확인 서류(사본 포함. 이하 “본인 확인 서류”라 한다.)를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본인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인지 확인하는 방법) 제74조 <중략> 2. 회원사는 채무자 등이 해당 채무자 등의 거래 관련 거래력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 보관하고 있는 대부계약, 기타 거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사용할 때 채무자 등의 부담이 더 적은 방법으로 채무자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무자 등에게 범죄에 따른 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22호)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는 본인 확인 서류(사본 포함. 이하 “본인 확인 서류”라 한다.)를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신설>	<u>부칙(2013.4.1.)</u> <u>이 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u> <u>(주) 개정조항은 다음과 같다.</u> <u>제11조, 제74조를 개정</u>

분쟁해결 등 업무에 관한 규칙

<생략>

	지부 명칭	소재지
1	홋카이도지부	홋카이도 삿포로시
2	미야기현지부	미야기현 센다이시
3	이와테지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4	후쿠시마현지부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5	아키타현지부	아키타현 아키타시
6	아오모리현지부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7	아마가타현지부	아마가타현 아마가타시
8	도쿄도지부	도쿄도 미나토구
9	가나가와현지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10	사이타마현지부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11	지바현지부	지바현 지바시
12	아마나시현지부	아마나시현 고후시
13	도치기현지부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14	이바라기현지부	이바라기현 미토시
15	군마현지부	군마현 마에바시시
16	니가타현지부	니가타현 니가타시
17	나가노현지부	나가노현 나가노시
18	아이치현지부	아이치현 나고야시
19	시즈오카현지부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20	미에현지부	미에현 쓰시
21	기후현지부	기후현 기후시
22	이시카와현지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23	후쿠이현지부	후쿠이현 후쿠이시
24	도야마현지부	도야마현 도야마시
25	오사카부지부	오사카부 오사카시
26	교토부지부	교토부 교토시
27	효고현지부	효고현 고베시
28	나라현지부	나라현 나라시
29	와카야마현지부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30	시가현지부	시가현 오쓰시
31	히로시마현지부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32	아마구치현지부	아마구치현 아마구치시
33	오카야마현지부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34	돗토리현지부	돗토리현 돗토리시
35	시마네현지부	시마네현 마쓰에시
36	가가와현지부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37	에히메현지부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38	도쿠시마현지부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
39	고치현지부	고치현 고치시
40	구마모토현지부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41	오이타현지부	오이타현 오이타시
42	가고시마현지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43	미야자키현지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44	후쿠오카현지부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45	사가현지부	사가현 사가시
46	나가사키현지부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47	오кина와현지부	오кина와현 나하시

연대표 (2006년 12월 ~ 2013년 5월)

- | | |
|-----------|--|
| 2006년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동시에 공포 |
| 2007년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일, 개정법 제1조 시행. 불법사금융 대책으로 법칙이 강화 |
|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법에 규정된 대금업협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신대금업협회 설립협의회가 발족 |
|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다중채무대책본부가 “다중채무 개선 프로그램”을 결정 |
|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대금업협회(각 도도부현에 설치)가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해산 결정 |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청이 신대금업법의 정성령안을 공표하고 public comment를 모집 |
|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청이 “대금업자 대상 종합 감독지침(안)”을 마련하고 public comment를 모집 • 신대금업협회 설립협의회가 자율규제기본규칙(안) 등을 정리하여 public comment를 모집 |
|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대금업협회 설립협의회가 실험회 개요를 책정하고 전국 9개소에서 실험회 설명회 실시 |
|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당이 신대금업법의 정성령안에 대해 금융청의 당초안을 일부 수정 후 승인 |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대금업법에 준한 개정 정령 및 내각부령 공포 |
|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일, 신대금업법 제2조 시행으로 대금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및 행위 규제의 강화, 감독이 강화 •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일본대금업협회(JFSA) 설립 • 주식회사 일본정보센터, 주식회사 아이넷, 주식회사 테라넷 3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주식회사 테라넷”이 발족 |
| 2008년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에루 주식회사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오크스가 나하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
|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라이즈 파이낸스 주식회사와 리먼브라더즈 코머셜 모기지 주식회사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 가자카파이낸스 주식회사가 산와파이낸스 주식회사의 전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화 |
|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TOB(주식공개 매수)를 통해 아코무 주식회사를 지분법 적용회사에서 연결 자회사화 |
|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레타스카드가 오사카지방법원에 파산 절차 개시 신청 |
| 2009년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이 과불금 반환청구 시 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 관련 첫 판결을 내림 |
|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SFCG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법정관리에서 파산 절차로 이행) |
|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OMC카드, 주식회사 센트럴파이낸스, 주식회사 구오코 3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 세디나” 발족 |

	- 주식회사 테라넷이 전국신용정보센터 연합회 가입 33개 정보센터로부터 신용정보사업을 계승하여 회사명을 “주식회사 일본신용정보기구” 로 변경 - 개정 할부판매법에 명기된 크레딧 업계의 자율규제단체인 “사단법인 일본크레딧협회” 발족
6월	18일, 개정 대금업법 제3조 시행으로 재산적 기초요건의 인상 및 지정신용정보기관 제도, 대금업무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제도 시행
7월	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오릭스 크레딧 주식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해 자회사화
8월	- 주식회사 일본신용정보기구가 주식회사 CCB를 합병하여 회사 약칭을 “JIC” 에서 “JICC” 로 변경 - 일본대금업협회가 “2009년도 제1회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 을 실시
9월	- 아이후리 주식회사가 회생절차의 하나인 사업회생ADR(재판 외 분쟁해결 수단)을 신청 - 대금업 등록업체수가 재무국과 도도부현 등록을 합하여 5,000사 이하로 감소
11월	- 주식회사 로프로그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 일본사업자금융협회가 임시총회에서 해산 결정 - 금융청은 개정 대금업법 부칙 제67조에 규정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을 설치 - 일본대금업협회가 “2009년도 제2회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 을 실시 - 일본대금업협회가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1회 사무국 회의에 소집되어 “대금업계의 현황” 에 대해 설명
12월	- 사단법인 일본크레딧협회가 경제산업청 장관으로부터 “인정 할부판매협회” 인가를 받음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2회~제7회 사무국회의 개최 - 일본대금업협회가 “2009년도 제3회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 을 실시 - 일본대금업협회가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의 좌장(금융담당 차관) 앞으로 의견서(개정 대금업법 완전시행에 대비하여)를 제출
2010년 1월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8회~제10회 사무국회의 개최 - 금융청이 지정신용정보기관으로 지정 시 대금업체가 채무자로부터의 과불금 반환 청구에 응했을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등록되는 정보(서비스 정보 71 “계약 재검토 정보”)의 등록 및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2월	- 일본대금업협회가 “2009년도 제4회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 을 실시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12회~제13회 사무국회의 개최
4월	- 일본대금업협회가 금융청 장관으로부터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 로 인정을 받음 “대금업 제도에 관한 프로젝트팀” 이 “채무자 입장에 선 10가지 방안” 을 정리하여 공표 - 대금업 등록업체 수가 재무국과 도도부현 등록을 합하여 4,000사 이하로 감소

6월	18일, 상한금리의 인하와 총량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개정 대금업법이 완전 시행 - 금융청은 개정 대금업법의 주지 철저와 완전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 및 지원하기 위해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설치
7월	- 금융청이 지정한 제3자 기관이 중재역할을 담당하여 금융상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금융 ADR”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일본대금업협회는 “금융 ADR” 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 오사카부가 개정 대금업법의 규제 중 일부를 완화하는 “대금특구” 구상을 내각부에 제안
8월	대금업 등록업체 수가 재무국과 도도부현 등록을 합하여 3,000사 이하로 감소
9월	- 금융청은 일본대금업협회 등 7개 단체를 “금융 ADR” 분쟁해결 기관으로 지정 - 주식회사 다케후지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 금융청은 일본대금업협회를 대금업법에 의거한 등록 강습기관으로 등록
10월	“금융 ADR” 제도 시행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11월	- 일본대금업협회가 “2010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 을 실시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12월	- 개정 할부판매법 완전 시행. 신용카드회사에 “지불 가능 금액” 조사를 의무화 “개정 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2011년 1월	중소기업신용기구 주식회사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4월	- 일본대금업협회는 금융청에 “ '동일본대지진' 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요청서” 제출 - 금융청은 3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량규제의 예외 대출에 대한 절차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을 개정 공포 · 시행 - 마루와상사 주식회사(니코니코 크레딧)가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6월	“개정대금업법 follow-up team” 관계자 공청회 개최 - 개인신용정보기관인 주식회사 CIC에서 대금업 등록 잔액 합계가 처음으로 10조엔 돌파
7월	“개인 채무자의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구회” 가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개인 채무자의 사적정리 지침인 “개인 채무자의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발표, 운영 개시
8월	- 라쿠텐주식회사가 라쿠텐KC주식회사의 카드사업을 라쿠텐크레딧주식회사에 승계, 개인 대상 론 사업 등을 J트러스트주식회사에 양도, 사명을 “라쿠텐카드주식회사” 로 변경 - 금융청이 “다중채무자상담매뉴얼” 을 개정하여 “다중채무자상담 입문” 을 작성 공표
9월	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SMFG)과 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은행, 프로미스주식회사는 SMFG에 의한 프로미스주식회사의 완전 자회사화를 위한 기본계약 체결

10월	- 주식회사 신세이은행은 연결자회사인 신세이파이낸셜주식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개인 대상 무담보론사업의 일부를 양도 받아 은행에서 “카드론 레이크” 취급 개시 - 동일본대지진으로 규정된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이 2012년 3월 31일까지 연장
11월	일본대금업협회가 “2011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 시험”을 실시
2012년 1월	주식회사 로프로그가 회사분할(흡수분할)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다케후지의 소비자금융 사업을 승계
3월	- 스루가은행 주식회사는 2011년 4월에 파산한 마루와상사주식회사(니코니코크레디트)의 전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자회사화한다고 발표 -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규정된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이 2012년 3월 31일로 종료
4월	스미토모카드주식회사는 주오미쓰이카드주식회사와 흡수합병되면서 상호를 미쓰이스미토모트러스트카드주식회사로 변경
5월	자민당의 “소액금융시장에 관한 소위원회”가 상한금리를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제시
7월	- 주식회사 그라비스가 오사카지방법원에 자기파산을 신청 - 금융청이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안)”을 공표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금융청 관계 내각부령의 정비에 관한 내각부령”에 따라 대금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
8월	일본대금업협회가 법무성에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중간적인 논점 정리”에 관한 의견을 제출
9월	- 일본대금업협회가 소비자청에 “집단적 소비자 피해 회복 관련 소송제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 SMBC컨슈머파이낸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주식회사 모빗에 공동 출자의 해지와 사업 분할로 기본 합의했다고 발표 - 다중채무자 대책본부,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및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의 공동 주최로 “제1회 다중채무문제 및 소비자 대상 금융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
11월	- 금융청이 “금융ADR” 제도의 사후관리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설치 - 일본대금업협회가 “2012년도 대금업무 취급 주임자 자격시험”을 실시
12월	일본대금업협회가 소비자청에 “집단적 소비자 피해 회복 관련 소송제도의 골자”에 관한 의견을 제출

2013년 1월	- 다중채무자 대책본부,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및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 공동 주최로 “제2회 다중채무문제 및 소비자 대상 금융 등에 관한 간담회” 개최 - 일본대금업협회가 경찰청에 “범죄에 따른 수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 등 및 경과조치에 관한 정령안(가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 - 일본대금업협회가 법무성에 “회사법제의 재검토에 관한 중간시안”에 관한 의견 제출
3월	- 금융청이 “금융ADR제도의 사후지원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 공표 - 일본대금업협회가 “금융ADR” 제도의 사후지원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감안한 대응에 대해 공표 - 일본대금업협회가 “대금업 업무 운영에 관한 자율규제기본규칙”의 일부를 개정 - 일본대금업협회가 “업무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사내규칙 책정 시의 세칙”의 일부를 개정
4월	-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이 종료 - 이온크레디트서비스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이온은행과의 경영통합으로 은행지주회사로 이행하고 상호를 이온파이낸셜서비스주식회사로 변경